

월간
재정포럼

2022. October_Vol.316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0

권두칼럼

균공애민의 정신으로 세금 포퓰리즘을 극복해야 | 박형수

현안분석

청년 임금격차 추세 분석 및 정책함의 | 김문정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에 대한 소고 | 홍병진

정책토론티포트

2022년도 PEMNA 연차 총회
2022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설명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균공애민의 정신으로 세금 포폴리즘을 극복해야 | 박형수 02

현안분석

청년 임금격차 추세 분석 및 정책함의 | 김문정 08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에 대한 소고 | 홍병진 30

정책토론티포트

2022년도 PEMNA 연차 총회 64

2022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7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108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설명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균공애민의 정신으로 세금 포퓰리즘을 극복해야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세계적으로 좌파·우파 정권과 상관없이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 횡행하고 있다. 국가정책 중에서 특히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포퓰리즘에 가장 취약하다. 납세자는 세금을 더 내기 싫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정책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위정자들이 국민을 속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팬데믹(pandemic)을 빙자한 각종 ‘덜 내고 더 받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 총수입은 169조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이 216조원 늘어나 국가채무가 340조원 증가했다. 이에 그간 국제신인도 평가에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할 정도로 강점으로 작용하던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이제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금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려면

세금은 국민들의 생활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국가와 사회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더 이상 세금 포퓰리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의 성숙, 정책결정자의 안목과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중국 고사성어나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점토판의 ‘한 나라가 끝나고 다음 나라가 와도 세리(稅吏)는 찾아온다’는 글귀에서 보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현재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만은 안된다는 ‘NOOMP(Not Out Of My

.....
**우리나라의 재정은
 복지지출의 증가를
 감당하기엔 부족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세대 간 공정성 차원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로
 통제해야 할 지경에 이르러
 향후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더라도
 증세 압박이 예상된다.**


던 부가가치세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엄청난 증세정책으로 당연히 조세저항이 심했다. 그러나 기존의 복잡하고 다 기화된 간접세 체계를 단순화하여 투명하게 재정비하고, 각종 공제 도입과 비 과세소득 범위 확대 등 직접세를 줄이는 정책과 함께 시행해 조세부담률을 1977년 16%, 1981년 16.6%로 큰 변화가 없도록 관리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매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환급해줌으로써 수출 을 촉진시키는 성과도 있었다.

특히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은 근거과세를 통해 세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종전의 복잡한 조세체계와 전근대적인 징세행정 은 세무행정 상의 비리와 부패의 빌미가 되고 있었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고 후 과세 당국이 임의로 과세표준과 세율 을 결정하는 인정과세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 과 세액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추계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작동 메커니즘이 매입세 환급을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매출액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 투명한 거래가 보장될 수 있었고, 거래 축소나 과세표준의 조작 등 세금회피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근거과세가 가능해진 것이다.

균공애민의 조세개혁으로 국민 공감대 넓혀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국민의 복지수요 증 대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는 부족한 것이 우리 재정의 엄 정한 현실이다. 특히 미래세대에 현재세대의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적자 와 국가채무 남발은 세대 간 공정성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통제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앞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더라 도 조만간 증세 압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인스와 더불어 20세기 전 반의 대표적 경제학자였던 조지프 슈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조세는 현대국가 탄생을 가능하게 하고 형성을 촉진하는 핵심요인이며, 조세정책 연구야말로 한 사회의 정치적 삶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라고 했다.

이 명언을 되새겨 우리에게 필요한 세계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세원(tax base) 간, 소득계층 간, 세대 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회복시키고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덜 훼손시키면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세계 재구축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총체적이고 일관된 조세개혁 전략하에서 세부적인 정책수단들을 단계적으로 구현시켜 나가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서 세금 이슈를 부자 감세와 세금 폭탄 등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낼 것인가’의 제로섬(zero-sum) 게임 양상의 논란에서 벗어나, 세금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균공애민’의 정신으로 조세개혁을 단행해 성과를 낼 수 있는 DNA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의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 • • •
우리에게는 세금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균공애민’의 정신으로 조세개혁을 단행해 성과를 낼 수 있는 DNA가 이어져 오고 있다. 세금 포퓰리즘 해결에 있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현안분석 |

■ 청년 임금격차 추세 분석 및 정책함의
김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에 대한 소고
홍병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 임금격차 추세 분석 및 정책함의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moonkim@kipf.re.kr)

I. 서론

청년층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20대 대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증가하였고(90~180일 → 120~240일 증가), 근로장려세제 수급 연령요건이 폐지(2018년 세제개편안)되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정책이 다수 도입(2018년 3.15 청년일자리대책)된 바 있다. 2020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할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¹⁾ 청년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각각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이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이 단순한 수당정책을 넘어 주거,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서 수많은 정책이 제시되어 왔으나,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모든 청년대상의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 현금지급성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나 제도 차원의 정책이 더 시급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1) 「청년기본법」, 국가법령센터(검색 일자: 2022년 10월 18일)
제2조(기본이념)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②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촉진
③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④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본고에서는 청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분포를 연구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에 대한 향후 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정책 관련 질문은 보편적 청년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다. 혹은 현재 이 시대의 청년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므로, 맞춤형 정책보다는 보편적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²⁾ 한편, 다른 이들은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 가구의 청년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청년에 대한 지원이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 기간을 늘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와 장기 실업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³⁾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편적 청년지원으로는 실질적인 금액이 한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정책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청년의 소득분배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질문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분석방법

본고의 기본적인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근로시간, 교육수준(범주형), 교육기간(총연도), 비정규직(자기선언적, 노사정위원회, ILO 버전 등) 등의 정의 방법은 노동패널조사 웹사이트의 ‘데이터활용’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였다.⁴⁾

패널자료의 표본손실(attrition) 우려 때문에 패널조사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조사 부가조사나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청년의 월급여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총소득 혹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도 여러 가지 분석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노동패널조사를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5), 6)}

기본적으로 본고에서는 청년 노동시장의 주요 결과물인 월급여에 대한 불평등지수의 시간추세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최저임금에 맞춘 고정된 시급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년의 노동시장 실태를

- 2) 2022년 5월 17일자 UNN 기사에서는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비판적 요소로 지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보편적인 소득지원(생계지원)을 강조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서울특별시, 「내손안에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 2021. 8. 25.,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71583>, 검색일자: 2022. 8. 16., 「한국대학신문(UNN)」, 「5조원 넘게 쏟아부은 청년정책, 보편성 부족. 정책효과도 ‘의문’», 2022. 5. 1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8233>, 검색일자: 2022. 8. 16.).
- 3) 『서울경제』, 「쏟아지는 청년수당, ‘물고기’ 아닌 ‘그물’ 주는데 근본 해법», 2022. 1. 25., <https://www.sedaily.com/NewsView/26102CCK2G>, 검색일자: 2022. 8. 16.
- 4)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활용」,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113&key=531>, 검색일자: 2022. 7. 25.
- 5) 적어도 횡단면적인 분석은 경제활동인구조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병행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패널조사에 기반한 청년의 소득분포 추세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소득분포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향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 6) 초안에는 부모의 소득과 청년 소득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포함하였으나, 논의의 초점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재정포럼 원고에 실지 않았음을 밝힌다.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여 청년 간 노동시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임의적인 '노동시장참여지표'를 고려하였다.

살펴볼 때, 시간당 임금 대신 월급여 변수를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월급여를 기반으로 청년의 소득분포를 분석한다. 단, 청년 간 경제활동 진입에의 격차까지 아우르는 힘들기 때문에 취업 중인 청년들에 한정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간 청년들의 임금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띤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경제활동참여 수준에서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임금격차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여 청년 간 노동시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의적인 '노동시장참여지표'를 고려하였다. 노동시장참여지표는 실업자를 포함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0의 값을 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의 값을 갖는 변수로 정의되었다.⁷⁾

분석에서 제시될 주요 통계량은 불평등지수인데, 불평등지수로는 표준편차(SD)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사용한다. '불평등'이라는 용어는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불평등 대신 '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니계수를 불평등지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만큼 본고에서는 격차지수보다는 불평등지수라는 더 상용화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불평등지수 자체가 노동시장의 차별의 결과라거나, 모든 불평등의 수준이 없어지는 '평등'상태가 바람직하거나, 현재의 불평등 상태가 개인의 선택을 모두 벗어난 것 등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III. 분석 결과

1. 청년의 월급여의 평균과 불평등지수

먼저 청년을 25~39세로 정의하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급여,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의 평균값을 [그림 1]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

7) 이때 상정된 숫자는 연구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그 수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비경제활동 중인 청년의 인구도 감안하여 청년의 노동시장을 전반적으로 가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간단한 지표를 활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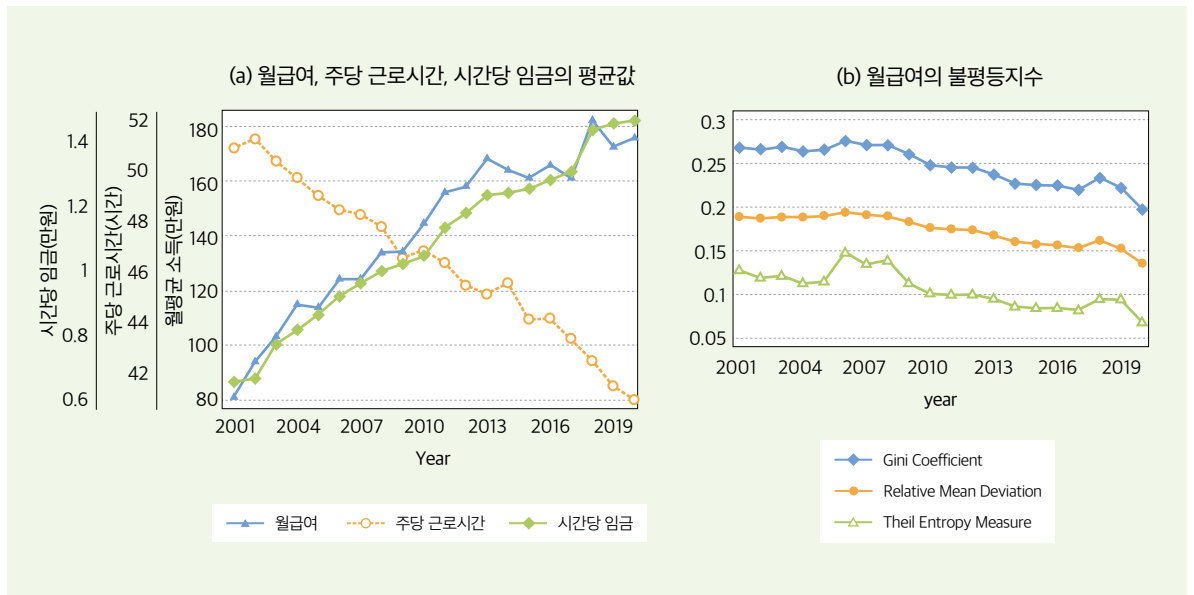
간은 대체로 감소하되, 2001~2002년과 2013~2014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2017~2018년에 크게 증가하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월급여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2018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에 2019년 감소, 2020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같은 기간 월급여에 대한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그려보면 [그림 1]의 (b)와 같다. 해당 그림의 위에서 순서대로 Gini Coefficient, Relative Mean Deviation, Theil Entropy Measure 지표와 관련된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기간을 포함한 2006~2008년 기간과 2017~2018년 기간에 불평등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Theil Entropy Measure는 2006~2008년 기간에 그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2017~2018년 기간의 경우, 불평등지수는 소폭 증가하고 이후 2020년까지 감소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는

**월급여에 대한
동기간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그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기간을 포함한
2006~2008년 기간과
2017~2018년 기간에
불평등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청년층(25~39세)의 노동시장 결과물: 평균과 불평등지수

(단위: 만원, 시간, 지수)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만 25~39세 표본 중에서 취업 중이면서 월급여 소득 정보가 관찰되는 경우에 한정함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기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청년층의 임금 증가율은
60대의 임금 증가율과
상당히 유사한 반면,
최근 2018~2020년
기간에는 사실상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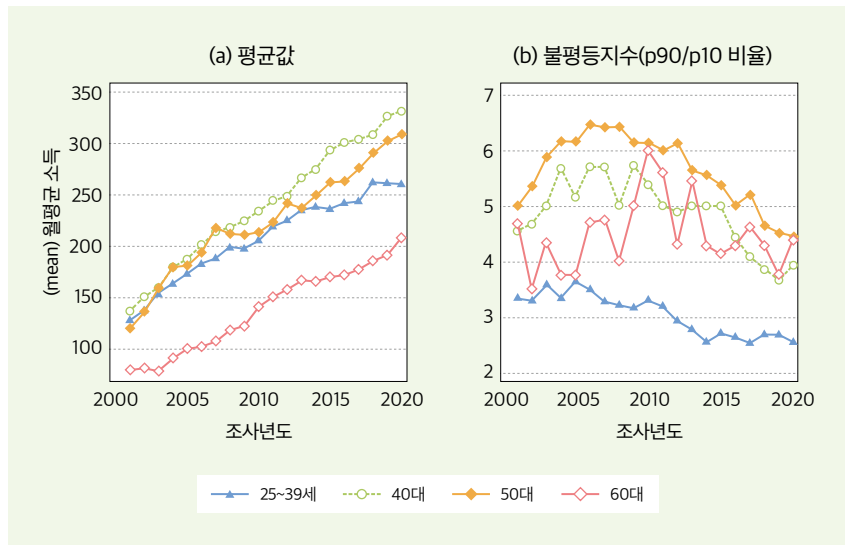
3개의 지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⁸⁾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의 월급여의 수준과 불평등지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인가? 예를 들어, 다른 연령대의 월급여 불평등지수는 악화되는 반면 청년만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년층(25~39세), 40대(40~49세), 50대(50~59세), 60대(60~69세)의 월급여 평균값과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그림 2]에 제시해보았다.

먼저, 월급여는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평균값이 2001년 기준 130만~150만원 구간에 속하는 데 비해 월급여 평균값이 100만원 미만으로 현저히 낮다. 임금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4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임금 증가율은 분석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50대의 경우 임금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현저히 둔화되었다. 그 결과, 40대와 50대의 월급여 격차가 글로벌 금

[그림 2] 연령대별 월급여 평균과 불평등지수

(단위: 만원, 비율)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조사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그래프를 생산함
2. 만 25~69세 중에서 취업 중이면서 월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본에 한정하고,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3. (a)는 평균 월급여를, (b)는 각 연령집단 내 월급여의 불평등지수를 2001~2020년 기간 동안 보여주고 있음
(b)의 불평등지수는 하위 10분위 대비 상위 10분위(90분위)의 비율로 정의되었음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기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8) 가계동향조사자료 2인 이상 도시 가구 자료에 기반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한 성명재(2016)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용위기 이후부터 2018년까지 벌어졌고, 최근 2020년에서야 그 간극이 다소 좁혀졌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낮은 임금 증가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청년층이다. 청년층과 40~50대 간의 월급여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임금 증가율은 60대의 임금 증가율과 상당히 유사한 반면, 최근 2018~2020년 기간에는 사실상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청년층의 월급여는 60대의 월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그림 2]의 (b)에서는 연령대별 월급여의 불평등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지수는 10분위 대비 90분위 월급여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는 각 연령대 별로 표본을 분리하고, 각 표본을 월급여 기준으로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여 하위 10%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치를 비교한 값이다. 정의상 상위 10%의 월급여가 하위 10%의 월급여보다 크므로 p90/p10로 정의된 불평등지수 계수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데, 임금격차가 클수록 1보다 더 큰 수치를 갖게 될 것이다.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60대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대체로 감소한다.⁹⁾ 이러한 월급여의 불평등지수의 역U자형 패턴은 40대와 50대에서도 관찰된다. 특히 임금의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둔화된 50대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불평등지수의 변화폭이 크지 않은데,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임금의 수준이 애당초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청년층은 앞서 [그림 1]의 (b)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1~2020년의 분석기간 동안 임금의 불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불평등지수가 뚜렷하게 낮게 형성되었다. 만약 월급여 불평등지수가 줄어드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단순 해석한다면, 청년의 임금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해석은 합당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2. 청년 임금불평등 지수의 감소 추세에 대한 해석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월급여 불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감소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그것을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불평등지수 변화폭이
크지 않은데,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임금의 수준이 애당초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9) 60대의 불평등지수는 연도별로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60대 임금근로자의 표본 수가 제한적이어서 10분위와 90분위의 값이 제대로 계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년층은 임금 상승률과 불평등지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상위 분위 이상의 임금의 상승률이 청년층 전체의 평균을 끌어올릴 만큼 크지 않았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상쇄할 만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월급여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청년의 월급여 증가율은 낮은 편이며, 최근 60대 이상 고령자의 임금 증가율이 크게 올라, 60대의 임금 수준이 청년의 임금 수준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청년의 월급여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살펴보자. 다른 연령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불평등지수가 높아졌다가 그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청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최근까지 월급여 불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청년층의 불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을 단순히 긍정적인 지표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가?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단순한 해석을 지양하고, 청년층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줄어드는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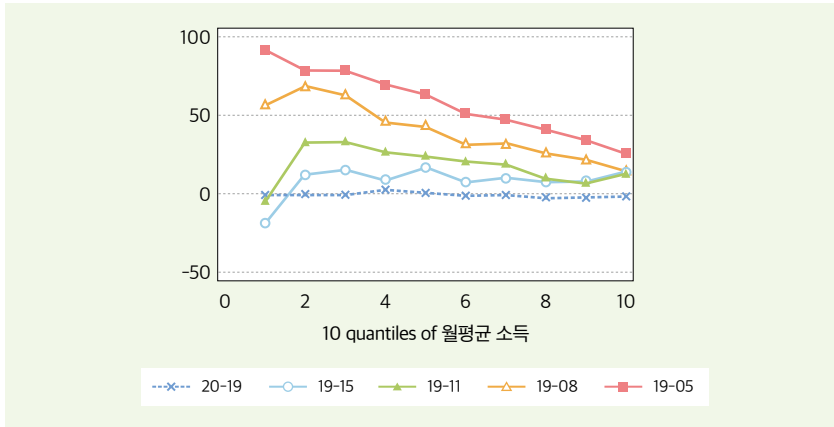
가. 분위별 임금 상승률

청년층은 임금 상승률과 불평등지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중상위 분위 이상의 임금 상승률이 청년층 전체의 평균을 끌어올릴 만큼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상위 임金的 상승률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중하위 분위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청년층 전체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오르지 않고 불평등지수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3]에서는 청년층(25~39세)의 월급여의 분위별 임금 상승률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각 연도별로 청년들의 월급여를 10개의 분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 특정 2개 연도에 대한 분위평균값의 상승률을 계산한 것이다. 점선 표시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각 분위 구간의 분위평균값의 상승률이다. [그림 1]이나 [그림 2]에서는 청년층의 임금 평균값이 2019~2020년 기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림 3]에서도 모든 분위구간에서 임금 상승률이 사실상 0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나머지 그래프는 2019년을 기준으로 과거연도 대비 분위평균값의 상승률을 나타낸다. 맨 위부터 순서대로 2005년, 2008년, 2011년, 2015년의 각 연도 대비 2019년의 분위평균값의 상승률을 보여준다. 2005년 대비 2019년 분위평균값의 상승률이 월급여가 낮을수록(분위가 낮아질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분위의 월급여도 상승하지만, 이는 하위 분위보다 그 상승폭이 적다. 2008년 대비 2019년,

[그림 3] 청년층(25~39세)의 월급여의 분위별 임금 상승률

(단위: %)



-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 2. 만 25~39세 표본 중에서 취업 중이면서 월급여 소득 정보가 관찰되는 경우에 한정함
- 3. [그림 3]의 그래프는 2019년과 다른 시점 간 월급여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음. 그래프의 "19-X"라는 표시는 max(2019, X)연도 대비 min(2019, X) 연도 기간의 임금 상승률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19년 이전의 시기의 X연도의 경우 임금 상승률은 ((2019년 월급여-X시점 월급여)/(X시점 월급여))*100%로 정의되었음
- 4. 분위별로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연도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하였고, 해당 분위의 평균임금값을 계산하였음. 이러한 각 연도 분위별 평균임금값을 이용하여 전술한 임금 상승률을 계산함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하위 분위의 청년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상위 분위의 청년 임금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양방향에서 평균에 수렴하는 청년의 임금분포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대비 2019년 그래프에서도 1분위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추세가 포착된다. 연도에 따라 최고 분위의 임금 증가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분위의 임금 증가율은 계속 하락하여, 2015년에 이르러서는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임금 증가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한다.

반면 1분위의 분위평균값은 2008년 이후에 2분위 분위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난다. 심지어 2019년의 1분위 분위평균값이 2011년이나 2015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초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컨대 청년의 월급여 불평등지수가 점차 감소한 것은(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월급여 상승률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감소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위 분위의 청년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상위 분위의 청년 임금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양방향에서 평균에 수렴하는 청년의 임금분포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등교육이 일반화되어
청년의 숙련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증진된 결과
하위 분위의
청년의 임금을
끌어올렸을 수 있다.

나. 요인별 월급여의 수익률 및 불평등지수 기여도

상위 분위의 청년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하위 분위의 청년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직관적인 시나리오의 하나로서, 교육의 수익률이 분석기간 동안 변화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등교육이 일반화되어 청년의 숙련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증진된 결과 하위 분위의 청년 임금을 끌어올렸을 수 있다.¹⁰⁾ 한편, 일반균형 노동시장에서 고등교육을 취득한 인력의 풍부한 공급은 고등교육의 임금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풍부한 고등교육 인재의 공급으로 인하여 숙련편향 기술이 고숙련 노동에의 수요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향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위 분위 청년의 임금 상승률은 예전보다 낮아질 공산이 크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데이터로도 뒷받침되는지를 검토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월급여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 직종, 업종, 이종노동시장 등의 대표적인 임금요인을 설명변수로 하는 임금방정식을 각 연도별로 추정한다. 각 요인의 수익률이 시간의 추세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두번째 분석에서는 이러한 회귀분석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월급여 불평등지수에 대한 각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도출한다.¹¹⁾ 본 연구에서 임금방정식의 추정 및 임금결정 요인에 대한 측정은 간단한 기초 분석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정교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더욱 설득력 있는 결과를 추정할 수 있겠으나, 가장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정형적 사실을 구축하는 것이 본 절의 주요 목표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1) 분석 방법 개관

첫째, 각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임금방정식을 추정한다. 이때는 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는데, 이는 경력(work experiences)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때 다양한 생애주기에 위치한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OLS 회귀분석을 고려하였고, 구체적인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og Y_j = & \beta_0 + \beta_{Edu} HE_j + \beta_{W,1} E_j + \beta_{W,2} E_j^2 + \beta_{IR,1} IR_j + \beta_{IR,2} SF_j \\ & + \beta_{ID,1} ID_j^{ICT} + \beta_{ID,2} ID_j^{FIN} + \beta_{ID,3} ID_j^{MAF} \\ & + \beta_{OCC,1} OCC_j^{MPS} + \beta_{OCC,2} OCC_j^{OFS} + \beta_{REG} MTR_j + u_j \end{aligned} \quad \text{식 (1)}$$

10) 최저임금 제도로 하위 분위의 임금 상승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 원천소득별 지니계수를 요인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Lerman and Yitzhaki(1985), Stark et al.(198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 j 는 개별 경제활동 주체를 의미한다. Y_j 는 j 의 월급여를 의미하며, 로 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상정한다. HE_j 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E_j 는 경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로 구체적인 교육과정 졸업 여부 정보를 가지고 교육연수를 계산한 후 만 나이에서 '교육연수+7'을 제한 값으로 정의하였다.¹²⁾ IR_j 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¹³⁾ SF_j 는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beta_{IR,1} IR_j + \beta_{IR,2} SF_j$ 는 이중노동시장 요인을 포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D_j^{ICT} 는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고, ID_j^{FIN} 과 ID_j^{MAF} 는 각각 금융업과 제조업에 대하여 유사하게 정의된 더미변수이다. $\beta_{ID,1} ID_j^{ICT} + \beta_{ID,2} ID_j^{FIN} + \beta_{ID,3} ID_j^{MAF}$ 는 업종요인을 포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OCC_j^{M,PF}$ 는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OCC_j^{OFS} 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beta_{OCC,1} OCC_j^{M,PF} + \beta_{OCC,2} OCC_j^{OFS}$ 는 직종요인을 포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MTR_j 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beta_{REG} MTR_j$ 는 지역요인을 포착한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u_j 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으로 가정한다.

둘째,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월급여 로그값의 요인별 불평등지수의 기여도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인별 변수의 값(HE_j , E_j 등)과 추정계수(β_{HE} , $\beta_{E,1}$, $\beta_{E,2}$ 등)를 곱하고 상위 항목(이중노동시장, 교육, 업종, 직종 등)별로 취합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위항목의 추정값은 '월급여 로그값'에 일종의 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천소득별로 지니계수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각 요인별 월급여 불평등지수의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각 특질변수의 계수는 추정된 계수로, 개인별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도 내 월급여의 불평등은 특질변수의 개인간 이질성에만 기인한다. 반면 연도 간 월급여의 불평등은 개인 간 특질변수의 이질적 분포뿐 아니라 요인별 수익률의 시계열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2) 임금방정식 회귀분석의 연도별 추정 결과

먼저 [그림 4]의 개인별 자원변수의 평균값과 추정계수의 시간추세를 검토한다.

연도 내 월급여의 불평등은 특질변수의 개인간 이질성에만 기인하는 반면, 연도 간 월급여의 불평등은 개인 간 특질변수의 이질적 분포뿐 아니라 요인별 수익률의 시계열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12) 7년을 추가적으로 제한 것은 초등학교 직전까지의 기간이 경력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3) 종사상지위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정의를 사용하였다.

노동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고려하면 고등교육 수익률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교육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평균값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고려하면 고등교육의 수익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점선으로 나타나는 고등교육의 수익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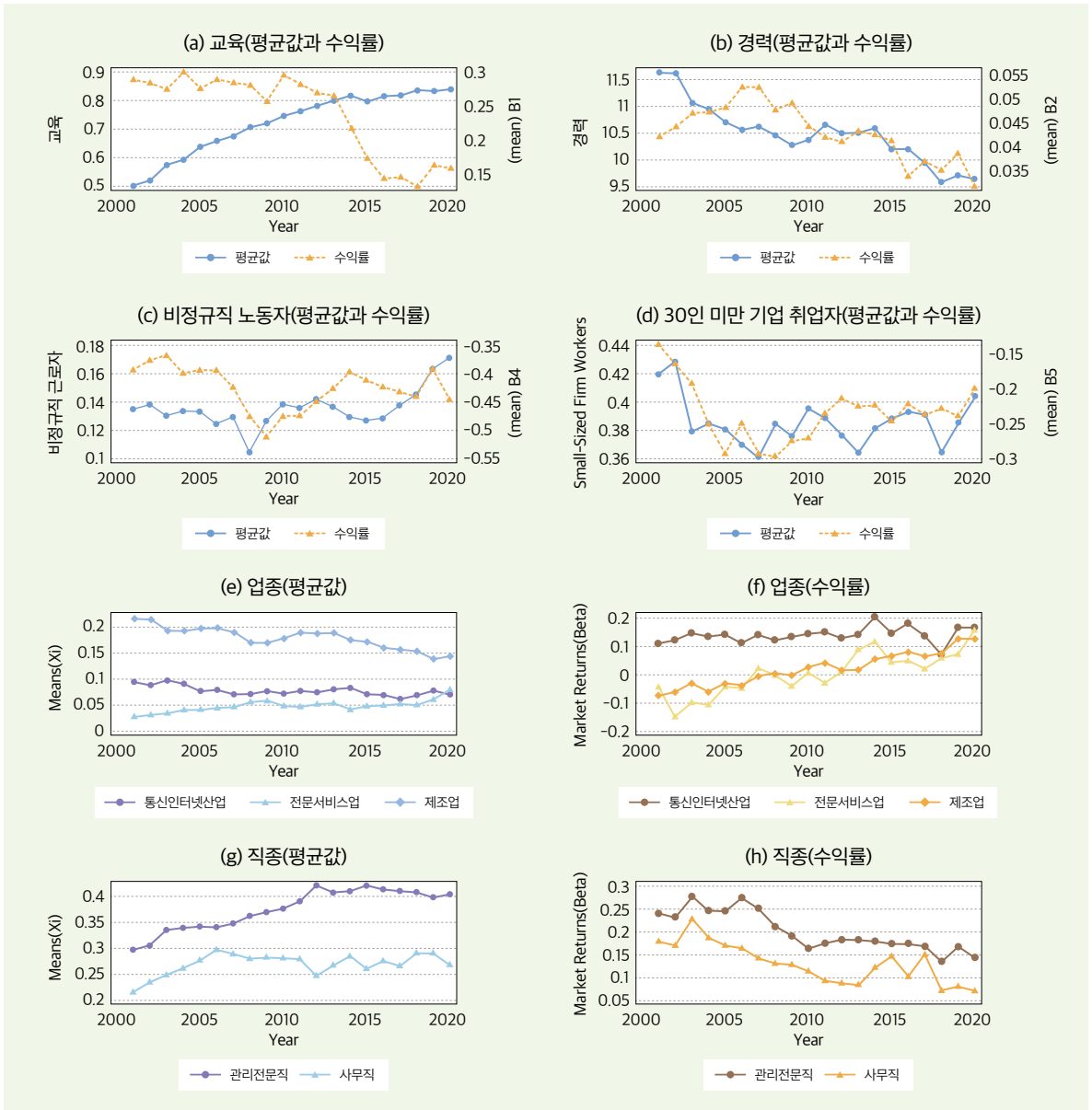
[그림 4]의 (b)는 경력의 평균값과 수익률의 추세를 보여준다. ‘경력’ 변수는 만 나이에서 교육연수에 7을 더한 합계액을 제하여 계산되었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경력은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청년층의 경력 평균값도 시간에 따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경력의 평균값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률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직관적인 현상은 경력이 실제 경력이 아니라, 대리변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취업으로 인한 경력이 아닐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은 비경제활동기간, 실업기간, 학원 등 훈련기간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가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여부 및 30인 미만 취업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검토한다. 비정규직 30인 미만 기업 취업자의 경우 연도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값 및 계수 모두 일정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015년 이후 그 평균값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다.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계수의 절댓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크게 증가(폐널티 강화)했다가 축소되었는데, 2014년부터 다시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의 (e)-(f)에서는 통신인터넷산업, 전문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할 확률과 각각의 시장수익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그 수익률이 최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감소추세인 반면 전문서비스업 종사자는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2018~2020년 기간에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통신인터넷산업 종사자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며, 수익률 역시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직종의 경우 관리자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청년층 비율이 시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직종의 상대적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그 하락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큰 폭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무직의 경우는 그 비율 및 관련 수익률의 변화는 최근 10년간 상당히 큰 폭으로

[그림 4] 주요 요인별 시간추세: 평균값과 수익률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만 25~39세 표본 중에서 취업 중이면서 월급여 소득 정보가 관찰되는 경우에 한정함
 3. [그림 4]는 월급여에 대한 주요 요인별로 해당 요인의 평균값과 회귀식의 계수값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단 직종의 경우에는 두 개의 직종 더미변수(관리·전문직 변수와 사무직 변수)를 고려했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하여 평균값을 (g)에, 회귀식 계수는 (h)에 제시함
 4. 회귀식 계수는 월급여를 종속변수로 하고 (a)~(h)에서 제시된 요인을 설명변수로 취하는 식 (1)의 회귀식을 각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임금프리미엄
취득수단의 보편화로
청년층의 하위 임금이
상승한 반면,
임금프리미엄의 감소로
청년층의 상위 임금의
상승률이 감소한 결과
월급여의 평균값은
정체되고 불평등지수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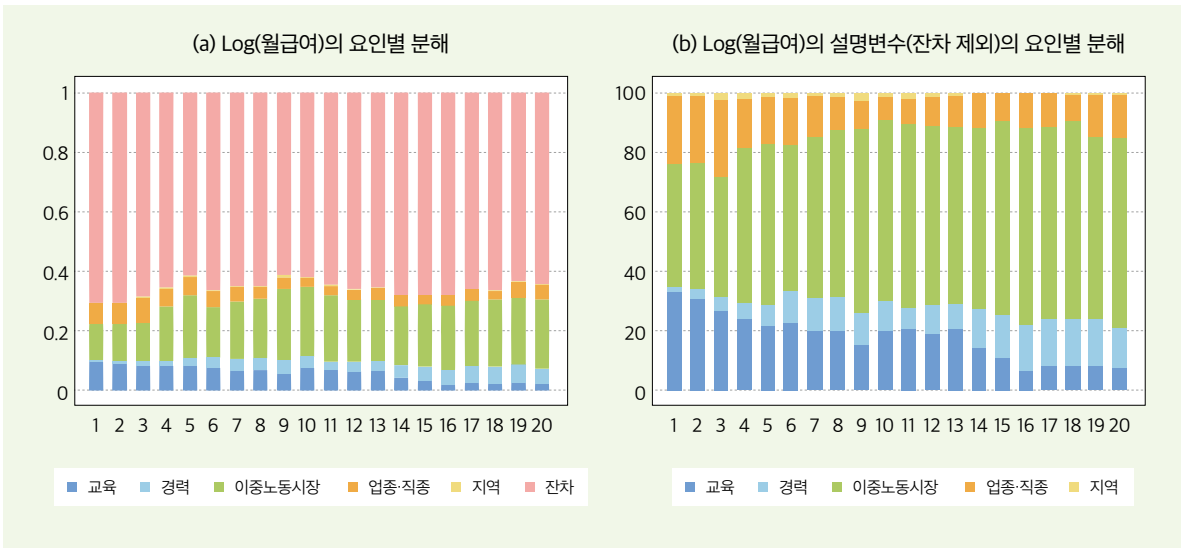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무직 비율은 정체되어 있으나 그 수익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 혹은 [그림 2]에서 이미 확인한 청년층의 월급여의 평균과 불평등지수가 줄어드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통적인 임금프리미엄 취득수단의 보편화로 인하여 청년층의 하위 임금 수준이 상승한 반면, 임금프리미엄 자체의 감소로 청년층의 상위 임금의 상승률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월급여의 평균값은 정체되고, 월급여의 불평등지수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 요인분해의 연도별 변화

[그림 5]에서는 청년층(25~39세)의 Log(월급여)의 요인별 기여도의 연도별 변화

[그림 5] Log(월급여)의 요인별 기여도의 연도별 변화



-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 2. 만 25~39세 표본 중에서 취업 중이면서 월급여 소득 정보가 관찰되는 경우에 한정함
- 3. 식 (1)에 의하면 $\log(\text{월급여}_i) = \sum_k \beta_k X_{ik} + \hat{\epsilon}_i$ (k 는 결정요인을 의미함)으로 표현할 수 있음.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log(\text{월급여}_i)$ 에 지니계수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을 연도별로 수행함
- 4. 가독성을 위하여 주요 요인은 '기업 규모, 정규직 형태와 관련된 결과를 묶어 '이중노동시장'으로,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결과를 묶어 '업종-직종'으로 묶어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5. (a)에서는 설명변수와 잔차에 의한 지니계수 기여도를 모두 보여주는 반면(합계 100%), (b)에서는 잔차를 제외한 설명변수에 의한 기여도를 100%로 상정한 후 각 설명변수의 지니계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음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를 보여주고, 잔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100%로 상정한 후 고려한 설명변수의 기여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한 임금결정 요인이 아닌 비관측 요인(unobservables)에 의한 임금불평등 지수 기여도가 대체로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비중은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15년까지 감소한 후, 최근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이종노동시장(비정규직 및 30인 미만 기업 종사)의 임금불평등 지수의 절대적 기여도는 2001~2010년 기간 동안 확대된 이후 2011~2020년 기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설명변수 전체 기여도 내에서는 상대적인 기여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고등교육 취득 여부로 인한 절대적 기여도 및 상대적 기여도가 2001~2020년 기간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같은 기간 경력에 의한 임금불평등 기여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6~2020년 기간 교육요인이 임금불평등 지수에 기여하는 수준은 지역요인 다음으로 낮다. 넷째, 직종과 업종에 의한 기여도는 2001~2005년 기간에 가장 컸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및 그 이후의 회복기간 동안에 줄어들었다가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섯째, 지역(수도권 거주 여부) 변수는 상대적, 절대적 측면에서 모두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임금방정식의 결과와 연관지어 검토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청년의 불평등 수준에 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초기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데이터 패턴과도 일치한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상위분위 임금이 낮아지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하위 분위 임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력요인의 경우 평균값과 수익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감소함에도 불구하고(그림 4의 (b)),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에 대한 기여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금불평등 지수가 연도별로 계산되었고, 모든 청년들이 해당 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경력의 수익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곧 청년들의 경력 분포가 상당히 이질적임을 함의한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 정규교육 이후 노동시장에의 이행 과정이 개별 청년마다 특히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등교육 취득 여부로 인한 절대적 기여도 및 상대적 기여도가 2001~2020년 기간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같은 기간 경력에 의한 임금불평등 기여도가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의
노동시장참여지표는
정규직-비정규직 측면의
이중적 노동시장 특징과,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취업이라는
경제활동 참여의 특징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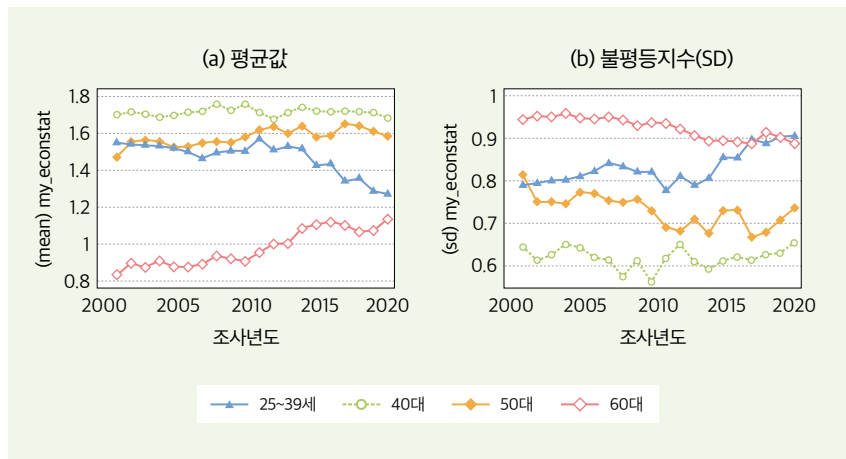
다. 노동시장참여지표의 불평등지수

청년 월급여의 불평등지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앞서 보여주었다. 또한 임금불평등 지수의 추세에 대한 해석 외에도, 임금불평등 지수는 그 지표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생성된 지표이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0,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의 값을 부여하였다.¹⁴⁾ 그러므로 본고에서의 노동시장참여지표는 정규직-비정규직 측면의 이중적 노동시장의 특징과, 비경제활동인구-실업-취업이라는 경제활동 참여의 특징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남성에 한정하여 연령구간별 노동시장참여지표의 연도별 평균

[그림 6] 청년층의 노동시장참여지표의 불평등지수(남성)

(단위: 만원, 비율)



-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 2. 표본으로 각 연도 만 25~39세에 해당하는 남성을 모두 포함하되, 취업활동을 하지만 월급여가 관측되지 않은 경우는 배제하였음
- 3. 노동시장참여지표는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2,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1, 실업상태이거나 비경제활동인 경우 0으로 정의하였음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14) 임금 수준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거나 비정규직/정규직 특질 외에 기업의 규모 특질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값과 불평등지수(표준편차)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동참여지표의 평균값을 살펴보자. 청년층(25~39세)을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노동시장참여지표가 대체로,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50대의 경우 2014년까지는 그러한 추세가 두드러지고, 그 이후에 하락세를 보인다. 40대의 경우 중간 기간에 등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2000년 대비 그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다. 60대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지표의 증가세가 가장 여실히 나타난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노동시장참여지표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참여지표의 불평등지수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001~2010년 기간에 다소 하락했다가 2017~2020년 기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청년과 40대의 경우, 해당 기간 임금불평등 지수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비록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본고에 신지는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지표는 증가하는 반면 불평등지수는 개선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혼인, 출산의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남성에 비해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노동시장 자체의 분석으로 그 패턴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 주제로 남겨둔다.

요컨대, 취업-미취업 및 이중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살펴본 결과 남성 청년층의 경우 해당 지표의 평균값은 낮아지고(취업여건의 악화를 의미), 불평등지수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비록 여성 청년층까지 포함한 전체 표본을 기반으로 수행한 분석은 아니지만) 노동시장 진입장벽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시장 불평등지수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¹⁵⁾

IV. 결론 및 정책함의

본고에서는 2001~2020년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월급여 평균과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청년층 임금불평등 지수에 대한 연구는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 정책의 조준대상 및 정책기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간, 수당 및

청년층의 경우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노동시장참여지표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2015~2019년 패널을 이용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격차를 연구한 이주미·김태완(2022)에서도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8년 이후로 증가한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본고의 노동시장참여지표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림 6]의 (a)의 결과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승윤 외(2017)에서는 고용관계, 소득, 사회보험의 세 가지 측면의 고용불안정성을 2002~2014년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매우 불안정함과 전혀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 니트족 등도 포함한다는 점과 취업인구를 넘어서는 집단에 대한 불평등 연구라는 점에서 본 절의 분석과 맥락이 동일하나, 전혀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의 비중이 높아진 사실은 본 연구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비임금 측면까지 고려한 청년의 노동시장 불평등 연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실제로 낮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수당 기제 간 정책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청년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일반적으로 흔히 할 수 있는 예상과는 달리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어온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인식과의 간극이 상당히 큰 바, 본고에서는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낮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시도하였다. 첫째, 임금 상승률의 추세를 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하위 분위의 임금이 상위를 따라잡는 방식으로 임금불평등이 해소되는 ‘상향평준화’인지, 상위 분위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하향평준화’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교육, 경력, 직종, 업종, 이종노동시장 등의 주요 요인별로 로그임금에 대한 수익률과 지니계수 기여도를 2001~2020년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의 불평등지수의 기여도를 살펴봄으로써 임금불평등 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의 원인을 짐작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새롭게 정의하여 이 지표의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는 임금불평등 지수가 취업시장에 이미 진입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임금불평등 지수가 낮아지는 것처럼 나온 것이 혹 노동시장에의 진입장벽 상의 불평등 요인을 누락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분석 결과 및 관련 해석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2019년 기간 분위별 임금 상승률을 검토한 결과(1분위를 제외한 경우) 분위가 높을수록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분위의 경우는 분석 기간 초반에 상당한 임금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점차 정체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위 분위의 임금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9~2020년 기간 자료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은 RMF분위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분석기간 초반에는 하위분위의 임금이 상위 임금을 따라잡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상위분위의 임금 상승률이 분석기간 동안 대체로 정체되어 있고, 최근에는 하위분위의 임금 상승률까지도 정체되는 경향성은 청년 노동시장이 성장력을 잃고 노동생산성에

상관없는 일정수준의 임금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둘째, 로그임금 수익률과 불평등지수 기여도를 주요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의 임금수익률이 분석기간 크게 줄어들었고, 로그임금의 불평등지수에의 기여도 역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력 및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여부와 관련된 요인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지수의 경우, 직종이나 업종 요인의 절대적 기여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경력 요인의 절대적 기여도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종노동 시장 요인은 관측된 변수(observables) 간 상대적 기여도가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요인을 측정하고 정의하는 방식 및 요인분해 분석 기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교육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불평등지수 기여도가 낮아지는 추세는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면서, 첫 번째 분석 결과와도 부합한다.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대학졸업자의 양적공급이 늘면서 교육의 임금수익률이 악화된 반면, 평균적인 학력은 끌어올려졌다. 이러한 고등교육 임금에의 영향 메커니즘이 상위 분위의 임금 상승률은 정체된 반면 하위 분위의 임금은 크게 상승하여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낮아지게 된 주요 배경일 수 있다.

셋째, 남성 청년층에 국한하여 노동시장참여지표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참여지표의 평균값은 하락하고, 불평등지수는 최근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자만을 고려한 임금불평등 지수가 시간흐름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는 패턴과 상반되는 결과다. 본고에서는 미취업자는 0, 비정규직 취업자는 1, 정규직 취업자는 2의 값을 단순하게 부여한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지표를 고안할 수 있다. 또한, 여성 표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적어도 노동시장 진입에의 불평등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결국, 청년층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시간에 따라 낮아졌지만 전술한 세 가지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것이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징후로 단순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정책방향이

**분석 결과 청년층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시간에 따라 낮아졌지만,
이것이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징후로
단순히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인 정책방향으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어느 한쪽보다는
현금성 지원은
청년취약계층을 조준하고
비현금성 지원의 경우
정책대상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해 특정 청년계층만 지원하기에는 청년층이 맞닥뜨리는 노동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 전통적인 임금프리미엄의 기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오늘날, 청년층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중장년층 이상의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일부 청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청년이라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청년대상 보편적 현금지원 방식만을 일방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현금성 지원의 경우 정부의 예산제약으로 인하여 조준대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완전한 보편적 지원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청년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한다 하여도 그러한 현금성 지원이 노동수요(기업) 차원의 문제 등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으로는, 현금성 지원은 청년취약계층을 조준하고, 비현금성 지원의 경우 정책대상을 현재보다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본 분석의 내용이 실제 현실을 적절히 포착했다는 가정하에서 몇 가지 정책 함의를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인 청년에게 노동생산성에 걸맞게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인턴 및 훈련생 제도는 미숙련 취업자에게 노동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제도 하에서 청년이 일반 취업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동시에 고등교육을 취득한 청년의 인적자본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숙련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일자리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성장과 원활한 시장 진입 및 퇴출을 지원하는 산업정책부터, 기업이 고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훈련 정책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이 일정한 비전하에서 맞물려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공급 정책을 넘어 노동수요 차원의 정책이 ‘일자리정책’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대학졸업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임금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져 임금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였다. 숙련편향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 이론이 그렇게 제안된 이론 중의 하나이다. 요컨대, 고숙련 노동공급이 풍부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려는 노동수요가 더욱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임금 수준이 동시에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임금을 주면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체가 많아질 때 가능한 일이다. 고등교육 공급수준이 이미 높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사업체가 많아진다면, 청년층 내 임금불평등 지수는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청년층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률은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전의 교육과 훈련에의 투자시간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숙련을 내실 있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물론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등교육 취득은 필수적인 자격증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성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대두될 것이며, 그러한 인적자본은 비단 학교나 학원을 다녀야만 취득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어떤 분야의 새로운 흐름을 직접 파악하고, 협업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 자리 경험이 필수적일 수 있다.


청년층이 고등교육 진학, 노동시장 신규진입, 혼인, 출산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마주하는 것만큼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임금불평등 지수의 패턴을 제시하고 이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보고자 시도한 본고의 내용 역시, 청년 노동시장에 내재된 복잡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의 설계는 다양한 분석자료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수행된 여러 연구에 밑바탕을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본 분석 결과는 노동패널조사라는 단일 자료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에 정의된 변수의 개념도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그임금의 요인분해나 노동시장참여지표는 각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청년의 양극화 문제를 통상적으로 논의할 때, 청년의 근로소득뿐만 아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의 설계는 다양한 분석자료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수행된 여러 연구에 밑바탕을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청년의 양극화 문제를
논의할 때 부모의
소득 수준까지
포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분석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해당 추세를
임금불평등 지수 추세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라 청년의 금융자산이나 부모의 소득 및 자산 수준까지도 포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불평등지수’ 분석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해당 추세를 임금 불평등 지수의 추세와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입법 예고」, 2017. 12. 28.,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347, 검색일자: 2022. 8. 10.

노혜진,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제38집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p. 71~102.

성명재,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의 추정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제22권 제1호, 2016, pp. 1~79.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관사회정책』, 제54권, 2017, pp. 487~521.

이주미·김태완,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pp. 8~20.

Lerman, R. I., and S. Yitzhaki,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 1985, pp. 151~156.

Stark, O., J. E. Taylor, and S. Yitzhaki, “Remittances and inequality,” *Economic Journal*, 96, 1986, pp. 722~740.

『서울경제』, 「쏟아지는 청년수당, ‘물고기’ 아닌 ‘그물’ 주는게 근본 해법」,
2022. 1. 25., <https://www.sedaily.com/News-View/26102CKK2G>, 검색일
자: 2022. 8. 16.

서울특별시, 「내손안에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 2021. 8. 25.,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71583>, 검색일자: 2022. 8. 16.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각 연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ps/contents.do?key=168>

『한국대학신문』, 「5조원 넘게 쏟아부은 청년정책, 보편성 부족·정책효과도 ‘의문」,
2022. 5. 1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8233>,
검색일자: 2022. 8. 16.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에 대한 소고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bjhong@kipf.re.kr)

I. 서론

최근 급속한 기업부채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BIS의 GDP 대비 기업부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분기별 기업부채의 연간 상승률은 6.02%이며 이는 선진국(4.62%) 및 G20(4.61%) 국가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¹⁾ 기업부채 수준도 BIS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1962년 4분기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 및 G20 국가들의 경우 GDP 대비 기업부채 수준이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정책들과 맞물려 2019년 4분기부터 증가하다가 2020년 4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 기업부채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전후의 급격한 증가 속도를 유지하며, 가장 최근 관측치인 2022년 1분기에는 BIS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까지 도달하였다.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는 이유는 영업활동 시 차입한 금액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차입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가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효과와 이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부채 활용은 효율 증대, 기업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채는 금융계약, 이자지출 부담 증가 등의 경로들을 통하여 기업의 고용, 투자, 연구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기업부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고 적절한 기업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기업부채 수준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업부채와

1) BIS Statistics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 금융기업들을 제외한 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수준을 정리한 Credit to non-financial corporations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법인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세의 주된 목적과 목표가 기업부채 수준의 조정은 아니지만, Modigliani-Miller 자본구조 이론과 같은 기존의 연구들이 기업부채와 법인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²⁾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율과 기업의 자본구조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수행한 연구와 기존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재무정보에서 과세소득의 추정을 세밀화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혹은 이와 더불어 이연법인세증감 부분을 고려한 과세소득에 추가적으로 경영활동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단사업손익을 고려하여 과세소득 추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둘째, 기존의 국내연구들에서 간과하였던 결손금 이월공제와 결손금 소급공제를 고려하여 기업별·연도별 과세표준 추정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연구들은 KOSDAQ 시장의 개시(1996년 7월 1일) 이후를 전제표본으로 잡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고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장회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기업부채의 현황, 법인세법의 변화, 부채비율과 법인세의 추세, 선행연구 등을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소개와 변수설정 및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법인세가 기업부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며 마무리한다.

Ⅱ. 연구 배경

1. 현황

가. 기업부채의 현황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 GDP 대비 기업부채는 113.7%이며, 이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의 108.5%를 상회하는 수치이다.³⁾ 이는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기존에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본고에서는 기업부채 수준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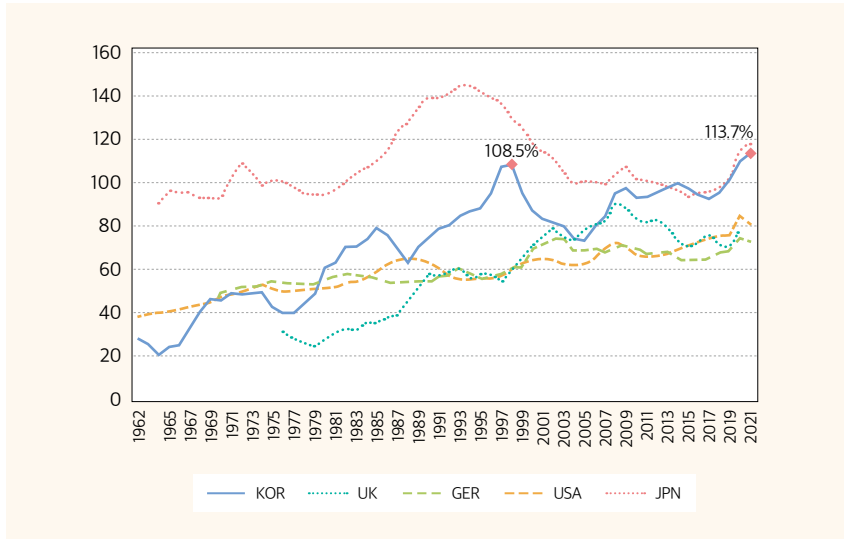
2)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에서 기업부채 변화의 법인세에 대한 민감도 추정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법인세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3) BIS Statistics에서 최근에 발표한 2022년 1분기 GDP 대비 기업부채를 보면 115.2%로 [그림 1]에 제시된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GDP 대비 기업 부채는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GDP 대비 기업부채(BIS)

(단위: %)



주: 1.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GDP 대비 총부채

2. BIS Statistics의 Credit to non-financial corporations의 자료는 분기 자료이나 연말 기준으로 작성

출처: BIS Statistics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22.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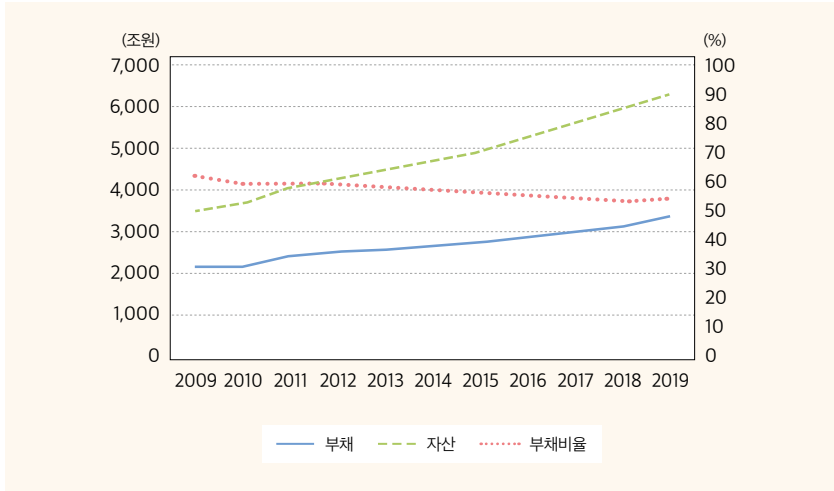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일본의 GDP 대비 기업부채 수준과 비슷해지고 있다.

[그림 2]는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부채 및 총부채비율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기업의 부채는 2009년 2,147조원 정도이며 2019년 3,370조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⁴⁾ 반면에 부채비율은 2009년 61.5%에서 2018년 52.9%까지 하락하였다가 2019년 53.8%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자본의 증가가 부채의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에 기인한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⁵⁾ 또한 [그림 2]에서 제시된 측정치가 기업별 관측치에 대한 평균이 아닌, 총합의 단순 비율이기 때문에 기업별 관측치의 분포에서 오는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기업의 부채 수준이 다소 높다 할지라도 해당 기업의 수익이 이자비용과 원금을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지금의 부채 수준이 위험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업들이 영위하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이자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영업

4)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총부채와 총자산의 개념은 재무제표상의 총부채 및 총자산의 개념과 동일하며, 이는 BIS statistics에서 정의하는 부채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따라서 이 두 추정치의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5) 적정수준의 부채비율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으나, 부채비율이 50%를 상회한다는 것은 현재 자기 자본을 가지고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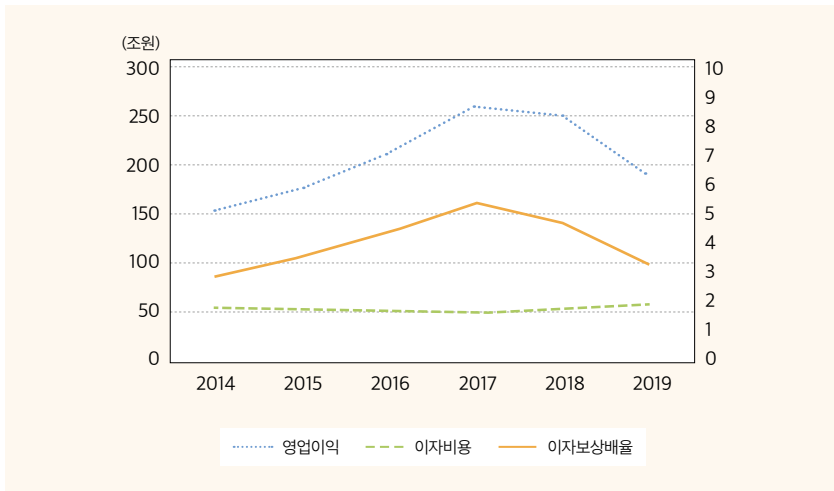
[그림 2] 기업의 부채 및 부채비율 추이(국세통계연보)



주: 1.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부채, 자산 및 부채비율
 2. 부채비율 = 부채/자산
 3. 국세통계연보의 총부채와 총자산의 개념은 재무제표상의 총부채 및 총자산의 개념과 동일함
 4. 부채와 자산은 왼쪽 눈금을 따르며, 부채비율은 오른쪽 눈금을 따르고 있음
 출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22. 9. 22.

코로나19 충격의 지연을 위하여 혹은 이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낮은 시장 이자율에 반응하여 기업들은 부채 수준을 증가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추이(국세통계연보)



주: 1.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2.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3.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은 왼쪽 눈금을 따르며, 이자보상배율은 오른쪽 눈금을 따르고 있음
 출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22. 9. 22.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1949년 11월 7일
법인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개별적인
법안에 따라 과세되었고,
법인세법은
국가 경제발전과
기업 경영활동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을 [그림 3]에 정리하였다. 주로 영업이익의 증감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증감을 보이며 2017년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하여, 기업들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채의 증가와 영업이익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자보상배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코로나19 충격의 지연을 위하여 혹은 이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낮은 시장 이자율에 반응하여 기업들은 부채 수준을 증가시키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채의 증가가 감소하는 영업이익에 맞물려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법인세법의 변화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1949년 11월 7일 「법인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개별적인 법안에 따라 과세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일반법인과 특별법인으로 과세 대상을 나누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각각 35%,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그 이후 국가 경제발전과 기업 경영활동의 변화로 인하여 「법인세법」은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표 1>에서는 1981년 이후 공개 및 상장법인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율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1980년 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1981년부터 과세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5%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1982년에 종전의 공개법인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법인세율이 폐지되면서 1983년부터 영리법인일 경우 과세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0%, 그 초과분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1988년에는 과세표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990년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과세표준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였을뿐만 아니라, 최대세율도 34%로 큰 폭의 인상을 적용하였다. 그 이후 2007년 이전까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저세율과 최대세율을 인하하였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2007년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과세표준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저세율을 11%로 낮추어 기업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 여파가 길어지면서 2008년 개정에서는 최대세율도 22%로 종전의 25%에서 3%p를 낮추었으며, 2009년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최저세율을 추가적으로 1%p 낮추어 10%를 적용하였다. 그 이후 점차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회복됨에 따라 2011년 개정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여

200억원의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017년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과세구간을 하나 더 추가하여 3천억원의 과세표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1> 1981년 이후 법인세율의 변화: 공개·상장법인 기준

(단위: 만원, %)

사업연도	과세표준	법인세율
1981 ~ 1982	5,000 이하	25
	5,000 초과	33
1983 ~ 1988	5,000 이하	20
	5,000 초과	30
1989 ~ 1990	8,000 이하	20
	8,000 초과	30
1991 ~ 1993	10,000 이하	20
	10,000 초과	34
1994	10,000 이하	18
	10,000 초과	32
1995	10,000 이하	18
	10,000 초과	30
1996 ~ 2001	10,000 이하	16
	10,000 초과	28
2002 ~ 2004	10,000 이하	15
	10,000 초과	27
2005 ~ 2007	10,000 이하	13
	10,000 초과	25
2008	20,000 이하	11
	20,000 초과	25
2009	20,000 이하	11
	20,000 초과	22
2010 ~ 2011	20,000 이하	10
	20,000 초과	22
2012 ~ 2017	20,000 이하	10
	20,000 초과 ~ 2,000,000 이하	20
	2,000,000 초과	22
2018 ~ 2022	20,000 이하	10
	20,000 초과 ~ 2,000,000 이하	20
	2,000,000 초과 ~ 30,000,000 이하	22
	30,000,000 초과	25

출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2007년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과세표준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저세율을 11%로 낮추어 기업부담을 낮추려 노력하였다.

결손금 처리에 대한 체계도 꾸준히 변화하여 2018년 법인세법 개정에서 결손금 최대 이월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비중소기업의 과세표준 대비 최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60%로 대폭 감소시켰다.

단순한 세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결손금 처리에 대한 체계도 꾸준히 변화하였다. <표 2>에서는 1981년 이후 공개 및 상장법인을 기준으로 한 결손금 이월의 변화를 요약하였다. 사업연도 기준 1981년부터 1988년까지는 3년 전의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가 가능하였다. 이후 결손금의 최대 이월기간은 1988년 개정을 통하여 5년으로 연장이 되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2008년 법인세법 개정에서 결손금 최대 이월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이후 2016년부터 중소기업과 비(非)중소기업 간의 과세표준 대비 결손금 이월공제 최대 비율에 차등을 주기 시작하여, 중소기업은 이전과 동일하게 100%의 과세표준 대비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중소기업은 80%로 제한되었으며 이는 2017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70%로 낮아졌다. 2018년 법인세법 개정에서 결손금 최대 이월 가능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비중소기업의 과세표준 대비 최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60%로 대폭 감소시켰다.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 1997년부터 중소기업에만 한정하여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 결손금에 해당하는 직전연도의 법인세를 소급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의 과세표준보다 결손금이 큰 경우에는 소급공제를 받은 부분을 제하고 결손금 이월이 가능하다.

<표 2> 1981년 이후 결손금 이월에 대한 법인세법의 변화: 공개·상장기업 기준

(단위: %, 년)

과세연도	법인 종류	과세표준 대비 결손금 이월공제 최대 비율	최대 이월 기간
1981 ~ 1988	공개·상장법인	100	3
1989 ~ 2008 ¹⁾	공개·상장법인	100	5
2009 ~ 2015	공개·상장법인	100	10
2016 ~ 2017	중소기업	100	10
	중소기업 외	80	10
2018	중소기업	100	10
	중소기업 외	70	10
2019 ~ 2022	중소기업	100	15
	중소기업 외	60	15

주: 1) 1997년 이후로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도 가능
출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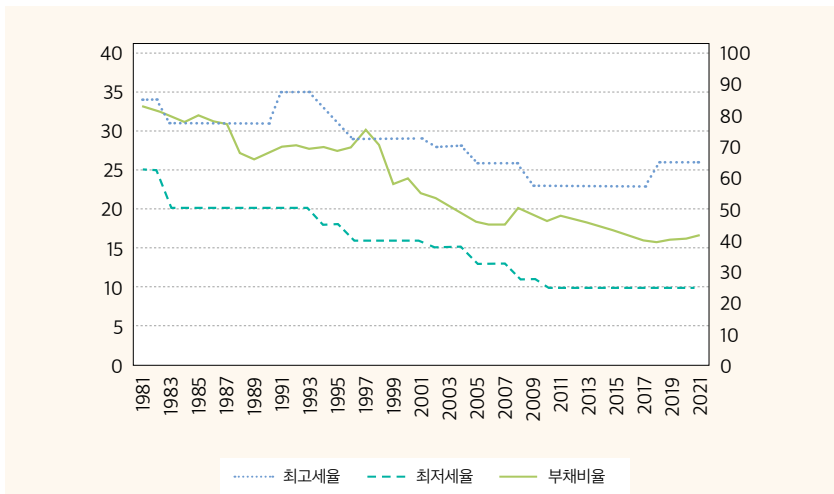
가. 부채비율과 법인세율의 추세

기업부채와 법인세율의 관계를 간략하게 확인해보기 위해서, 상장기업의 부채비율과 법인세의 추세를 [그림 4]에 정리하였다. 부채비율의 경우 이전 자료들과 다르게 개별 상장기업들의 연도별 부채비율을 구한 뒤 그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에 따른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의미한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채비율과 법인세율의 변화는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인 1998년 전후와 2008년 전후에는 법인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 시기에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긴급자금지원이나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부채의 사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018년에 최대세율이 22%에서 25%로 상승하자 하락추세에 있던 부채비율에도 변곡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정책과 맞물려 부채비율이 상승추세로 돌아섰다.⁶⁾

부채비율과 법인세율의 변화는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2018년에 최대세율이 상승하자 하락추세에 있던 부채비율에도 변곡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정책과 맞물려 부채비율이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그림 4] 상장기업의 부채비율과 법인세의 추세

(단위: %)



주: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은 왼쪽 축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비율은 오른쪽 축을 기준으로 함
출처: 저자 작성

6) 이를 근거로 추후 회귀분석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부채변화를 제어하기 위해 산업×기간 고정효과를 추가하여 분석한다.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에 대한 선행이론
연구들의 공통된 주장은
부채 사용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게 되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나. 선행연구

1) 이론 연구

기업부채와 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한 가장 기념비적인 이론적 연구는 Modigliani & Miller(1963, MM)이며, 이는 그들이 1958년에 제시한 자본조달방법과 기업가치 간의 무관계성을 주장하는 무관련이론(Irrelevance Theory)에 대한 수정모형이다. MM(1958)의 무관련이론에서는 완전자본시장하에서 기업의 가치는 투자기회와 그 기댓값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든지 기업의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한다.⁷⁾ 하지만 무관련이론의 기저에 있는 가정들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있었으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인 법인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Modigliani와 Miller는 1963년 수정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수정모델에는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가치에 비해 높으며, 그 차이는 정확히 부채 사용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절세효과의 현재가치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⁸⁾

만약 MM(1963)의 수정이론이 현실세계를 잘 반영한다면, 기업들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모두를 차입으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며,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가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부도와 관련된 Kraus & Litzenger(1973)의 이론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대리인 비용과 관련된 Jensen & Meckling(1976)와 Myers(1977)의 이론이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Kraus & Litzenger(1973)의 이론에서는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를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위험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채무불이행 및 파산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부도 가능성의 증대는 기업의 기대파산비용 증가로 귀결된다. 따라서 기업은 부채 사용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절세효과와 기대파산비용의 증가효과 사이에서 기업가치를 최대로 하는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하며, 이것이 Kraus & Litzenger(1973)의 상충이론(Trade-off Theory)의 주된 내용이다.⁹⁾

Jensen & Meckling(1976)과 Myers(1977)의 이론은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부채 사용과 관련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채무자인 주주와 채권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이질적인 효용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

7) Hirshleifer(1966), Robichek & Myers(1965), Stiglitz(1969) 등에서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

8) 이후의 Miller는 1977년 발표한 균형부채이론(Miller's Equilibrium)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한계 개인소득세율과 한계 법인세율이 동일한 균형상태에 있는 경우 자본구조와 기업가치는 무관함을 보였으나,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최적의 부채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9) 이후에 Galai & Masulis(1976), Jensen(1986), Shleifer & Vishny(1989), Stultz(1990), Rajan & Zingales(1995), Leary & Roberts(2010) 등의 연구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Jensen & Meckling(197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적정수준보다 과대하게 투자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기업의 부채 의존도가 높을 경우, 주주가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호하게 되어 과대투자문제(Over-investment)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Myers(1977)는 기존의 부채가 너무 클 경우, 기존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순이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큰 투자기회를 놓치는 경우인 과소투자문제(Debt Overhang)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결국 Jensen & Meckling(1976)과 Myers(1977)의 이론은 이러한 부채 사용의 대리인 비용 때문에, 이자비용의 절세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약하자면 부채 사용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다만, 부채 사용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실증 연구

법인세율과 기업부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 해외의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해외 실증 연구는 앞서 논의한 이론 연구와 일관되게 법인세율과 기업부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Gordon & Lee(2001)는 미국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세율이 부채 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소기업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Graham & Tucker(2006)는 조세 피난처를 사용하여 세금 회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국의 기업이 해당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가지는 것을 보였다. Graham, Leary & Roberts(2017)는 1940년대부터 미국 기업의 부채비율의 변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부채비율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법인세율의 경우 부채비율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사용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사용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는 법인세율이 기업부채 정책과 내생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선행 실증 연구에서는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정책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법 개정을 법인세율의 외생적 충격으로 고려한 분석을 실시(Graham & Kim, 2009)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다.

사항 중 하나는 법인세율이 기업부채 정책과 내생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부채를 발행하면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많은 부채를 발행하여 과세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 이는 결국 기업의 한계 법인세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계 법인세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부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음(-)의 편향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MacKie-Mason(1990)은 부채 수준이나 부채비율의 값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 부채 발행 결정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Graham(1996a, b)은 한계 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자본조달 비용 이전의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자료와 더불어 추가적인 정보나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Fleckenstein, Longstaff & Strebulaev(2020) 등의 연구에서는 변수의 차분과 독립변수에 시차를 적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Graham & Kim(2009)과 같이 세법 개정을 법인세율의 외생적 충격으로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자료를 사용한 실증 연구 중에서는 변수들의 정의, 사용된 표본 및 한계세율의 추정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종권(2003), 신승묘(2005), 이윤구·라영수(2012), 정희정(2016), Park & Lee(2019) 등에서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부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윤태화·심현욱(2008), 이현석·정미화(2019) 등은 법인세율과 기업의 부채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III. 데이터 및 연구 방법

1. 데이터 및 변수설정

기업부채 증가와 법인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각 개별 기업의 부채 수준의 변화 혹은 부채비율의 변화이며, 독립변수는 기업의 한계 법인세율의 변화이다. 통제변수로는 기업 규모, 자산 유형성, 수익성, 성장성, 비부채감세수단 및 주식 자본 조달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여 개별 기업의 특성을 제어하였다.

본고의 분석 기간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이나, 법인세율의 경우 재무정보를

1981년부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981년부터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를 계산하여 추정하였다. 기업의 재무정보가 1981년부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석 기간을 1990년부터 설정한 주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주기수익률 자료가 1990년부터 획득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기업들은 KOSPI와 KOSDAQ의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 업종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기업 재무자료는 KIS-Value와 TS2000에서 추출하였으며, 회계표준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 모든 재무정보들은 K-GAAP 기준으로 변환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 법인세율의 추정

법인세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활용한 과세소득을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의 과세 규칙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고려하여 개별 기업의 연도별 과세표준, 법인세, 실효 및 한계세율을 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이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하지만 연구의 편의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 현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먼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 과세소득의 정의

법인세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각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과세소득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Graham(1996a), Blouin et al.(2010) 등의 과세소득 정의를 참조하여 본고의 목적과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TI_{i,t} = \text{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_{i,t} - \frac{\text{이연법인세자산증가}_{i,t}}{\text{법정법인세율}_{i,t}} + \frac{\text{이연법인세부채증가}_{i,t}}{\text{법정법인세율}_{i,t}} + \text{중단사업손익}_{i,t} + \text{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_{i,t}$$

본고의 분석 대상은 KOSPI와 KOSDAQ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 업종 중심이며, 기업 재무자료는 KIS-Value와 TS2000에서 추출하였고 모든 재무정보들은 K-GAAP 기준으로 변환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좀 더 정확한
과세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중단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였다.

이연법인세 자산증가는 각 기업의 연도별 유동이연법인세 자산증가와 비유동이연법인세 자산증가의 합이며, 이연법인세 부채증가는 유동이연법인세 부채증가와 비유동이연법인세 부채의 합이다. 법정법인세율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순증감에 대한 해당 연도의 법정법인세율이며, 이를 계산할 때 지방세를 고려하여 순수 법인세율만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의 경우에는 세금 징수 이전의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인한 추가적인 가감이 없이 본래의 값을 사용하였다.

기존 국내 연구의 경우 중단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를 과세소득 추정 시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중단사업손익의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특히 원중식·이용규·신영직(2016) 등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에는 중단사업손익의 구성항목을 계속영업부문 항목으로 분류변경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좀 더 정확한 과세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중단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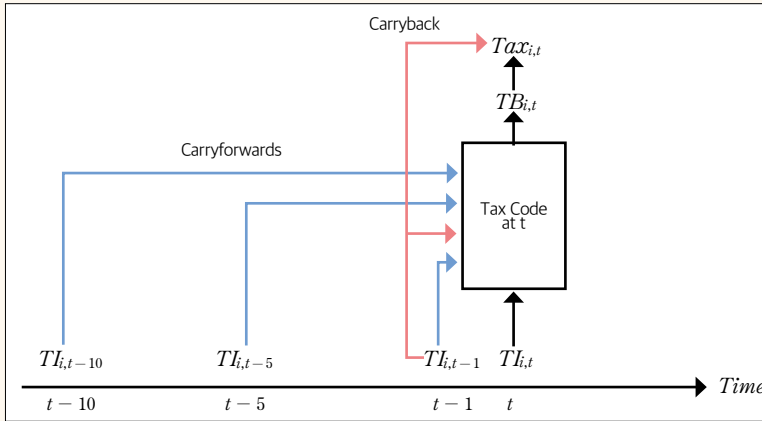
2) 법인세법 변화를 고려한 법인세율의 추정

법인세의 실효 및 한계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위에서 정의한 과세소득을 기업별·연도별로 추정한 후, 1981년부터의 법인세법의 변화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였다. KIS-Value나 TS2000의 경우 1981년 이후의 자료만 제공하며, 상장 이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81년 이후 상장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법인세법의 변화를 고려한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한계세율을 추정하였으며, 과세표준으로부터 해당 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실효세율을 추정하였다.

[그림 5]에 한계 법인세율을 구하고자 하는 시점인 t 에서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과정을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의 법인세법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이 시기에는 10년 동안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19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8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최대 2028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그림 5]의 t 시점이 2019년에서 2028년에 속하는 어느 시점이라면, t 시점의 과세표준은 $t-10$ 시점부터 누적되어온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의해 변동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t-1$ 시점에 과세표준이 양(+)이었을 때 t 시점에 과세소득이 음(-)이라면, 최대 $t-1$ 시

10) 한 예시로, 엘컴텍은 계속영업손익으로 분류해야 할 휴대폰용 CCM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중단영업손실로 분류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계속영업손실이 약 236억원 과소계상이 되어 안전회계법인으로 부터 부정적 감사의견을 받았다. 출처: 『조선비즈』 2014년 3월 29일 기사 “[스물캡돌보기] 상장폐지 위기에 M&A...엘컴텍 운명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8/2014032803261.html, 검색일자: 2022. 4. 10.

[그림 5] 법인세율의 추정



출처: 저자 작성

점에 지불하였던 법인세까지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소득이 이전 과세표준을 상회할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분을 제외한 금액을 결손금 이월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기업별로 매년 수행하여 t 시점의 과세표준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을 사용하여 기업별·연도별 법인세의 한계세율과 납부한 법인세의 추정값을 얻을 수 있었다.

3) 국세청 자료와의 비교

본고에서 제시된 추정방법을 사용한 법인세 및 법인세율이 얼마나 실제 법인세 및 법인세율의 움직임을 잘 대리(proxy)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업연도 기준 2009~2019년 상장기업의 법인세와 총실효세율과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중단사업손익과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 소득공제가 고려되지 않은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추정된 법인세도 비교하였다.

<표 3>은 사업연도 기준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본고에서 제시한 법인세 추정방법 및 기존의 법인세 추정방법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나눈 연도별 기초통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교를 위하여 상장사의 연도별 총부담세액과 총과세표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패널A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의 상장기업의 총부담

[그림 5]는 한계 법인세율을 구하고자 하는 시점인 t 에서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과정을 2009~2018년의 법인세법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3>의 분석 결과 추정방법별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본고의 두 가지 추정방식 모두 국가 전체 수준에서는 원자료를 잘 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세청 자료와의 비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 간 상관관계

패널A: 총부담세액			
구분	국세통계	Hong(2022)	Benchmark
국세통계	1		
Hong(2022)	0.946	1	
Benchmark	0.926	0.986	1
패널B: 실효세율(=총부담세액/총과세표준)			
구분	국세통계	Hong(2022)	Benchmark
국세통계	1		
Hong(2022)	0.803	1	
Benchmark	0.797	0.994	1

주: 1.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항목 중 상장기업 부문만 추출하여 계산함
 2. Benchmark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중단사업손익과 결손금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추정함

출처: 저자 작성

세액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본고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한 총법인세의 움직임과 0.946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방법 대비 2.2%의 향상을 보였다.

패널B는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상 개별 기업의 실효세율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닌 총부담세액에서 총과세표준을 나누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추정된 실효세율이 기존의 방법보다 실제 자료의 움직임을 근소한 차이로 더 잘 대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¹¹⁾

다만 기업별·연도별 법인세의 상관관계가 아닌 총합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추정방법별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두 가지 추정방식 모두 국가 전체 수준에서는 원자료를 잘 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야 하지만 정보 보호의 이유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확인할 수 없었다.

4) 기존 법인세 추정방식과의 비교

기존의 법인세 추정방식과 본고에서 제시한 법인세 추정방식은 총합계 기준으로

11) 평균적으로 총부담세액의 상관관계에 비하여 실효세율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총합계의 상관관계를 계산할 때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다. 총과세표준의 오차는 각 개별 기업의 과세표준 오차의 합이 되는데, 이는 총부담세액의 오차보다 $(1 - tax\ rate) / tax\ rate$ 의 비율로 더 크게 된다. 개별 기업의 세율이 정확하게 추정되었다고 가정하여도 상관관계는 $\sqrt{(1 - tax\ rate) / tax\ rate}$ 만큼 차이나게 된다.

<표 4> 연도별 상관관계의 기술통계량

구분	한계세율	실효세율
최댓값	0.904	0.903
중간값	0.769	0.780
최솟값	0.613	0.639
평균	0.777	0.789

출처: 저자 작성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원자료의 움직임을 잘 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두 대리 변수의 유사성이 미시적인 자료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추정방식으로 얻은 기업별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연도별 상관관계를 추정하였으며, 그 값들의 기술통계량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법인세율 추정방식과 본고에서 제시된 법인세율 추정방식은 기업별·연도별 기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추정방식에 따른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지면의 한계상 본고에서는 2009년과 2021년의 법인세 분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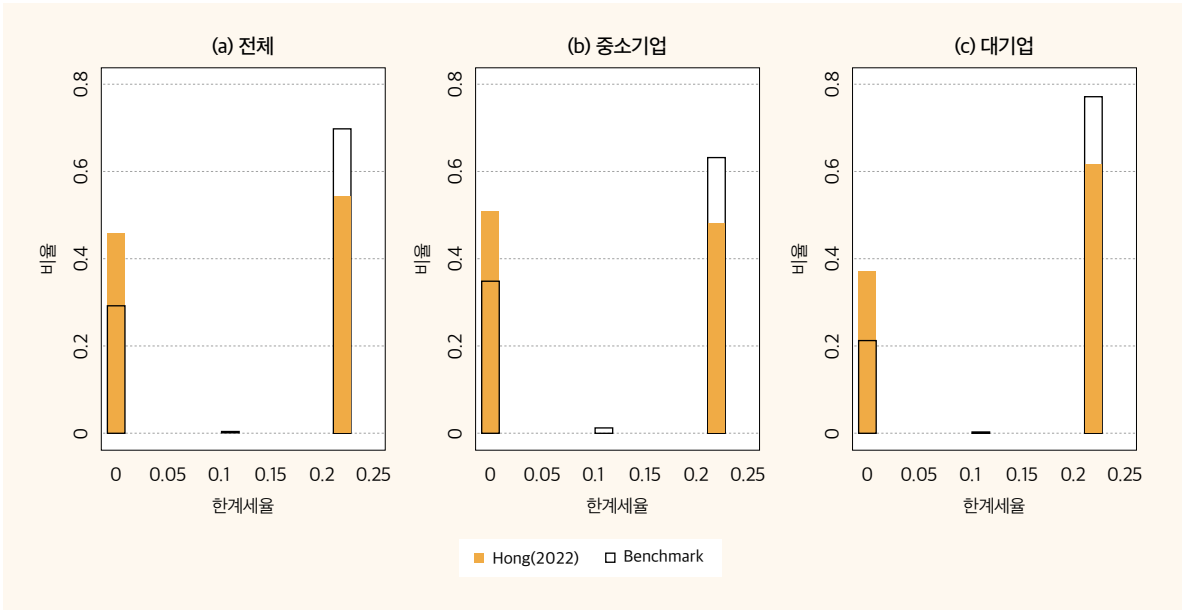
[그림 6]은 본고에서 제시한 법인세 추정방법을 사용한 한계세율과 기존 법인세 추정방법을 사용한 한계세율의 2009년의 기업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패널은 상장사 전체에 대한 한계세율의 분포를 정리하였는데, 기존의 추정 방법이 한계세율을 크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07~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과세소득이 줄거나 음(-)이 되는 경우가 늘었고, 사업의 중단도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고려된 본고의 추정방식이 한계세율을 더 낮게 추정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패널의 경우 각각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차이의 정도를 확인해보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 추정방식에 따른 비율 차이는 0.15 정도로 유사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분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완만하기 때문에 추정방식에 따른 실제적 차이는 중소기업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7]은 추정방법에 따른 한계세율의 2021년의 기업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장사 전체에 대한 한계세율의 분포는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법인세율
추정방식과
본고에서 제시된
법인세율 추정방식은
기업별·연도별 기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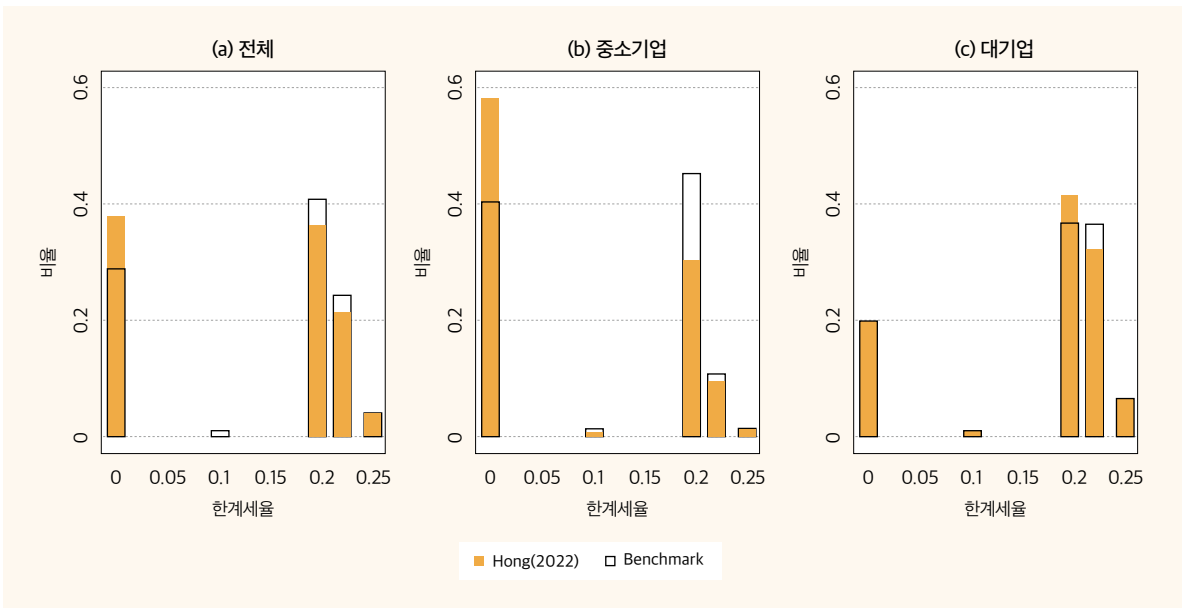
12) 2009년의 한계세율의 상관관계는 0.7163이며, 실효세율의 상관관계는 0.7366이다. 2021년의 한계세율의 상관관계는 0.8354이고, 실효세율의 상관관계는 0.8405이다.

[그림 6] 2009년 추정한계세율 분포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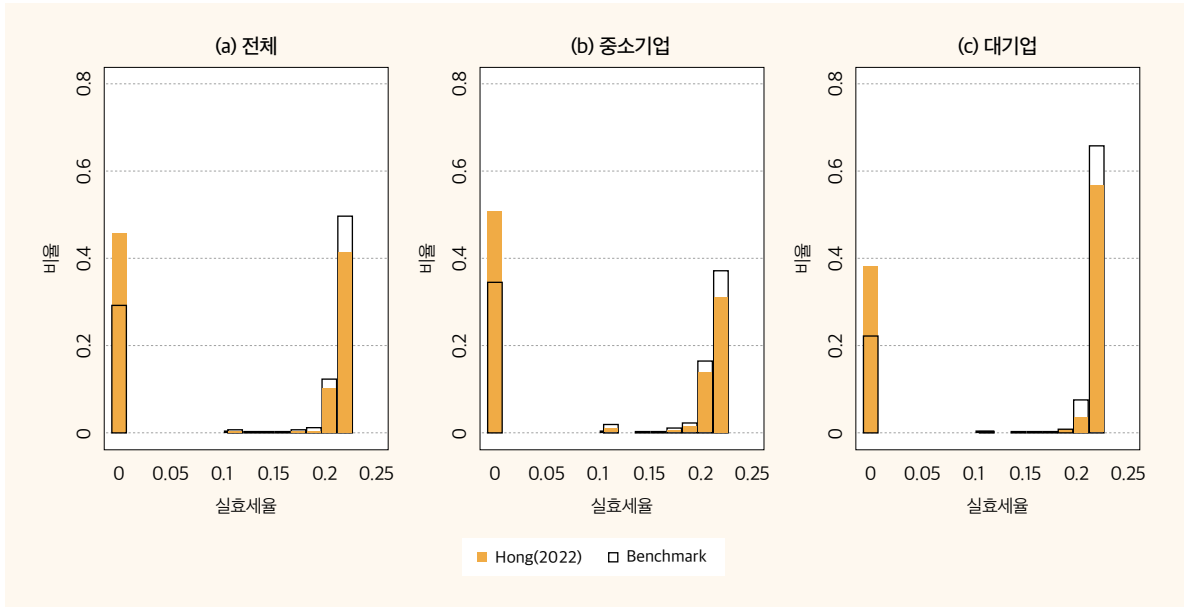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7] 2021년 추정한계세율 분포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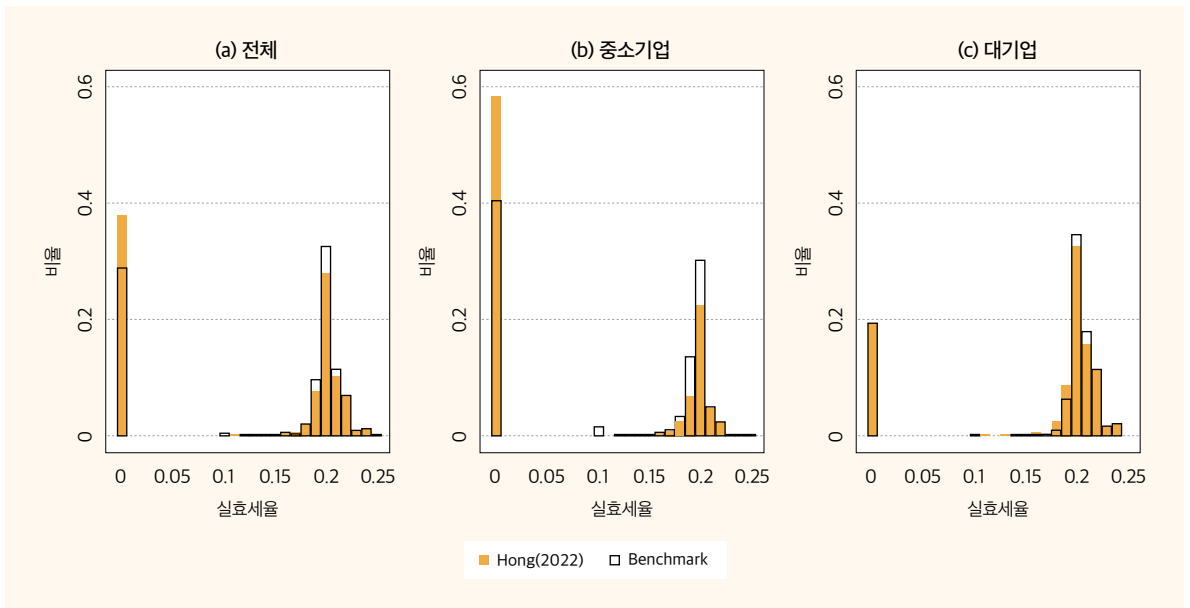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8] 2009년 추정실효세율 분포의 비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9] 2021년 추정실효세율 분포의 비교



출처: 저자 작성

회귀분석에는 부채 수준을 직접 사용하기보다 Mackie-Mason(1990)의 내생성 우회 방식과 유사하게 부채 수준의 변화를 부채 발행 결정의 여부를 대리하는 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009년의 결과와는 다르게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장사들의 이전 5개년도 수익이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다만 두 번째 패널과 세 번째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법인세 추정방식이 여전히 과대추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추정방법에 따른 실효세율의 2009년과 2021년의 기업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계세율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존의 방식이 법인세를 좀 더 크게 추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과대추정의 경향은 중소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¹³⁾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본고에서 제시한 법인세 추정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기업별·연도별 법인세 추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변수의 설정

1) 부채변수

본고에서는 부채 및 부채비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채변수들을 사용한다.

$$\begin{aligned} Debt1_{i,t} &= \log(1 + \text{총부채}_{i,t}) \\ Debt2_{i,t} &= \log(1 + \text{총부채}_{i,t} - \text{매입채무}_{i,t}) \\ Debt3_{i,t} &= \log(1 + \text{유동부채}_{i,t}) \\ Debt4_{i,t} &= \log(1 + \text{고정부채}_{i,t}) \end{aligned}$$

$Debt1_{i,t}$ 은 재무상태표에서 총부채를 의미한다. $Debt2_{i,t}$ 는 총부채에서 매입채무를 차감한 실질적인 부채합계를 의미한다. $Debt3_{i,t}$ 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유동부채들의 합을 의미한다. $Debt4_{i,t}$ 는 만기가 1년 이상인 고정부채들의 합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는 부채 수준을 직접 사용하기보다 Mackie-Mason(1990)의 내생성 우회 방식과 유사하게 부채 수준의 변화를 부채 발행 결정의 여부를 대리하는 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 통제변수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기업부채 변화에

13) 추가적으로 한계세율은 실효세율과 다르게 명목세율과 동일하게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계세율의 계산에서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산출세액 이후의 세액감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인 기업 규모, 자산 유형성, 수익성, 성장성, 비부채감세수단 및 주식 조달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기업 규모의 경우, Frank & Goyal(2009), Byoun(2008), Campos & Nakamura(2015) 등에서 기업의 부채 사용과 기업 규모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는 기업 규모가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 등과 같은 여러 기업 특성을 대리하는 변수라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총부채에 자산의 시장가를 더한 값의 로그값을 활용하였다.

자산 유형성의 경우, Flannery & Rangan(2006), Kayo & Kimura(2011) 등에서 유형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의 사용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유형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자산 유형성 변수로 사용하였다.

수익성의 경우, Frank & Goyal(2009), Campos & Nakamura(2015), Clemente-Almendo & Mira(2017) 등에서 기업의 수익성과 부채 수준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다.

성장성의 경우, Frank & Goyal(2009), Clemente-Almendo & Mira(2017) 등에서 기업의 성장성과 부채 사용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자본의 시장가 대비 장부가 비율을 사용하였다.

비부채감세수단의 경우, Byoun(2008), Ramil, Latan & Solovida(2019) 등에서 비부채감세수단과 기업의 부채 사용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다.

Graham(1996a, b), Graham et al.(2015), Fleckenstein et al.(2020) 등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도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간 주가수익률과 주가수익률의 변동성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변수들과 기업의 부채비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 비용이 높아질 때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여 자본을 조달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기업부채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인 기업 규모,
자산 유형성, 수익성,
성장성, 비부채감세수단
및 주식 조달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식 (1)을 통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정보는 기업 *i*의 *t*-1시점 및 그 이전 시점의 법인세율의 변화가 *t*시점에 *t*-1시점보다 부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이다.

$$\Delta Debt_{i,t} = \alpha + \sum_{\tau=1}^3 \beta_{MTR,\tau} \Delta MTR_{i,t-\tau} + \gamma_f' \Delta f_{i,t-1} + \lambda_{j,t} + \epsilon_{i,t} \quad \text{식 (1)}$$

Δx_t 는 변수 *x*의 *t*시점과 *t*-1시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Debt_{i,t}$ 은 앞서 정의한 부채변수들에 1을 추가한 후 로그화를 한 값으로 정의되며, 기업 *i*의 *t*시점의 부채 수준을 의미한다. $MTR_{i,t-\tau}$ 는 기업 *i*의 시점 *t*- τ 의 한계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f_{i,t-1}$ 는 기업 *i*의 시점 *t*-1의 통제변수들이다. $\lambda_{j,t}$ 는 산업 × 기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식 (1)을 통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정보는 기업 *i*가 시점 *t*-1 및 그 이전 시점의 법인세율의 변화가 시점 *t*에 시점 *t*-1보다 부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이며, 이는 $\beta_{MTR,\tau}$ 로 표현된다. 한계세율이 1% 상승할 때 다음 기($\tau = 1$)의 부채 수준이 $\beta_{MTR,1}/100\%$ 추가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3개년 동안 총 $\sum_{\tau=1}^3 \beta_{MTR,\tau}/100\%$ 만큼 평균적으로 부채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이질성 분석에서는 식 (1)에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가변수 $SME_{i,t}$ 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begin{aligned} \Delta Debt_{i,t} = & \alpha + \sum_{\tau=1}^3 \beta_{MTR \times SME,\tau} \Delta MTR_{i,t-\tau} \times SME_{i,t-1} \\ & + \sum_{\tau=1}^3 \beta_{MTR,\tau} \Delta MTR_{i,t-\tau} + \beta_{SME} SME_{i,t-1} \quad \text{식 (2)} \\ & + \gamma_f' \Delta f_{i,t-1} + \lambda_{j,t} + \epsilon_{i,t} \end{aligned}$$

식 (2)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beta_{MTR \times SME,\tau}$ 이며, 이는 대기업에 비해 얼마나 더 법인세율에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만일 한계 법인세율이 1% 상승한다면 이는 다음 기($\tau = 1$)의 대기업들이 $\beta_{MTR,1}/100\%$ 의 추가적인 부채 수준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beta_{MTR,1} + \beta_{MTR \times SME,1})/100\%$ 의 추가적인 부채 수준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3개년 동안 총 $\sum_{\tau=1}^3 (\beta_{MTR,\tau} + \beta_{MTR \times SME,\tau})/100\%$ 만큼 평균적으로 부채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eta_{MTR \times SME,\tau}$ 의 절대적인 값이 크게 추정이 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법인세율의 변화에 대한 기업부채 변화 속도가 이질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식 (1)과 식 (2)에서 Graham(1996a), Fleckenstein et al.(2020) 등의 연구와 같이 변수의 차분과 독립변수의 시차를 적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우회하려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기업의 한계세율과 부채정책 간의 내생적인 관계로 인하여 추정 결과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부채 사용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기업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계 법인세율을 낮추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 결과에 음(-)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분석할 때, 이러한 과소 추정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정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산업×기간 고정효과만 고려한 결과를 통해 부채의 정의와 무관하게 한계세율의 증가는 부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1. 기업부채와 한계세율과의 관계

식 (1)을 바탕으로 기업부채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취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5>와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5>는 산업×기간 고정효과만 고려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부채의 정의와 무관하게 한계세율의 증가는 부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표 5> 부채의 변화와 한계세율의 관계(통제변인 없음, 1990~2021)

종속변수	$\Delta Debt1_{i,t}$	$\Delta Debt2_{i,t}$	$\Delta Debt3_{i,t}$	$\Delta Debt4_{i,t}$
$\Delta MTR_{i,t-1}$	0.074* (0.041)	0.087** (0.044)	0.073 (0.050)	0.038** (0.015)
$\Delta MTR_{i,t-2}$	0.065* (0.038)	0.105** (0.042)	0.118** (0.046)	0.021 (0.013)
$\Delta MTR_{i,t-3}$	0.077* (0.042)	0.080* (0.045)	0.123*** (0.047)	-0.020 (0.015)
Sum	0.216	0.272	0.314	0.039
Controls	N	N	N	N
Industry × Year FE	Y	Y	Y	Y
Clustered SE	Y	Y	Y	Y
Observations	26,762	26,762	26,762	26,758
R-squared	0.053	0.055	0.054	0.054

주: 1.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이며, *** p < 0.01, ** < 0.05, * p < 0.1

2. Clustered SE는 Firm을 cluster를 고려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추가적으로
통제변인들을
고려한 결과, 총부채를
기준으로 1%의
한계세율의 증가가
약 0.234%의
부채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부채($Debt1_{i,t}$)를 기준으로 1%의 한계세율의 증가가 약 0.216% 부채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순부채($Debt2_{i,t}$)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1%의 한계세율 증가가 약 0.272%의 부채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동부채($Debt3_{i,t}$)를 기준으로 한 결과들도 총부채의 결과와 유사하게 종합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한계세율이 변화한 직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고정부채($Debt4_{i,t}$)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변화한 직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은 <표 5>에서 추가적으로 통제변인들을 고려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의 결과와 비교하여 종속변수를 유동부채의 변화로 고려한 회귀분석을 제외하고 $\sum_{\tau=1}^3 \beta_{MTR, \tau}$ 값이 다소 크게 추정이 되었다. 총부채($Debt1_{i,t}$)를 기준으로 1%의 한계세율의 증가가 약 0.234%의 부채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들을 기준으로 기업당 평균 부채 수준이 약 4,431억원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10.37억원에 해당하는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고, 종합적으로는 2조 2,707억원의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¹⁴⁾

<표 6> 부채의 변화와 한계세율의 관계(통제변인 있음, 1990~2021)

종속변수	$\Delta Debt1_{i,t}$	$\Delta Debt2_{i,t}$	$\Delta Debt3_{i,t}$	$\Delta Debt4_{i,t}$
$\Delta MTR_{i,t-1}$	0.067 (0.043)	0.080* (0.046)	0.052 (0.051)	0.041** (0.016)
$\Delta MTR_{i,t-2}$	0.083** (0.036)	0.120*** (0.040)	0.118** (0.043)	0.025* (0.013)
$\Delta MTR_{i,t-3}$	0.084** (0.042)	0.086* (0.045)	0.117** (0.047)	-0.015 (0.014)
Sum	0.234	0.286	0.287	0.051
Controls	Y	Y	Y	Y
Industry × Year FE	Y	Y	Y	Y
Clustered SE	Y	Y	Y	Y
Observations	26,310	26,310	26,310	26,306
R-squared	0.064	0.064	0.064	0.056

주: 1.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이며, *** p < 0.01, ** < 0.05, * p < 0.1

2. Clustered SE는 Firm을 cluster를 고려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14) 다만 이는 분석에 사용된 2021년 표본에 대한 추정치이며, 모든 기업에 대한 추정치가 아니다. 2021년 회귀분석에 사용된 표본에서의 회사 수인 2190을 평균 부채 증가인 10.37억원에 곱하여 2조 2,707억원을 얻을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부채를 정의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한계세율과 부채의 변화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법인세율의 증가(감소)가 일정부분 기업의 부채 변화를 증가(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이질성 분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상장기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식 (2)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 정리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한계세율에 대한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sum_{\tau=1}^3 \beta_{MTR \times SME, \tau}$ 의 경우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고정부채의 결과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법인세율의 변화에 대한 고정부채의 변화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의 부채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통제된 후에 추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회귀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기업 경영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과 대기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이질적인 정책적 혜택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법인세율의 변화에 대한 고정부채의 변화가 상이한 것은 여러 요인들을 통제된 후에 추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7> 부채의 변화와 한계세율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종속변수	$\Delta Debt1_{i,t}$	$\Delta Debt2_{i,t}$	$\Delta Debt3_{i,t}$	$\Delta Debt4_{i,t}$
$\Delta MTR_{i,t-1} \times SME_{i,t-1}$	0.073 (0.081)	0.057 (0.093)	0.008 (0.105)	0.039** (0.019)
$\Delta MTR_{i,t-2} \times SME_{i,t-1}$	0.083 (0.074)	0.106 (0.086)	0.058 (0.091)	0.005* (0.018)
$\Delta MTR_{i,t-3} \times SME_{i,t-1}$	-0.073 (0.079)	-0.104 (0.0486)	-0.047 (0.091)	-0.005 (0.020)
Sum	0.083	0.059	0.019	0.039
Controls	Y	Y	Y	Y
Industry × Year FE	Y	Y	Y	Y
Clustered SE	Y	Y	Y	Y
Observations	26,310	26,310	26,310	26,306
R-squared	0.064	0.064	0.064	0.058

주: 1.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이며, *** p < 0.01, ** < 0.05, * p < 0.1

2. Clustered SE는 Firm을 cluster를 고려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실효세율을 사용한 분석 역시 법인세의 변화가 부채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정부채 변화가 중소기업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암시한다.

3. 강건성 분석: 실효세율

대부분의 기업자본구조에 대한 모형들은 실효세율이 아닌 한계세율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와 연구자의 편의 등의 이유로 실효세율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일관성 및 비교를 위해 <표 8>에 본고에서 제시한 법인세 추정방법을 통해 얻은 실효세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전 한계세율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계수들의 값이 크고 통계

<표 8> 부채의 변화와 실효세율의 관계

패널 A: 식 (1)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Delta Debt1_{i,t}$	$\Delta Debt2_{i,t}$	$\Delta Debt3_{i,t}$	$\Delta Debt4_{i,t}$
$\Delta MTR_{i,t-1}$	0.069 (0.052)	0.088 (0.054)	0.063 (0.060)	0.036* (0.019)
$\Delta MTR_{i,t-2}$	0.095** (0.038)	0.132*** (0.043)	0.146*** (0.049)	0.016 (0.015)
$\Delta MTR_{i,t-3}$	0.097** (0.047)	0.095* (0.050)	0.119** (0.054)	-0.011 (0.017)
Sum	0.261	0.315	0.328	0.041
Controls	Y	Y	Y	Y
Industry × Year FE	Y	Y	Y	Y
Clustered SE	Y	Y	Y	Y
Observations	26,310	26,310	26,310	26,306
R-squared	0.064	0.064	0.064	0.056

패널 B: 식 (2)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Delta Debt1_{i,t}$	$\Delta Debt2_{i,t}$	$\Delta Debt3_{i,t}$	$\Delta Debt4_{i,t}$
$\Delta MTR_{i,t-1} \times SME_{i,t-1}$	0.068 (0.101)	0.062 (0.116)	-0.054 (0.133)	0.103* (0.053)
$\Delta MTR_{i,t-2} \times SME_{i,t-1}$	0.106 (0.091)	0.129 (0.112)	0.148 (0.118)	0.035 (0.043)
$\Delta MTR_{i,t-3} \times SME_{i,t-1}$	-0.045 (0.100)	-0.058 (0.112)	-0.060 (0.115)	-0.072 (0.048)
Sum	0.129	0.133	0.034	0.066
Controls	Y	Y	Y	Y
Industry × Year FE	Y	Y	Y	Y
Clustered SE	Y	Y	Y	Y
Observations	26,310	26,310	26,310	26,306
R-squared	0.064	0.064	0.064	0.057

주: 1.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이며, *** p < 0.01, ** < 0.05, * p < 0.1

2. Clustered SE는 Firm의 cluster를 고려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적 유의성이 더 높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효세율 1% 증가의 의미가 한계세율 1% 이상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을 사용한 분석도 법인세의 변화가 부채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정부채 변화가 중소기업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암시한다.

V. 결론

세금은 납세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반면에, 법인세의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소득세는 소득 원천과 관련된 납세자의 행동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법인세는 기업의 행동에 보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인세가 기업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순자산 변화에 기인하는 각 요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법인세의 변화가 기업부채 규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중단사업손익 관련 계정과 결손금의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를 고려하여 법인세율을 추정하였다. 기업 자본 구조의 상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는 이유는 부채 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으며, 이는 곧 기업가치 상승과 귀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기업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계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인세율의 내생성은 법인세와 기업 부채와의 관계 추정에 음(-)의 편향을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대한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변수의 차분과 독립변수의 시차를 두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1990년부터 2021년 사이의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의 증가(감소)가 기업의 총부채 수준을 증가(감소)시키는 관계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1%의 한계 법인세율의 증가는 약 0.234%의 총부채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2021년 표본에 있는 2,19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당 평균 10.37억원에 해당하는 총부채의 증가를 의미하고, 종합적으로

**본고의 분석 결과,
법인세율과 기업의
부채 사용이 양(+)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효과의
수준은 구조모형이나
내생성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이벤트
스터디 등을 활용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부채의 적절한 유지를 위해 법인세와 기업의 경영활동의 관계성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는 2조 2,707억원의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총부채의 변화가 주로 유동부채의 증가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부채를 좀 더 사용하여 법인세를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본고의 결과는 기업 자본 구조의 상충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동일하게 법인세율과 기업의 부채 사용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효과의 수준은 구조모형이나 내생성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이벤트 스터디 등을 활용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고가 시사하는 바는 기업의 입장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부채 활용은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채는 이자지출 부담 증가에 따른 금융제약으로 인하여 기업의 고용, 투자, 연구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기업부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부채의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법인세와 기업의 경영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자산시장(Asset Market)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법인세는 투자할 자산군(Asset Class)을 선택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암시하듯이 법인세율의 증가(감소)는 자산시장에 부채의 공급을 증가(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관련 조세 정책들이 변함에 따라 자산시장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부채의 가격의 변화를 넘어 투자기회집합(Investment Opportunity Set)에 다양한 채널로 자본시장(Equity Market)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일반균형모형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법인 관련 조세제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KIF

<참고문헌>

- 고종권, 「한계세율과 부채조달 의사결정」,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2003, pp. 49~77.
- 송호신·전봉길,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법인세부담액 및 과세표준 추정과 법인세 관련 기업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 신승묘,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과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 평가」,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2005, pp. 77~108.
- _____, 「조세부담이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세율의 내생성」, 『회계학연구』, 제30권 제5호, 2005, pp. 1~32.
- 원중식·이용규·신영직, 「중단영업손익의 구성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제41권 제6호, 2016, pp. 67~104.
- 윤태화·심현옥,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2008, pp. 249~283.
- 이윤구·라영수, 「부채의 세금효과와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2권 제3호, 2012, pp. 25~56.
- 이현석·정미화, 「기업의 한계세율과 자본비용이 자본구조 및 기업가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금융공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9, pp. 77~118.
- 정희정, 「무형자산이 기업의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 Byoun, Soku, “How and when do firms adjust their capital structures toward targets?,” *The Journal of Finance*, 63(6), 2008, pp. 3069~3096.
- Blouin, Jennifer, John E. Core, and Wayne Guay, “Have the tax benefits of debt been overestimated?,”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8(2), 2010, pp. 195~213.
- Campos, Anderson Luis Saber, and Wilson Toshiro Nakamura, “Capital

- Structure Rebalancing: Industry Leverage and Financial Slack,” *Revista de Administração Contemporânea*, 19, 2015, pp. 20~37.
- Clemente-Almendros, José A., and Francisco Sogorb-Mira, “How much do the tax benefits of debt add to firm value? Evidence from Spanish listed firms,” *Revista de Economía Aplicada*, 25(74), 2017, pp. 105~129.
- Frank, Murray Z., and Vidhan K. Goyal, “Capital structure decisions: which factors are reliably important?,” *Financial management*, 38(1), 2009, pp. 1~37.
- Flannery, Mark J., and Kasturi P. Rangan. “Partial adjustment toward target capital structur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3), 2006, pp. 469~506.
- Fleckenstein, Matthias, Francis A. Longstaff, and Ilya A. Strebulaev, “Corporate taxes and capital structure: A long-term historical perspective,” *Critical Finance Review*, 8, 2019, pp. 1~38.
- Galai, Dan, and Ronald W. Masulis, “The option pricing model and the risk factor of stock,”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1-2), 1976, pp. 53~81.
- Gordon, Roger H., and Young Lee, “Do taxes affect corporate debt policy? Evidence from US corporate tax return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 82(2), 2001, pp. 195~224.
- Graham, John R, “Proxies for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2(2), 1996a, pp. 187~221.
- _____, “Debt and the marginal tax rat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1(1), 1996b, pp. 41~73.
- _____, et al, “Tax rates and corporate decision-making,”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0(9), 2017, pp. 3128~3175.
- _____, and Hyunseob Kim, “The effects of the length of the tax-loss carryback period on tax receipts and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National Tax Journal*, 62(3), 2009, pp. 413~427.
- _____, Mark T. Leary, and Michael R. Roberts, “A century of capital structure: The leveraging of corporate America,”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 118(3), 2015, pp. 658-683.
- _____, and Alan L. Tucker,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2006, pp. 563-594.
- Gryglewicz, Sebastian, "A theory of corporate financial decisions with liquidity and solvency concer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9(2), 2011, pp. 365-384.
- Hirshleifer, Jack, "Investment decision under uncertainty: Applications of the state-preference approac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2), 1966, pp. 252-277.
- Jensen, Gerald R., Donald P. Solberg, and Thomas S. Zorn,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insider ownership, debt, and dividend policie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27(2), 1992, pp. 247-263.
- Jensen, Michael C.,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2), 1986, pp. 323-329.
- _____, and William H.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1976, pp. 305-360.
- Kayo, Eduardo K., and Herbert Kimura, "Hierarchical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5(2), 2011, pp. 358-371.
- Kraus, Alan, and Robert H. Litzenberger, "A state-preference model of optimal financial leverage," *The journal of finance*, 28(4), 1973, pp. 911-922.
- Tirumalsety, Revendranath, and Anjula Gurtoo, "Financial sources, capital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empirical evidence from India,"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11(1), 2021, pp. 27-46.
- Leary, Mark T., and Michael R. Roberts, "The pecking order, debt capac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3), 2010, pp. 332-355.
- MacKie-Mason, Jeffrey K., "Do taxes affect corporate financing decisions?," *The*

- journal of finance*, 45(5), 1990, pp. 1471-1493.
- Miller, Merton H., "Debt and taxes," *The Journal of Finance*, 32(2), 1977, pp. 261-275.
- Modigliani, Franco, and Merton H. Miller,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8(3), 1958, pp. 261-297.
- _____, "Corporate income taxes and the cost of capital: a correc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3), 1963, pp. 433-443.
- Myers, Stewart C, "Determinants of corporate borrow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2), 1977, pp. 147-175.
- _____, and Nicholas S. Majluf, "Corporate financing and investment decisions when firms have information that investors do not hav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3(2), 1984, pp. 187-221.
- Opler, T., Pinkowitz, L., Stulz, R., & Williamson, R., "Th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of corporate cash holding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2(1), 1999, pp. 3-46.
- Park, Jinbaek, and Young Lee, "Corporate income taxes, corporate debt, and household debt,"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6(3), 2019, pp. 506-535.
- Pinegar, J. Michael, and Lisa Wilbricht, "What managers think of capital structure theory: a survey," *Financial Management*, 18(4), 1989, pp. 82-91.
- Pinkowitz, Lee, Jason Sturgess, and Rohan Williamson, "Do cash stockpiles fuel cash acquisition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23, 2013, pp. 128-149.
- Rajan, Raghuram G., and Luigi Zingales, "What do we know about capital structure? Some evidence from international data," *The journal of Finance*, 50(5), 1995, pp. 1421-1460.
- Robichek, Alexander A., and Stewart C. Myers, "Conceptual problems in the use of risk-adjusted discount rates," *The Journal of Finance*, 21(4), 1966,

pp. 727~730.

Ross, Stephen A., “The determination of financial structure: the incentive-signalling approach,”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1977, pp. 23~40.

Shleifer, Andrei, and Robert W. Vishny, “Management entrenchment: The case of manager-specific investmen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5(1), 1989, pp. 123~139.

Shyam-Sunder, Lakshmi, and Stewart C. Myers, “Testing static tradeoff against pecking order models of capital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1(2), 1999, pp. 219~244.

Stiglitz, Joseph E., “A re-examination of the Modigliani-Miller theore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9(5), 1969, pp. 784~793.

Stulz, René M., “Managerial discretion and optimal financing polic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6(1), 1990, pp. 3~27.

『국세통계연보』, “법인세 신고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2. 9. 22.

법인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 검색일자: 2022. 3. 30.

법인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검색일자: 2022. 3. 30.

『조선비즈』, “[스몰캡돋보기] 상장폐지 위기에도 M&A…엘컴텍 운명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8/2014032803261.html, 검색일자: 2022. 4. 10.

BIS Statistics, “Credit to non-financial corporations,” <https://www.bis.org/statistics/totcredit.htm?m=2669>, 검색일자: 2022. 8. 15.



정책토론포트 |



- 2022년도 PEMNA 연차 총회
- 2022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2022년도 PEMNA 연차 총회

개요

- 회의명 2022년도 PEMNA 연차 총회
- 주제 Fiscal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for the Post COVID-19 Era
-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 29일(목)
- 장소 대한민국, 서울
- 주최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원 기획재정부, 유럽연합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국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WB),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PEMNA는 올해 총회를 3년 만의 대면행사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심층 논의함

- 총회는 3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 오전은 공동세션, 첫째 날 오후와 둘째 날은 예산분과와 국고회계분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셋째 날은 운영위원회 회의와 랩업세션을 진행하였음

공동세션

9월 27일(화)

Opening Session

Welcome Remarks I

• Sang-dae Choi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PEMNA의 10주년과 연차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재정혁신 사례를 소개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정상화하고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은 건전재정 기초 확립과 재정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함
 - 건전재정 기초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한편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재정성과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유재산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외 사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재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힘
 - 이와 더불어 장기재정 전망을 토대로 바람직한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는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할 계획임
 - 팬데믹 이후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PEMNA 연차총회를 통해 재정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경험과 사례가 소개되고 논의되길 기대함

Opening Remarks II

• Manuela V. Ferro (The World Bank)

- Manuela V. Ferro 세계은행 부총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을 위한 세제정책의 조정과 수요 촉진,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위기대응 방안과 고물가시대의 예산편성 방향, 재정위기와 공공자산 관리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많은 국가들이 경제회복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운데 주최국인 한국의 현재 생산량은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서 기인하였음
- 한편,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2022년 PEMNA 연차총회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 수요와 재정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함

Opening Remarks III

• Maria Castillo Fernandez (Delegation of the EU to Rep. of Korea)

- 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 대사는

PEMNA의 10주년을 축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을 위한 유럽의 재정정책 부문의 노력을 소개하였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지역에서의 팬데믹 피해를 연장시켰으며, 이에 EU는 사회경제적 대응 및 투자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음
- EU는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소비세 인하,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였으며, 건축재정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태지역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로서 PEMNA는 매우 중요하며, 재정협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기대함

Joint Session. Fiscal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for the Post COVID-19 Era

Keynote Speech 1

• Ji-Chul Ba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배지철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PEMNA의 10주년 성과를 소개하고 사업 내실화와 외연 확장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운영의 의장국이자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PEMNA를 인적·

물적으로 향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을 밝힘

- 2012년 설립 이래 PEMNA는 10번의 연차총회와 34회의 분과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PEMNA는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의 장을 꾸준히 유지해오는 한편 2021년부터 정책자문 사업과 연구 사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태지역의 대표적 재정협력체로 성장하였음
- 향후 PEMNA는 신규 도입된 사업들을 발전·심화하여 내실화하는 한편 협력대상과 지역을 넓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함

Keynote Speech 2

• Minhyeong Kim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김민형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금번 연차총회의 주최국인 한국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성장을 위한 재정보호 노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음
- 한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에만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확대된 재정을 원상회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22년 8월 말 발표된 한국의 2023년도 예산

안 주요 기조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소화하고 국가채무관리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6%로 개선시킬 계획임

- 한편, 2022년 9월 13일에는 건전한 재정을 구축하는 강력한 도구인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진행 중임

Keynote Speech 3

• Lucia Piana (European Union)

- IMF에 따르면 EU의 국가채무비율은 높은 편이며, 현재 채무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EU의 특징은 27개 회원국 모두 재정정책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편, EU공동재정 프레임워크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임. 최근 금리인상 기조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여내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EU는 국가채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회원국의 상황을 공동재정 프레임워크에 고려하고 있음
- EU의 국가채무비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고령화이며, 향후 연금 및 장기요양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많은 EU회원국들의 과제임
- 팬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



가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Keynote Speech 4

• Ergys Islamaj (The World Bank)

■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프레임워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특정 타겟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건전성과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요소인데,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높아지면서 공급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흥시장에서는 자본유출과 통화 절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높아진 금리로 인해 부채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몽골이나 라오스 등이 큰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회복과 지속성을 위해 지출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등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 대응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재정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예산분과

9월 27일(화)
~28일(수)

B-CoP Session I . Lessons Learned from Fiscal Stimulus during COVID-19: What Policies Worked Better than Others

Presentation 1

• Dalin Chhun (Cambodia)

- 캄보디아는 2020년 -3.1% 성장률 하락을 겪었으나 회복하여 2022년의 성장률은 5.4%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수가 빠르게 성장하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감면(제조업, 항공업, 관광업 부문) 및 면세, 현금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의 빠른 백신보급으로 국경개방 역시 빨리 이루어짐
- 한편,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부문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2022년 예산적자는 2022년 GDP 대비 -7%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캄보디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금리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Presentation 2

• Phouvong Kittavong (Lao PDR)

■ 라오스는 2020년 4월 락다운 이후 면세 및 납세 기간 연장, 면세 등을 시행하면서 세액이 21% 감소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정부의 기술 및 트레이닝 측면이 향상되어 세입 개편 및 세수 증진, 지출 감소 등의 노력에 기여함

- 2021년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기에 신 5개년 사회경제개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지출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세수증가를 달성할 수 있었음
- 2022년 들어 GDP 성장률 4%, 예산 16.5%, 지출 18%를 목표로 국유재산·조세·관세 부문의 잠재적 세입 기반 관리와 함께 세입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5대 국영기업의 지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사치품 금지법 등을 승인

Presentation 3

• Romeo Matthew T. Balanquit (The Philippines)

■ 필리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1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다른 곳보다 비교적 큰 하락을 겪었으나 급속도로 회복 중이며, 2022년 상반기 성장률은 7.8%를 기록하는 한편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필리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을 늘

림으로써 적자비율이 3.4%에서 8.6%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백신보급, 현금지원, 연료 보조, 대중교통안정 등을 지원하였음

- 현재 필리핀은 중상위 소득 국가로서의 지위 획득을 목표로 재정건전화 노력 및 효과적인 공공 지출 관리, 투명성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예산개혁을 추진 중이며, 사회경제 회복을 위해 현금 기반 예산시스템을 확립하고 디지털화 및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임

Presentation 4

• Jose Alexandre de Carvalho (Timor-Leste)

■ 동티모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기금에 대한 의회의 즉각적인 승인을 받지 못해 제한된 예산에 직면하였으나, 6월과 10월에 이루어진 의회의 코로나19 기금 및 재무부 경상지출 증가 승인으로 식량지원 및 생산성 향상에 대처할 수 있었으며, 현재 2021~2023 경제회복 3개년 계획을 추진 중임

- 경제회복 3개년 계획은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교육·보건·주택·사회보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코로나19 예산은 원격교육, 등록금 지원, 빈곤층 지원 등의 교육 지원과 함께 현금 지원, 식량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음
- 동티모르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현금보조 및 교부금 지원 당시 비공식부문의 데이터 부족



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 같은 경험을 통해 관련법과 정책 마련을 통해 개선된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 밝힘

Presentation 5

• Nguyen Thi Thu Hien (Vietnam)

- 베트남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산업 타격 및 미시·거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목표 GDP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시행하여 재정적자 부문의 타격은 크지 않았으며, 2022년 들어서는 약 6.5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납부 유예, 면세 및 감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지원, 병원 설립 및 의료장비 설치 등에 대한 지원, 환경세 감면, 인허가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등 각종 자원을 동원하여 시기적절한 팬데믹 통제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성공적이었음
 - 향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채권발행 및 재정정책 수단을 이용할 계획이며, 팬데믹 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출에 집중할 계획임

B-CoP Session II. Withdrawal of Fiscal Support Aligned with Medium-Term Fiscal Plans

Presentation 1

• Alberto Leyton (The World Bank)

- EU는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프로그램(Resilience Recovery Facility, RRF)에서 분배효율성과 우선순위 지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녹색전환과 디지털화를 장기목표로 수립하였음
 - 재난상황에서는 지원 규모의 크기와 분배효율성, 우선순위 지정이 중요한데 이 중 EU는 분배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많으므로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분배가 실물경제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정책도 필요함
 - EU는 40여개 회원국의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 RRF를 통한 지원금 집행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함께 시행하였으며, 현재 여러 나라가 지원금을 지급받고 국가회복 및 복원계획(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시행 중임
 - RRF는 초기단계(1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중기계획에 맞게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관건임

Presentation 2

• Aksa Nugraha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팬데믹에 대응하여 국가경제회복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사회보장에 집중하는 예산안을 시행함에 따라 감세 및 지출증가, 국공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증가를 겪고 있으며, 2023년 증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합정책을 구축할 예정임
- 세입 대비 부채비율 측면에서 취약하다 판단되며,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부채조달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됨
- 경제 및 재정상태가 회복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출구조 개선 및 기초수지 개선, 세제개혁 등 재정 지속가능성에 집중할 계획이며, 현재 GDP 대비 부채비율의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바,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부채비율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Presentation 3

• Nowook Park (KIPF)

- 2022년 들어 두 차례 추경을 시행한 한국은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는 우려는 있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임

- 코로나19 이전 대비 정부부채가 누적된 가운데 채무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정치적 이슈와 비용 발생으로 인해 사회보험 개혁은 어려운 상황임
- 2023년 예산안은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 국정 과제 우선순위, 재정확보, 재정준칙을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중기재정계획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재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채비율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세부정책으로는 상시 고용에 집중, 금융지원프로그램, 특정 산업의 유지지원 축소 및 예산 절감, 공공기관 지원감축, 공무원 연금소득 상한 설정 등이 있음

B-CoP Session III. Budgeting at Times of High Inflation

Presentation 1

• Bill Dorotinsky (The World Bank)

-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판매세, 담배세, 주세, 부가세 및 2차 효과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의 세입이 증가하여 사회적 지출증가에 다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 상승 압박 및 상품서비스 조달 비용 증가, 부채상환 비용 증가를 겪을 수 있음



-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는 한편, 재정준칙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Presentation 2

• Osman Nuri Erdem (Turkiye)

■ 튀르키예는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리셋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수입구조를 변경하는 한편 예산흑자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을 신속히 달성할 계획임

- 2021년 36%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2년 65%를 거쳐 2023년에는 25%에 이른 다음 점차 하락하여 2025년에는 9.9%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실질 GDP 성장률은 2022~23년 기간 동안 5%, 2024~25 기간 동안 5.5%로 전망되며 GDP 대비 예산적자는 2022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3.4%에서 1.5%로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은 사회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격상승으로 상대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긴축통화정책, 사회취약계층 보호, 주요 부문 민간투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 일부 소비세에 대한 임시 세금 감면 및 추가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Presentation 3

• Uthai Phattharanamchok • Ganokporn Soisuwan (Thailand)

■ 태국은 1960년에서 2021년에 이르는 관측 기간 동안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4.1%였으며, 태국 중앙은행이 2000년 ‘유연 인플레이션 타겟팅 프레임워크(Flexible Inflation Targeting Framework)’에 따른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정책금리를 조정하면서 다소 통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난 20년간 4차례의 고인플레이션을 겪은 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원유가격과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지급, 현금 지급, 국제회의산업 및 관광산업 부문의 세제 혜택, 민간부문 지원 등을 시행함

Presentation 4

• Delegerjargal Jamyansharav (Mongolia)

■ 몽골은 교육, 인프라, 에너지, 보건부문에 공공 투자를 계획 중이며, 공공투자관리 부문을 개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성을 고려한 민간 투자파트너십(PPP), 국가비용절감법, 공공투자관리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하였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30%의 원가 상승을 겪으며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임

-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은 감사시스템을 구축

하고 재원을 다변화하는 한편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6단계로 구성된 공공투자 절차를 도입 중임

무조정과 채무관리, 특별기금의 신설이 이루어지면서 국고관리 부문에서 부처 간 유연하고 민첩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웠으며, 부처별 대응방식이 다름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관리방식과 소통방식, 그리고 재무 부문의 정확한 수치 파악이 중요한 요소임

9월 27일(화)
~28일(수)

국고회계분과

T-CoP Session I . Agile Treasuries for Crisis Management - Lessons learned from the COVID-19 Pandemic

Presentation 1

• Srinivas Gurazada (International Expert)

- 애자일(Agile)한 국고 관리의 특징은 대응성, 유연성, 효율적인 지급관리와 통제, 부정부패의 최소화, 위기에서 배우고 발전하는 능력이며, 이는 특히 위기 시 큰 효과를 발휘함
 -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무 부문의 애자일 특성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PFM 부문에서는 현금관리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음
 - 현금관리가 잘 된 일부 국가들의 경우 보조금, 충당금 등 긴급재원 측면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했음
 - 한편, 공금유용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지출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 문서화, 추적, 내·외부 감사 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박하고도 잦은 재정·재

Presentation 2

• Naranchimeg Luvsansharav (Mongolia)

- 몽골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ADB, 일본, AIIB, IMF, 세계은행, EU 등을 통해 약 10억달러의 차관을 긴급히 도입하여 보건부문 등과 같은 우선순위에 지출배분 하였으며, 정부의 디지털화를 국가전략으로 삼고 재무 부문의 디지털 변환을 주도하고 있음
 - 현재 몽골 정부는 국고 단일통합계정(Treasury Single Account, TSA)의 세금징수채널 확대, QR코드 및 전자지갑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도입, 은행 카드리더기(POS) 도입, 웹 기반의 재무포탈시스템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Presentation 3

• Tio Novita Efriani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지출이 가속화되면서 충분한 현금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관



건이었고, 이를 위해 입출금 균형의 유지, 유동성 및 현금 지속가능성 균형 유지를 위한 철저한 현금관리를 지향하였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흐름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는 한편, 국채 발행 및 대출 회수의 조정, 현금 버퍼를 이용한 불일치 관리, 현금확보를 위한 누적 잉여현금의 활용 등의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였음
- 현금관리, 부채관리, 은행 부문의 공조와 협력에서 비롯된 탄력적인 현금관리는 예측가능하고 대응적인 재정정책 전략과 경제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음

Presentation 4

• Aguido da Silva (Timor-Leste)

■ 동티모르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의회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기금을 조성하여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기금분배는 통합위기관리센터가 주도하여 일선 부처 장관 및 기관과의 협의하에 수행됨

■ 코로나19 기간 동안 동티모르 재무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정확한 대상 선정과 재원지원 및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과정에서 현금관리와 부처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향후 재정적자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도입, 공공자산 활용의 극대화, 민간부문 회계기준 도입을 준비 중임

Presentation 5

• Rusdi bin Ahmad Ali (Malaysia)

■ 말레이시아는 지난 2년간 8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흐름 관리와 내부 조율을 위해 예산 및 국고 지출 담당자들과 주간 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하였음

- 세수예측, 세금징수, 현금예측은 재무당국의 중요한 역할이며, 팬데믹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민간은행과 계약하여 재원 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음
- 통합재정정보시스템(IFMIS) 및 국고단일통합계정(Treasury Single Account, TSA)이 재무 보고와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 되었으며, 협력을 통한 통합적 문제해결과 신속한 대응, 숙련된 인력과 정보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음

T-CoP Session II . The role of Treasury in Managing Fiscal Risks for Sustainability

Presentation 1

• Richard Allen (The World Bank)

■ IMF에 따르면 재정 리스크는 규모가 크고 타 부문과의 상관도가 높은데다 발생빈도 역시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재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고국의 기능과 역할 및 리스크 자체에 대한 파악과 재정건전성 평가가 중요함

- 국고국은 재정, 회계정책, 공공조달, 감독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부채와 공공재정과 관련한 재정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
 - 한편, IMF가 개발한 재정 리스크 관리 평가틀 킷과 세계은행의 부채 및 재정 리스크 툴킷은 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도구임
- 재정 리스크는 공공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국고국은 재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와 리스크 분석, 위험관리에 대한 통합접근과 제도적 준비, 우발부채 관리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기관, 조달기관, 민관부문 등과 협력해야 함

Presentation 2

• Robert Dominick E. Mariano (The Philippines)

- 국고국의 역할은 자산관리와 채무관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필리핀 국고국은 2014년 국고단일통합계정을 도입함으로써 향상된 공공재정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국채발행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필리핀 국고국은 국고단일통합계정 외부의 현금잔고 정리를 통해 500억페소를 확보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지출증가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2~3년의 상환기간을 바탕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는 한편 현

금흐름관리위원회와 회의를 빈번히 개최하여 유동성을 파악하고 타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고 있음

- 또한, 옵션형 정부채를 발행하여 지나친 금리상승을 막고 국채 발행 등의 국내 파인낸싱 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부채 부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하고 있음

Presentation 3

• Vu Thanh Huyen (Vietnam)

- 베트남 국고국은 예산집행과 현금관리, 국채 발행과 국고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금관리와 부채관리 사이의 협업 중요성을 강조함
 - 베트남의 재정 리스크는 거시경제 리스크, 우발부채, 자연재해, 공공부채 증가로 인한 은행 부문 리스크, 인구 고령화, 기타 리스크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재정 리스크 관리는 베트남 중앙은행, 국채관리부, 국영기업 재정 담당기관 등의 정부기관에 분산되어 있음
 - 베트남 국고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걸쳐 약 700여개 단위에 이르는 전체 네트워크에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분산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위해 조세당국, 세관은 금융 및 예산기관, 일선 부처, 은행과 긴밀히 협력함
 - 현금관리개혁은 국제 모범사례에 따르며, 현금관리, 예산, 부채관리를 연결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채 발행을 통한 부



채관리로 예산 균형 및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고자 함

데이터 확보를 통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자산관리 위임 등이 필요할 것임

T-CoP Session III. Managing Public Assets to Unlock Public Wealth

Presentation 1

• Dag Detter (International Expert)

- 공공재정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보통은 부채에 주목하고 자산 부문의 중요성은 간과되는데, 공공재정에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산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부동산 자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들은 많지 않음
 -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면 GDP의 3%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이야말로 공공자산관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
 - 공공자산의 수익창출과 관리를 위해서는 투자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수익가치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 적용,

Presentation 2

• Chanik Jeon (Korea)


- 한국 국유재산 정책의 주요 목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사용 및 민간경제 순환이며 이를 위해 자산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및 혁신적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 국유재산관리체계 개편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 중임
 - 민간부문에 의한 국유재산 활용 정책의 경우 유희재산 및 활용도가 낮은 국유자산을 매각하여 자산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토지개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복합물류부지 증대 및 폐철로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Presentation 3

• Amor Rollyn D. Dais (The Philippines)

- 필리핀은 최근 국유재산관리정책 이행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유재산관리정책을 취합하고 자산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보를 취득·관리하는 시스템 및 평가 툴을 만들어 시행 중임
 - 2018년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인 NARS(National

Asset Registry System)를 도입하여 국유재산의 위치, 법적 소유권, 가치평가, 보험 등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NARS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공간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재난 대비 및 손실 파악이 가능해짐

- 데이터에 기반한 국유재산관리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2022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요

- 일 시 2022. 9. 30. (금) 13:30 ~ 17:30
-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
- 프로그램

구분	주제	발표	토론
세션 I	사회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1 보유세 부담이 고령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병남 송헌재	최인혁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경배	홍병진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 납입액 한도 인상이 은퇴 저축에 미치는 효과	김도형 전병목	송헌재
세션 II	사회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1 소득 탄력성 요인분해를 통해 살펴본 결정요인별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성명재	안종석
	2 「재정패널」을 이용한 기부 탄력성 추정분석	김 진 백혜연	고지현
	3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giving	김영록 만홍우	기은선
세션 III	사회 원중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편 방향과 영향 분석	김태완	최성은
	2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형평성 효과 분석 :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를 중심으로	설귀한 임병인	김우현
	3 코로나19 위기와 부채위험 가계	정세은 박종선	전승훈
세션 IV	사회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삶의 질/사회의 질 인식의 세대 간, 계층 간 차이 : 「재정패널」을 이용한 종단적 추이 연구	박정민 박호준	홍성훈
	2 납세자 특성별 납세적정성 인식 연구	신영호	권성오
	3 불평등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백승주	최승문
세션 V	사회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1 난방용 연료의 소비 특성 및 탄소세 도입 시 파급효과 분석	최한영 이동규	배진수
	2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적 소비 결정요인 분석	박명호	이태환
	3 조세적·비조세적 요인이 이천지출 및 증여에 미친 영향	전병목	선우희연

구분	주제	발표	토론
대학원생 우수 논문 발표	사회 및 토론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최우수 반려동물 지출의 가구소득 탄력성 및 자녀와의 대체·보완 관계 분석 : Multilevel Tobit 모형을 응용하여	이성호	
	우수 주택임대시장의 임대계약 형태 결정요인	송영선	
	우수 공적연금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 관계 분석	우인혜 홍성아	
	장려 한국사회 내의 필터버블과 편향된 정책평가	정도효 이영규	
	장려 학부모의 정부신뢰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치적 이념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안나 이태호	

I-1 주제 보유세 부담이 고령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토론 요약

최인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요약

김병남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수로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고령가구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높아져 온 탓에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인 고령가구의 세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소비지출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련된 국내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소비항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가구의 보유세 부담에 따른 소비감소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고령가구(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7~14차(2013~2020년에 해당)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지출은 주거비, 식료품비 등의 필수지출과 의류비, 내구재, 여가비, 보건의료비 등의 기타지출로 구분되고 있는데, 필수지출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이, 기타지출의 경우 확률효과 토빗(Tobit) 모형이 추정을 위해 각각 활용되고 있다.¹⁾ 연구자들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에 따른 고령가구의 소비지출 감소는 관찰되지 않는데, 오히려 모든 소비항목에서의 지출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²⁾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연구자들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석 대상인 고령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분석 기간 중 비교적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

1) 연구자들의 기초통계 분석에 따르면 의류비, 내구재, 여가비, 보건의료비 등의 경우 그 지출액이 0으로 보고되는 관측치 수가 상당하다.
2) 단, 주거비 및 내구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으며, 향후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근까지 분석 기간을 확장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보유세 부담과 고령가구의 소비지출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 실증 연구가 상당히 한정적임을 감안할 때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향후 관련 주제 연구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연구의 완성도 제고 및 독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연구자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간략히 제안해 보도록 한다.

첫째, 세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이 간략히 소개·정리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료 이용이 가능할 경우 소득유형별 소득액에 대한 기초통계를 기술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 중 보유세를 부담하는 가구와 부담하지 않는 가구의 차이가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제시된다면 분석대상의 특성이 보다 다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분석기간(2013~2020년) 동안 고령가구의 보유세 부담액 및 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등이 제시된다면 분석 결과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보유세 부담이 필수지출 전체와 기타지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 역시 <표 2>와 <표 3>에 각각 제시된다면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저축액에 대한 정보가 활용 가능할 경우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보완적인 분석 역시 수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일곱째, 현재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의 보유세 부담 가구가 분석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초고령가

구와 그 외 가구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구주 연령 65~74세인 가구와 75세 이상인 가구를 분리하는 추가적인 분석 수행을 제안한다.³⁾

여덟째, 한편 가구주 연령 65세 미만의 비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령가구 대상 추정 결과와 비교하는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I-2 주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 요약

이경배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본고는 50세 이상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의 증가가 연금계좌 납입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재정패널」 자료(제12~14차)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패널 확률효과 토빗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이 200만원 증가할 경우 납입액은 1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D 모형을 이용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50세 이상)의 평균 처리효과(ATE)를 추정한 결과, 연령과 소득이 추가 공제대상이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납입금액 평균이 약 23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편의 문제를 완화한 PSM-DID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제도로 인해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약 45만원

3)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초통계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고령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75세이다.

더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볼 때, 제도의 효과는 저소득층 보다 주로 중소득층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토론 요약

홍병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제12~14차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인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2020년 세액공제대상 한도액의 증가가 연금계좌 납입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더불어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본 연구의 주제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해당 제도의 정책 대상이 정책대상이 아닌 집단에 비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층보다 중소득층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해당 제도가 사적연금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중차분분석에서 대조군을 처치군과 보다 유사한 집단으로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에 개정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정책대상에 대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증가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처치군은 정책대상

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와 비교할 대조군은 정책대상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정책대상과 유사한 집단을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본 연구의 이중차분분석에서는 전체 대상을 정책대상과 정책대상이 아닌 집단으로 나누어 연금계좌 납입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으나, 이는 대조군과 처치군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조군을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유사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득요건은 정책 대상과 동일하면서 나이 수준이 유사한 45세 이상 50세 미만의 집단 등을 본 연구에서 설정된 처치군의 대조군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만약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대조군 설정이 어려운 경우, 본 연구의 이중차분분석에 통제변수와 고정효과를 추가하거나, 소득요건 또는 연령요건의 가변수를 추가하여 삼중차분분석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향점수매칭에서 매칭의 기준을 이중차분분석의 대조군과 처치군의 기준과 통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목적에 의거하여 대조군의 설정은 정책대상인 처치군과 특성이 유사한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분석에서 더 나아가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하고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처치군과 매칭을 위하여 기준으로 사용한 변수는 연금계좌 납입유무를 활용하였다. 다만, 이는 연금계좌 납입유무가 정책대상(처치군)의 집단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변수라는 가정이 기저에 있을 때 가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연구 내에서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를 활



용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금계좌 납입유무를 성향점수매칭의 기준변수로 활용하는 것 대신에 정책대상 여부를 기준변수로 활용하여 매칭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방법이 보다 직관적이며 그에 따른 결과해석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종속변수로 소득 대비 비율 지표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서론에서 연금계좌 소득공제의 의의가 기존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언급을 하였다. 연금계좌의 납입액 증가가 추후에 돌려받을 연금총액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연금총액의 증가를 의미할 뿐, 동시에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입자의 소득대체율과 상관관계가 낮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차선적으로 현재 소득 대비 연금계좌 납입액과 같은 소득 대비 비율 지표들을 활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해당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 조사 제 13차년도 및 제14차년도(베타 버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우리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치가 50세 이상 납세자에 국한된 사실에 착안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납입액 한도 인상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가시켰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국세청의 무작위 추출된 대규모 미시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전병목·김도형 2022)와 대조되는데, 그 차이는 「재정패널」의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는 「재정패널」이 제한적인 표본 크기로 인해 표본의 일부에 의존하는 연구설계에는 잘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토론 요약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본 논문은 2020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 조치가 연금저축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비교집단 선정을 신중히 하여 관련 제도 변경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저자들의 이전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한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공헌으로 여겨진다. 논문을 매우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가독성이 매우 뛰어난 점 또한 장점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의 공헌을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I-3 주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 납입액 한도 인상이 은퇴 저축에 미치는 효과

주제발표 요약

김도형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고는 2020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 조치가

첫째, 본 논문에서 평가하고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 납입액 한도 인상 정책이 연금저축의 세후 수익을 높여줌으로써 연금저축을 늘려 현재 소비를 줄일 수도 있고, 세후 수익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소비를 늘릴 수도 있으므로 이 정책의 순 효과는 실증적인 평가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은 무조건 연금 납입액을 증가시켜야만 세후 수익률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 정책이 현재 소비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 납입액 한도 인상 정책이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는 이론적인 메커니즘을 추가로 설명해주면 독자들이 실증 연구로서의 본 연구의 가치를 온전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둘째, 저자들은 본 연구의 공헌으로 선행 연구의 비교집단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한 점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소득의 차이가 저축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기준 개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처치집단(50~54세 개인)과 비교집단(45~49세 개인)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생애 주기 모형의 관점에서 개인의 연령 또한 은퇴 시기와 맞물려 저축 성향이 체계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 연구 또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외생성 가정을 온전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 연구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저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완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외생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독자들이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 대상에 대한 설명이 명료하지 않아 분석

대상을 분석 기간 2년 동안 매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존재하는 개인으로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2019년 혹은 2020년 1개 연도에만 연금저축에 납입한 가구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일 분석 기간에 매년 연금저축계좌 납입 경험이 있는 개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해서 분석했다면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연금저축 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그 이전에 비하여 연금저축에 가입할 확률이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이 정책의 효과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분석 대상을 매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존재하는 개인으로 한정하면 분석표본의 크기가 매우 줄어들어 추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분석표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 나온 관측치 개수(총 72개)만으로는 Asymptotics가 작동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표 3>의 추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결과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추정계수의 편의가 사라질 만큼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와 더불어 표준오차도 크게 추정되어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결과해석을 유보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일 수 있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표본을 한정된 결정을 한 것은 선행 연구의 추정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기존 선행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독자들에게 본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섯째, [그림 1]의 비교집단에서 세계개편 이후 연



금지축 납입액을 줄인 경우가 관찰되는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발견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하려는 시도가 본 논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들의 추론이 추가되기를 바란다.

여섯째, 저자들은 「재정패널」이 표본 일부만을 활용하는 연구 방법에 잘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저자들의 의견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재정패널」은 8,000가구로 구성된 패널 자료로서 결코 표본의 크기가 작지 않다. 연구 주제에 따라 적절히 연구설계를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적은 표본 크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저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축은 가구의 투자 포트폴리오 결정에 속하므로 가구의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추정을 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득재분배 효과의 원천과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소득세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세의 과표 탄력성, 과표의 과세소득 탄력성, 과세소득의 (총)소득 탄력성의 곱으로 요인분해할 수 있다. 소득세의 소득 탄력성과 3개 결정요인 탄력성의 곱은 이론적으로는 서로 같다. 다만 탄력성 추정과정에서 회귀분석 오차로 인해, 절대값이 크지는 않지만, 두 가지 형태의 탄력성 추정치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득 탄력성은 1.68270과 2.06321로 탄력성이 1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 탄력성의 요인분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소득세의 과표탄력성과 과표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정량적으로 두 가지 세부요인의 탄력성은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더 크다. 반대로 과세소득의 가구(총)소득 탄력성은 근로소득세가 0.52325로 비탄력적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1.07574로 1보다 크다. 앞의 두 탄력성은 각각 소득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체계의 누진도, 즉 제도의 누진도를 나타낸다. 제도의 누진도는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더 크지만 과세소득 분포 특성의 차이로 인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득 탄력성 크기가 역전된다. 3개 요인의 탄력성 중 2개의 제도 관련 탄력성은 조세정책을 개편하면 탄력성 수준의 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소득 탄력성은 정책당국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소득세의 누진도 또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 탄력성(누진도 또는 소득 재분배 효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세소득의 소득분포(즉, 과세소득의 소득 탄력성)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I-1 주제 소득탄력성 요인분해를 통해 살펴본 결정요인별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주제발표 요약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본 연구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고, 동 탄력성을 3개 결정요인에 대해 요인분해하여 소득세 누진성과 소

토론 요약

안중석 /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본 연구는 소득세의 누진도 결정요인을 분해하여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도적 요인과 그 외 요인으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세제의 누진도 외에 소득분포 현황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

저자는 소득세 부담의 소득 탄력성을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각각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였다. 첫 번째 요소는 소득세의 과표 탄력성이다. 이 지표는 과세표준이 1% 증가할 때 소득세 부담이 몇 %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소득세 세율체계의 누진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두 번째 요소는 소득세 과표의 과세대상 소득 탄력성이다. 이 지표는 과세대상 소득이 1% 증가할 때 소득세 과세표준이 몇 %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득세 공제제도의 누진성을 보여준다. 세 번째 요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가구 소득 탄력성으로 가구 소득이 1% 증가할 때 과세대상 소득이 몇 % 증가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과세대상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가구총소득 분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주로 분포하느냐 즉, 과세소득의 변이도(variability)를 나타낸다.

탄력성 추정방식을 보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계수추정치에 한계기울기로 사용하고 각 변수의 평균값 상대비를 평균기울기로 설정하여 탄

력성을 추정하였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분리하여 추정한 것과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추정 결과를 정리해 보면, 근로소득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체계의 탄력성이 1을 초과하여 누진적인 반면 과세소득(근로소득)은 총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의 과표 탄력성은 1.92078로 탄력성이 크게 추정되었는데, 근로소득세의 경우보다는 조금 작으며, 과표의 과세소득 탄력성은 1.09355로 다소 탄력적인데, 역시 근로소득세의 경우(1.24484)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와 공제체계의 누진도가 근로소득세의 경우보다 덜 누진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과세소득(종합소득)의 (총)소득 탄력성은 1.07574로 다소 탄력적이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종합소득(주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비중이 여타 종류의 소득보다 구성비가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합소득세의 소득 탄력성이 더 큰 것은 제도적 요인(세율, 공제체계)보다는 소득 유형별 과세소득의 분포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소득세의 소득 탄력성을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세제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영향을 세율체계와 공제체제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은 정책적으로 주는 의미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의 누진도는 세율과 공제제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소득세 제도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별 효과를 분리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실증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소득세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세제 외의 다른 요소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존재가 제도 외적인 요인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소득 탄력성 분석에서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분석하였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경제활동이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정부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구단위로 점검하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과세되므로 한국에서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또는 누진도 측정 연구는 개인 단위를 기본으로 수행되었다. 그런데, 개인 단위의 연구 결과로 재분배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가구 단위로 소득세의 누진도를 파악하였다. 세 부담은 개인 단위로 평가한 후 이를 가구 단위로 합산하여 탄력성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코멘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세의 과표 탄력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세 가지 탄력성 중 소득세의 과표 탄력성은 소득세 변화율을 과세표준 변화율로 나눈 것으로서 과세표준이 1% 변할 때 소득세 부담이 몇 % 변하는지를 추정한 것이다. 저자도 본문에서 언급하였지만 과세표준에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과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즉, 이 탄력성은 세율체계와 세액공제체계의 영향을 종합한 것이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대체하기도 하며 유사한 역할을 하므로 세율체계와 공제체계가 누진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세율체계와 세액공제체계의 영향을 구분해서 분석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체계가 적용되는데, 본 연구에서 추정한 소득세의 과표 탄력성은 종합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차이가 과표 탄력성의 차이를 유발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소득세의 소득 탄력성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인 과세대상 소득의 가구소득 탄력성의 해석 문제이다. 이 탄력성은 “가구총소득이 1 퍼센트 많은 가구에서 과세대상 소득 즉,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몇 % 더 많은 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런데 이 지표가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표가 사회구성원의 소득분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의 서두에서 저자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소득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명제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가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세제도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분석이 과세소득의 분포와 재분배 효과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이는 개별 가구의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탄력성을 추정한 연구방법의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본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탄력성을 추정하고 요인을 분해하였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차이를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가 발표 과정에서 보여준 세 부담 집중도 곡선을 보면 근로소득세 곡선과 종합소득세 곡선이 교

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득 탄력성 차이가 소득수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II-2 주제 「재정패널」을 이용한 기부 탄력성 추정분석

주제발표 요약

김 진 /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백혜연 / 창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 개인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이 2014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화되고 그 이후 세액공제율의 증가와 고세율 공제율 적용 기부금 하한선의 하락으로 기부 활성화를 꾀하면서, 개인 기부 관련 조세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특히 개인 기부자가 기부 1원을 하는 데에 실제로 지불하는 기부가격이 기부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도를 나타내는 ‘기부의 기부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몇 차례 진행되었으나 기부가격 탄력성 추정치의 혼재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불일치가 상당하였다. 기부 관련 이론모형의 부재와 데이터의 부실로 종합적 분석의 진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패널」을 통한 기부 관련 데이터의 축적에 따라 이론모형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부가격 탄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부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고는 「재정패널」 1차(2008년 조사)에서 14차(2021년 조사)까지의 데이터 중 연말정산 신고자를

중심으로 기부금의 기부가격 탄력성을 Two-part 모형, Heckman two stage 모형, Random Effect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Random Effect Tobit 모형에서는 기부금의 기부가격 탄력성이 -0.86 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즉,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기부가 그다지 탄력 있게 반응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다른 두 모형에서 기부가격은 기부행위의 유무에 대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해 기부금액이 감소하고 그 이후 세율조정에 의한 기부 활성화가 진행된 것이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반등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득분위별, 기부자특성별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여 맞춤형 정책과제를 찾고 특히 고액기부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토론 요약

고지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은 공공재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자선 및 공공단체 등의 활동과 그를 통해 조달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개인 및 법인의 기부를 통해 시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 및 소득공제가 1900년대 초부터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소득공제의 형태로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2014년도 소득세

제 개편과 함께 세액공제의 형태로 전환되는 변화가 있었다. 본고는 기부에 대한 조세 혜택이 기부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근로소득만 있는 연말정산 신고자를 대상으로 「재정패널」 1차(2008년)~14차(2021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재정패널」에서 제공하는 소득증빙자료 정보를 활용하여 한계세율 및 기부가격을 계산하고 기부금의 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기부가격이 1% 증가하면 기부금이 0.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행위가 다소 비탄력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제도가 도입되었고 사용 가능한 자료 또한 풍부하지 않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재정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증빙자료를 사용하여 가장 최신의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기부 규모가 0으로 표시되는 절단된 데이터(Censored data)의 한계를 임의 토빗 모형(Random Tobit regression), 이원 모형(Two-part model), Heckman 2단계 모형(Heckman two-stage model)을 사용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엄밀성 또한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공헌점에 더하여 본 연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이질성 분석이다. 기부행위의 경우 개인특성 및 선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

교 기부금이 개인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표 III-3에서도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라서 기부금 지출 행위에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그룹들은 탄력성 또한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아 이질성 분석을 추가하여 조세제도로 인한 기부금 가격변화에 가장 탄력적 혹은 가장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그룹을 밝히는 것은 또다른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4년도에 있었던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본고의 분석은 귀속연도 기준 2007~2020년의 기간 동안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변화는 2014년도에 기부금소득공제를 세액공제(15%)로 전환한 것이다. 그에 따라, 한계세율이 15% 미만(과세표준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제도의 변화로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율이 증가하여 기부에 대한 가격이 감소한 반면, 한계세율이 15% 초과인(과세표준소득이 4,600만원 초과인)가구는 세 부담이 증가하여 기부에 대한 가격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한계세율이 15%(과세표준소득이 1,200만원~4,6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제도의 변화로 기부금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즉, 기존 한계세율에 따라 동일한 2014년도 제도 변화로 기부금 가격의 변화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박명호·전병목(2016)⁴⁾의 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계산한 한계세율을 이용하여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을 설정하여

4) 박명호·전병목,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이중차분법 분석을 시행하거나 소득분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기부금에 대한 신고행위와 관련한 분석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자의 기부금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는 누구에게 기부금을 몰아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제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더 유리해진 쪽으로 기부금을 몰아주는 행태 변화도 가능하다. 「재정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구원별 기부여부, 종류 및 금액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기부금 신고행위와 관련한 분석을 추가할 수 있다면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가 가져오는 행태 변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3 주제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giving

주제발표 요약

김영록 / 간사이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만홍우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후 연구원

This study analyzes how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relate to donation behavior by examining approximately 10,000 taxpayers across South Korea. We focus on individuals' perceptions of current and future income inequality and find the following: First, increasing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promotes donation behavior.

Second, individuals who believe current income inequality is more severe than it will be in the future will reduce the amount of giving compared with individuals who view present and future income inequality as the same. Third,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of the high-income group shows a more significant and stable positive relationship with donations. Overall, our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oretical predictions that greater inequality increases charitable giving.

토론 요약

기은선 / 강원대학교 회계학전공 교수

본 연구는 소득 격차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기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서론에 언급되어 있듯이, 국가 단위의 소득 격차 측정치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개인 단위의 소득 격차 측정치를 사용하여 소득 격차의 문제가 개인의 기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크게 진일보한 연구로 평가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으로 「재정패널」 데이터 이용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증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첫 번째 실증결과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부액이 더 많다



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실증결과는 향후 소득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부액이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개인 기부의 동기를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기부의 동기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향후 소득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기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향후 소득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 기부액이 더 적은 이유에 관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종교기부금 비율이 매우 높다. 종교기부금이 계층 간 소득 격차 해소에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종교기부금을 제외한 공익성 기부금만을 분리하여, 소득 격차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익성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개인기부 비율이 낮다.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조사 대상국 114개국 가운데 꼴찌에 가까운 110위를 기록했다. 개인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기부로 소득 격차를 개선하는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국가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개인 기부액과의 관계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졌다는 것은 놀랍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증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data를 사용하여 소득 격차와 개인 기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공격받을 수 있다.

넷째, 소득 격차가 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개인 기부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개인 기부를 통해 소득 격차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정부의 정책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과 반대로 개인의 노력이 정부의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간 차이를 분석할 경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격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개인 기부액과의 관계가 고소득자 그룹에서 더욱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가 고소득자 그룹은 기부자 비율이 높아 종속변수인 개인 기부액(y)의 편차가 크지만, 저소득자 그룹은 기부자 비율이 낮아 개인 기부액(y)이 대부분 0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소득 격차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개인 기부액이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득 5분위별로 ‘소득 격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개인 기부액’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면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본 연구는 단일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2019년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개인 기부행태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점을 연구의 한계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III-1 주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편 방향과 영향 분석

주제발표 요약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인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수급가구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12차 조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규모는 4.8%에서 14차에는 4.7%까지 변화없이 유지되었으며, 생계급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였다. 14차 조사 기준 비수급가구 월평균 소득은 422.8만원, 중위소득은 350만원이었지만, 수급가구는 122만원과 80만원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급액은 43.6만원과 40만원이었다. 재산기준 변화 시뮬레이션을 보면, 급지와 기본재산액 조정 시 4급지로 조정 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생계급여 기준)는 3.8%로 11.7%가 증가하였다. 기본재산액을 2배로 인상하면 5.5%까지 늘었다. 4급지와 기본재산액을 동시 조정 시 수급가구가 6.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반·금융재산에 월 1.04% 환산율 적용 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5.8%로 증가하였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시 수급 규모는 7.2%로 추정되었다. 신규수급가구는 부동산 등 재산 수준이 높은 수도권은 급지와 기본재산액 조정이 유리하였으며, 환산율 조정은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가구에 좀 더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재산기준 변화에 따른 예산추정은 급지 및 기본재산액 조정 시 4급지 전환과 기본재산액을 2배로 조정할 것이 생계

급여가 11조원으로 현재보다 5조원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은 급지 및 기본재산액 조정에 비해서는 작았으며, 일반 및 금융재산 환산율을 현재의 거주용 주택 환산율로 조정했을 경우가 가장 큰 4조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토론 요약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편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급자의 변동과 재정지출액의 변동을 추정하고 있는 연구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편 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산기준 개편은 4급지로의 확대, 기본재산액 2배 증가, 9억원 이하 주택공제,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준 등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현행의 주거용 자산 월 1.04%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기술적인 시뮬레이션은 정책입안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득환산율 개편이나 기본재산액 조정에 대한 rationale과 근거가 너무 부족한 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주거용 자산은 주거를 위해 필수적 자산이므로 기타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보다는 소득환산율을 적게 적용받을 필요가 있고, 금융재산 등은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체 통일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소득환산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의 문제점은 <표 4-2>의 기준중위소득별 자산금액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가 중위소득 30~50%의 가구보다 자산액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산이 중위소득 30~50% 보다 많으면서도 근로를 하지 않는 계층이 자산이 적어서 근로를 많이 하는 계층보다 수급자가 되기 쉽다는 현행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는 것은 자산이 꽤 있는 빈곤가구의 근로의욕만 저하시키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수급가구의 실제 자산이 비수급가구의 실제 자산보다 높게 되는 현행의 역전현상만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득인정액은 빈곤 여부를 측정하며 수급자격을 주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므로, 이러한 변별력 없는 소득환산율 적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차라리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의 cut-off 방식에서의 전환을 모색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술에 있어서 수급가구 규모 증가가 큰 방식이 무엇인가를 서술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산기준의 개편이 수급가구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수급가구 규모를 증가시키려면 중위소득 기준을 올리는 것이 공평하지 재산기준 개편을 통해서 수급가구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은 현행의 왜곡수준을 더 왜곡되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공제액인 기본재산액을 2~3배로 늘리는 것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이유나 필연성도 설명이 필요하다. 신규 수급가구가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시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더 많이 편입되는 것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재산이 많은 현행의 왜곡된 구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급지조정은 사실 더 이론적 타당성이 있는 부분임에도 급지조정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은 것은 현행 수급자의 지역별 분포와도 상관이 있을 것 같으며, <표 4-2>의 자산현황을 급지별로 분포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7p의 <표 3-1> 「재정패널」 기준 수급가구 규모를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 비율이 2020년에 0.3%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2019년과 동일수준인 0.1%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등이 해마다 증가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해제 등도 해마다 실현되고 있어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의 부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I-2
주제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형평성 효과 분석
: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요약

설귀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

임병인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합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여 2018년 7월부터 1단계 부과체계를 시행했고, 5년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패널」 10차(2017년)~14차(2021년) 자료를

를 이용하여 1단계 개편안의 노인가구 간 형평성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2단계 개편안의 형평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한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에 따른 피부양자 상태 지속 목적의 소득 조정 양상을 반영하여 형평성 개선 효과를 평가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차이 분석결과, 개편안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적극적으로 소득을 감소시키며, 특히 기타소득을 크게 조정한다.

둘째, Kakwani 지수로 평가한 1단계 개편안은 노인 가구 간 형평성을 개선하였고, 이 개선효과는 피부양자의 소득 조정을 통한 피부양자 자격 유지로 인하여 구축되었다.

셋째, 2단계 개편안의 노인가구 간 형평성 개선 여부는 2021년 기준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달려있다.

토론 요약

김우현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전임교수

본 연구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정책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적용되었던 1차 개편이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개선했는가, 둘째, 개편과정에서 피부양자 요건 강화가 정책 영향군의 소득 조정 행태를 야기했는가, 셋째, 2022년 9월부터 진행되는 2차 개편으로 형평성은 어느 정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이다. Kakwani 지수로 검토한 결과, 1차 개편에 의해 형평성은 개선되었고, 피

부양자 요건 강화의 영향을 받는 집단에서 소득을 낮추는 행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소득 조정의 행태는 향후 진행될 2차 개편의 형평성 개선 효과를 결정할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개선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편과정에서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의 행태 조정과 이로 인한 정책 효과로의 영향은 학술적으로도 흥미로운 관찰이며, 정책담당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신뢰 있는 연구 결과를 위해 연구자분들께 참고가 될 몇 가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재정패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유의하는 점은 패널 조사 시점과 문항의 적용 시점의 불일치가 예상될 때 이를 일치시키는 조정 작업이다. 연구자께서 분석에 포함한 「재정패널」 12차 조사는 2019년에 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조사에서 건강보험료 관련 문항은 “작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에서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까?”이다.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 2018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수준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므로, 2018년 납부 건강보험료는 2017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을 것이다. 자료의 형태로만 기계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이 약 2년 내외의 시차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연구자들께서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검토하고 계시는 소득 행태의 조정이 어느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며, 1차 부과 체계 개편의 시기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재정패널」 자료는 정책 도입 시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제도가 도입된 당시 즉각적인 소득 조정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부과체계 개편의 과정을 다소 시차를 두고 제도 변화를 이해해서 추후에 소득을 조정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재정패널」의 최신 공개 자료와 향후 공개될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중기의 행태 변화를 event-study analysis 등으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겠다. 단, 이 과정에서 COVID-19로 인한 소득의 변화 등 교란 환경들이 있어 이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이다.

1단계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소득 조정의 규모가 비교 대상이 되는 통제집단의 구분에 따라 △1,884만원 혹은 △1,569만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처치집단의 '17년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의 조정 규모가 과대하게 추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피부양자 요건 유지를 위해서 이 정도로 소득 조정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가 자료 분석과정에서 확인하신 다양한 종류의 소득별 증감을 함께 검토하여 추가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 주제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역진성을 분석한 나영균·문용필(2021)의 연구결과와 함께 연구 결과를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처럼 미시 자료 분석은 아니지만, 건강보험통계 연보를 활용하여 역진성이 일부 해소된 부과체계 개

편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구를 인용하여 함께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III-3 주제

코로나19 위기와 부채위험 가계

주제발표 요약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선 / 광주복지연구원 연구원

본 논문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가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6~2020년 기간에 대해 부채와 원리금 상환액이 자산, 소득에 비해 과도한 가계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가, 어떤 가구가 부채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가,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상황은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이 연구 문제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가구와 부채위험 가계 비중이 2020년에 소폭 증가했는데 특히 DTI 기준의 부채위험 가계는 눈에 띄는 정도로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DTA, DTI 지표에서 부채위험 있는 가구가 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이전 시기에 비해 높아졌다.

둘째, 코로나19 더미변수만을 넣은 모형에서는 부채위험가처분소득이 작을수록, 금융자산이 작을수록 부채위험 가구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거주주택시가와 거주외 실물자산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택담보대출, 돌려줄 전세금/보증금이 있는 경우 부채위험 가구가 될 확률이 높았다.

코로나19 더미변수는 음(-)의 부호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셋째, 코로나19 더미변수와 가구주 연령, 로그가처분소득, 로그금융자산 변수와의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했을 때 가처분소득과의 상호작용항만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계수값의 부호가 양(+)이었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가처분소득이 작을수록 부채위험 가구가 될 확률이 높았지만 코로나19위기의 시기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토론 요약

전승훈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논문은 부채위기 가구의 비중, 부채위험 가구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부채가구의 비중 및 부채위험 가구가 될 가능성에 미친 영향의 분석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 2016~2020년 「재정패널」 자료의 자산 및 부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2019년 가계 신용DB 기준 명목GDP 대비 83%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2020년 89%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여도 급격한 증가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계부채 위험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사용한 데이터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정패널」 자료는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정책 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유용하지만, 자산과 부채 등에 초점을 맞춘 자료가 아니다. 이에 따라 자산과 부채 자료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에 제시된 부채보유 가구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보유 가구의 비중을 40% 이내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제시된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은 64% 내외 수준이다.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이러한 한계는 「재정패널」뿐만 아니라 다른 패널자료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산과 부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부채위험 가구에 대한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부채위험 가구의 비중이 보여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부채위험 가구의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 부채위험의 조건부 전이확률이 2016~2020년 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와 2019~2020년 기간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전후한 어떠한 상황이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부채위험 가구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가처분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채위험 가구가 될 확률이 커졌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분석결과를 보며 음(-)의 부호를 갖는 가처분소득의 계수값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큰 반면, 양(+)-의 부



호를 갖는 가치분소득과 코로나19의 교호작용 변수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이 두변수를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구해보면 코로나19 이후 가치분소득 증가가 부채위험 가구가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있을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가치분소득이 큰 가구가 부채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보다 많은 논거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로 인해 연구 주제의 시의적절성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자산과 부채 연구에 보다 적절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한 코로나19의 영향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된 분석 등을 통해 부채위험가구의 발생원인, 부채위험 가구가 되는 원인 및 코로나19 상황과의 연계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IV-1 주제 삶의 질/사회의 질 인식의 세대 간, 계층 간 차이: 「재정패널」을 이용한 종단적 추이 연구

주제발표 요약

박정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호준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이 연구는 사회의 질 인식 수준의 변화 추이와 이에 영향을 주는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고, 이에 있어서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재정패널」 제9~14차 데이터(2015-2020년)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은 총 54,269사례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APC 분석(age-period-cohor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의 질 인식에 있어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는 삶의 질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의 질 인식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연령과 코호트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의 질 인식 수준은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동일 연령대 혹은 동일 코호트 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론 요약

홍성훈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논문은 「재정패널」 09-14차 연도(2015-2020년) 자료에 있는, 복지 확대, 사회 신뢰,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지표를 이용한 연구이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인식 지표가 개인의 나이(age), 출생 연도(cohort) 및 자료조사 시기(period)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계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그림 IV-1] 등).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인식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개인의 인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일부 통제하였다. 아울러,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각각의 사회 인식 지표와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표 IV-4>.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신뢰가 높다고 인식하며, 소득 격차는 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을 발견하였다. 성별을 제외하고, 모든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사회 인식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비고란에서 변수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좋겠다.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에, 소득수준이 아닌, 소비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균등화소득 계산방법을 간략하게 각주로 소개하면 좋겠다. 사회 인식 지표는 개인 단위로 정의되는데, 통제 변수는 개인 단위와 가구 단위가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가구를 통제하고, 세대별(조부모-부모-자녀 세대간) 인식 지표 변화를 보는 것도 흥미롭겠다.

IV-2 주제

납세자 특성별 납세적정성 인식 연구

주제발표 요약

신영호 /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자별 특성과 납세적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납세자의 실제 납부세율과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세율의 차이를 통해 납세 적정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분석에 활용한 차별점이 있다. 납세자 특성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정치 등에 대한 인식, 세 부담 형평성 및 추가 조세 부담 인식 등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수의 경우 기혼이거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적정 소득세율 대비 현재의 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일수록 현재 세율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상용직이거나 전일제일수록, 연

간소득이 많을수록 적정 소득세율보다 현재 세율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인식 관련 분석결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투표참여 정도도 낮을수록 적정 소득세율 대비 현재 세율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집단을 신뢰할수록 최저구간에서는 적정 소득세율에 비해 현재 세율이 높고, 최고구간에서는 적정 소득세율에 비해 현재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형평성과 추가 조세 부담에 대한 분석결과, 세금납부 대비 정부혜택 정도는 정부혜택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적정 세율에 비해 현재 세율이 많다고 인식하여 정부혜택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 세 부담에 대한 현재의 세 부담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세 부담 인식 의향이 높을수록 적정 세율 대비 현재의 세율이 낮다고 인식했다.

본 연구는 납세적정성 변수를 새로 설정하여 납세자의 구체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 및 해석함에 따라 증세 등 조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토론 요약

권성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 중 소득, 납세 정보와 의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실제 납부세율과 납세자가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세율의 차이를 주관적 납세 적정성이라고 정의하고 이 변수와 인구통계적 변수 등 다양한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적정 세율에 대한 연구는 최근 소득세 세율체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018년, 2021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었고, 2022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소득 정보와 인식조사 결과를 연결하여 적정 세율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만, 다양한 변수와 관심변수인 주관적 세율 적정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해당 관계의 학술적,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메카니즘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 관련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충분한 현황 파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소득 수준에 따른 실제 세 부담 수준(실효세율 등)과 납세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율을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의 식별가정과 한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외생적인 변이(exogeneous variation)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omitted variable bias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실증분석에서 각 요소가 무작위로 주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해석과 활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eg. “납세 의식이나 순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치나 투표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세율에 대한 인식과 인구통계적 특성 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정책적 함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적정 세율에 대한 인식과 납세행태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재정패널」 자료

에 있는 납세자들의 조세지식 수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인지수준별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재정패널」에 신설된 ‘조세이해력’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현행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5% 이상이다.”에 대하여 ‘예’, ‘아니오’, ‘모르겠다’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재정패널」의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을 활용한 선행 연구(Kim, Byung-woo, Estimation of Latent Preference for Desirable Personal Income Tax Rate)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세율의 결정요소를 분석하였다.

IV-3 주제

불평등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요약

백승주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본 연구의 목적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패널」의 가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신뢰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사회 신뢰의 측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한 사회 신뢰 범주를 유형화하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신뢰 범주 유형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매우 크다

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계열적인 변화에서는 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작게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연도별 사회 신뢰의 수준은 사회 신뢰의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반면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으로 보였다.

셋째, 불평등 수준과 사회 신뢰의 관계는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또는 향후 불평등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좁은 범주의 신뢰 집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별 인식의 변화에서도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좁은 신뢰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불평등해진다는 인식)이 사회 신뢰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 신뢰를 낮추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계층화, 정부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파급력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지표와 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식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파급효과와 연결고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추적이 요구됨을 강조하였으며, 학술적으로 사회 신뢰 측정의 정교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토론 요약

최승문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흥미롭고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특히 잠재계층분석 방법론으로 다양한 집단(가족, 친구, 아는 사람,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종합하여 범주화하였으며, 순위로짓과 다항로짓 분석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좁은 범위의 신뢰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논문에서 제시한 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족, 친구, 아는 사람, 처음 본 사람 순으로 신뢰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신뢰도와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신뢰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불평등이 전혀 크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가족에 대한 신뢰도(4.55)와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신뢰도(2.60) 차이가 1.95이지만 불평등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가족에 대한 신뢰도(4.76)와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신뢰도(2.21)의 차이는 2.55로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를 이용하여도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두 가지 방법론이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사실을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으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높이며 사회 신뢰는 낮추는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 신뢰도가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관계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경우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적지만,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클



수 있다. 물론 변수의 특성상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거나 도구변수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언급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해준다면 독자들과 다른 연구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V-1
주제

난방용 연료의 소비 특성 및
탄소세 도입 시 파급효과 분석

주제발표 요약

최한영 /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이동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일반등유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고 탄소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소비량, 세 부담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Logit-Panel 모형을 사용하였다. Log-Log 모형을 적용하여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추산하였다. 탄소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변화는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Opinet에서 제공하는 일반등유 평균가격 자료와 제14차 『재정패널』 베타버전을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39,350관측치의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Logit-panel 분석 결과, 기준시기와 전월세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일반등유를 사용할 확률이 낮아지며, 아파트일수록 일반등유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자가일 경우 일반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할 확률이 올라간다. 가구주의 나이가 상승할수록 일

반등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구주의 나이는 U-자형을 그리고 있다. 가구주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등유를 사용할 확률이 올라가고, 상용직일 경우에는 일반등유를 사용할 확률이 떨어진다. 남성 가구주일 경우에는 일반등유로 난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등유로 난방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일반등유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는 Log-Log 모형을 실시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가진 -1.77과 0.12 값을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계층별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득 10분위별로 나누어보았다. 그 결과, 가격 탄력성 측면에서 저소득 계층에서는 비탄력적이었으며,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더 큰 음(-)의 값을 가지는 추세다. 소득 탄력성 측면에서는 저소득 분위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값이 도출되었으나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유의미한 값이 추산되지 않았다. 저소득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다면, 일반등유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미시모의실험을 통한 2만원/tCO₂, 6만원/tCO₂, 10만원/tCO₂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액이 커질수록 전체적인 소비량이 감소하나 저소득 계층에선 큰 소비량 변화가 없고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일반등유를 적게 소비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소비 양상으로 일반등유 탄소세는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된 세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등유의 탄소세 부과가 역진성을 지니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일반등유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등유를 사용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여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토론 요약

배진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난방용 유류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등유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구한 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 부담 효과, 예상 세수, 에너지 사용량 변화,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송용 유류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는 연구는 상당 수 있으나 난방용 유류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논문의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아직 초기의 단계의 연구로 보이며 추후의 분석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면 연구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선행 연구에 대한 소개 및 본 논문의 차별성 소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난방용 등유 수요에 대한 가격 및 소득 탄력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나 하나 전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격 및 소득 탄력성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수치들이 외적 타당성은 가지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데이터에 대한 좀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오픈넷에서 제공하는 일반등유의 연간 평균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등유는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겨울철의 등유 가격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계절별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겨

울철 가격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등유는 아파트 지역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시골지역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는데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등유에 대한 세금을 면세해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과의 소비 행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석에 있어서 통제 변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등유는 주로 난방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경우 등유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겨울철의 온도일 것이다. 온도가 분석에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모형의 내생성의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og-log 모형을 통해서 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은 수요가 종속변수이고 가격이 독립변수임을 가정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요 또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로 인해서 해당 모형에서는 편의가 존재하는 추정치가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시계열 변수로서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세들이 잘 통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현상들이 마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시물레이션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등유에 대한 세금을 매기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세금 부담을 내게 되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이 탄소세 부과에 따라 등유 소비를 크게 줄이는 경우 이들은 난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료를 통해 난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득층은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탄소세의 미시 모의실험을 하는 경우 하나의 원료만을 대상으로는 해서는 아니 되며 대체관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연료를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V-2 주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적 소비 결정요인 분석

주제발표 요약

박명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제14차 「재정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한 가구의 추가적인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급이 추가적인 소비 유발 여부 및 추가적인 소비지출액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로짓분석과 좌측절단 토빗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배우자가 존재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고졸 미만보다 높을수록 추가적인 소비유발 확률 및 소비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 및 정부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추가적인 소비 유발 확률 및 소비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요약

이태환 /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0년 한국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가계에서 추가적인 소비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경제학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어 왔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주된 목표가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소비 진작이었는데, 실제로 가계가 재난지원금을 소비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목표했던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계가 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을 저축해버린다면 14조원 넘는 재정지출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소비성향 또는 저축성향을 식별해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었을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줄어든 소비가 재난지원금에 의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연구자에게는 한 시점의 소비금액 하나밖에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비금액 안에서 코로나19의 위축효과와 재난지원금의 진작효과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주어졌으므로,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집단이 없다는 것도 연구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직접적인 설문을 통해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대상에 대한 소비(이하 ‘추가적인 소비’)가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것인데, 제14차 「재정패널」 조사에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부가질문이 포함되었다. 그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본 논문

은 의의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추가적인 소비가 9.5%의 응답자에게서 발생했으며, 추가적인 소비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추가소비 금액은 40.7만원이었고, 이러한 소비 성향이 가구원 수, 연령, 소득분위, 고용상태, 유동성 제약 등과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로짓과 토빗 모형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이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총액 14조 2천억원 중 추가적인 소비로 연결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계산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한계소비성향, 즉 재난지원금 대비 추가소비지출액의 비율을 제시한다면 다른 연구에서 밝힐 수 없었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정치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소비 확률, 그리고 더 적은 추가소비지출액으로 연결된다는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성향이 소비행태에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추가적인 소비’의 정의를 시간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향상소득 가설에 근거하여 추론해 보면, 가구에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당장의 소비진작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소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비’를 ‘3개월 이내의 추가적인 소비’ 등으로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논문의 주요 질문 자체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90% 이상의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전액 저축했다는 것은,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밖에 몇 가지 간단한 제언을 곁들인다면, 우선 로

짓 모형이나 토빗 모형 등 분석에서 이용된 모형들을 수식으로도 본문에 제시해주면 보다 명료한 서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 1>에서는 제시된 수치가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가중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모든 분석 결과에 대해 가중치의 적용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표 1>이나 다른 기술통계량의 경우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면 독자의 궁금증을 보다 잘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패널」 자료에서 소비지출이 언제나 0 이상의 값을 갖는 것에 대해 censored data라는 해석을 했는데 truncated data로 볼 여지도 있어, 이들 개념의 비교를 포함한 자료의 성격을 각주 등을 통해 조금 더 분명하게 기술해준다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V-3 주제

조세적·비조세적 요인이 이전지출 및 증여에 미친 영향

주제발표 요약

전병욱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현금이전 방식의 부양목적 등의 타가구 이전소득은 매우 보편적인데, 개별 현금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이전금액은 지급·수령의 당사자인 개별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함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관적인 “유보가격”의 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보가격과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증



여 및 타가구 이전과 관련한 일반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연구는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5~14차연도(2011~2020년)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별 현금 이전의 증여 여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명확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결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수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신고 여부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완전한 과세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존속으로 현금 이전의 유형을 결정하는 납세자의 의사결정 방식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한 증여재산공제액을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2014년 및 2016년의 증여재산공제 확대의 효과는 비교적 유의적인 반면 증여세의 부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과 사실을 전제로 하는 2018년 이후의 신고세액공제 축소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해서 증여재산공제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현실적인 과세실무를 반영해서 비교적 소규모의 수증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비유의적으로 반응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토론 요약

선우희연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교수

본 연구는 가구간 현금 이전 의사결정의 특색을 탐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의사결정, 현금이전거래의 지급/수취인 간의 관계, 현금이전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현금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의 수증현황 및 타가구 이전소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합함으로써, 한 가구가 이전받은 현금흐름의 규모 및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문헌에 공헌한다. 특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전 받은 현금흐름도 연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여세 신고납부 자료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신고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로 확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본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적으로 유보가격은 구매자(공급자)가 지불할(수령할) 의사가 있는 가장 높은(낮은) 가격으로 정의된다. 본 논문에서 유보가격은 “개별 현금 이전의 증여 해당여부에 대한 주관적인 가구별 인식을 반영”한다고 표현되었는데, 이 금액을 넘으면 증여 신고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의 유보가격 산정 과정을 보면, 증여 의사결정의 결과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증여 의사결정의 결과로 산정된 유보가격을 다시 의사결정 대상인 이전금액의 결정요소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즉,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상관관계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논문에서 지칭하는 “유보가격”의 경제적 의미 및 종속변수와 갖는 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서론 및 초록은 “유보가격”이 증여세 신고여부, 이전금액 및 이전대상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식 (1)-(3)을 보면, “유보가격”은 이전금액의 결정요소로만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서론 및 초록의 내용과 분석 내용을 일관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논문의 분석은 “현금” 이전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여는 부동산 거래로 이루어지고 현금 거래는 상대적 비중이 낮다(<표 10> 참조). 이는 본 논문의 비유의적 연구 결과의 원인일 수 있다. 또한 현금 거래는 애초에 증여세 신고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한계점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pfrk.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설명]

- 백악관은 2022년 9월 12일, 최근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용될 세제 혜택에 대해 설명함¹⁾
 - 세금공제를 통해 소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
 - 소기업의 운영비용을 낮추고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기업이 저비용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30%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제공
 - 트럭 및 밴과 같은 대형 차량을 사용하는 소기업이 청정 상업용 차량(예: 전기자동차)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30%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림
 - 2023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기존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인상하여 영향력 있는 R&D가 가능하도록 지원

- 전 세계 국가들이 청정 에너지 경제를 주도하고 자 경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태양열, 풍력, 탄소 포집, 청정 수소 등에 대한 공급 기회를 미국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임
 - 배터리, 태양열,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 제조에 미국 자국 기술력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산업군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 미국 재무부장관은 IRS에 연간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는 감사율(audit rates)을 확대하지 말 것을 지시함²⁾
 - 초부유층과 대기업이 미납한 세금의 징수를 촉구함
 -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피하고 있는 연간 이익이 10억달러 이상인 대규모 기업을 위주로 감사할 것을 지시함
 - 대기업 위주의 세금 징수를 통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은 억제할 계획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캐나다 -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 2배 제안]

- 캐나다 총리는 2022년 9월 13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캐나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³⁾

1) THE WHITE HOUSE, "FACT SHEET: How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ill Help Small Businesse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9/12/fact-sheet-how-the-inflation-reduction-act-will-help-small-businesses>, 검색일자: 2022. 9. 26.
 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RELEASES,"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918>, 검색일자: 2022. 9. 26.
 3) Government of Canada, "Making life more affordable for Canadians this year," <https://pm.gc.ca/en/news/news-releases/2022/09/13/making-life-more-affordable-canadians-year>, 검색일자: 2022. 9. 26.

- 발표를 통해 예정된 세 가지 조치를 제안함
 - 6개월 동안 GSTC(상품 및 서비스 세금공제) 한도를 두 배로 확대
 - 일회성 캐나다 주택 혜택(Canada Housing Benefit) 시행
 - 치과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적격아동을 위한 치과 치료 혜택

■ GSTC를 두 배로 늘릴 경우 세금공제를 받는 약 1,100만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

- 자녀가 있는 캐나다 가정의 약 절반가량과 캐나다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포함됨
 - 자녀가 없는 독신 캐나다인은 234캐나다달러를 지원받고, 두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최대 467캐나다달러를 지원
 - 고령자에게 255캐나다달러를 추가로 지원

■ 그 외 캐나다 정부는 주택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세입자들을 위한 일회성의 주택 혜택을 제공하고 더불어 치과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12세 미만 국민에게 향후 2년간 Canada Dental Benefit을 제공할 계획임

<자료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영국 - 트러스 영국 정부, '감세'에 초점 맞춘 새 예산안 발표]

■ 영국 재무부장관 퀴지 콰텡(Kwasi Kwarteng)은 2022년 9월 23일, 하원에서 '2022년 미니 예산안(mini budget)'을 발표하였음⁴⁾

- 금번 미니 예산안은 '2022년 성장 계획(The Growth Plan 2022)'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음
- 소득세 기본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 각종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음
 - 퀴지 콰텡 재무장관은 '높은 세율이 근로의욕과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영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새 시대를 맞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 영국 정부는 이러한 감세 정책으로 2027년까지 약 450억파운드⁵⁾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소득세) 2023년 4월부터 기본세율을 19%로 1%p 인하하기로 함⁶⁾

- 또한 15만파운드⁷⁾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

4) GOV.UK, "The Growth Plan 2022 Speech," 2022. 9. 23.,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the-growth-plan-2022-speech>, 검색일자: 2022. 9. 26.; IBFD, "United Kingdom - Tax Cuts Headline 2022 'Mini Budget'," 2022. 9.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3_uk_2.html, 검색일자: 2022. 9. 26.

5)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조 772억 5천만원임

6) GOV.UK, "Chancellor announces new Growth Plan with biggest package of tax cuts in generations," 2022. 9. 2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new-growth-plan-with-biggest-package-of-tax-cuts-in-generations>, 검색일자: 2022. 9. 26.

7)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3,039만원임



되는 최고세율은 내년 4월부터 현행 45%에서 40%로 내리기로 함

■ (인지세) 주택가격 12만 5천파운드⁸⁾ 이상에서 25만 파운드⁹⁾ 이상으로 납부 기준이 2배 올라가게 됨

-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인지세 납부 기준이 주택가격 30만파운드¹⁰⁾ 이상에서 42만 4천파운드¹¹⁾ 이상으로 올라 인지세 부담이 현재보다 완화된 예정임

■ (법인세) 법인세율 인상 계획은 폐지되었음

- 애초 영국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25%로 올리려고 했지만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였음

■ 다만, 금번 예산안에 대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예산안 발표 다음 날부터 발생한 금융 대란¹²⁾으로 인해 향후 계획의 이행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¹³⁾

- 영국 정부는 2022년 10월 3일,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를 40%로 인하하고자 하는 계획을 철회하였음¹⁴⁾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프랑스 -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 점진적 폐지]

■ 프랑스 재무부장관은 2022년 9월 12일,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contribu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함¹⁵⁾

-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는 2023년 및 20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프랑스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임
- 기존에도 2020년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의 세율을 1.5%에서 0.75%로 인하하고, 2021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액의

8)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199만원임

9)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8,376만원임

10)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6,052만원임

11)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5,086만원임

12) 2022년 9월 26일 영국 파운드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약 5% 하락하며 한 때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까지 추락하였으며,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면 대규모 국제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영국 국제 투매 현상이 벌어지며 국제금리가 급등하였음

13) Bloomberg Tax, “UK’s Biggest Tax Cuts Since 1972 Prompt Crash for Pound, Bonds,” 2022. 9. 2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9L0SB2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mlvZDZlY2Y4MDZiYzg5MSJdXQ--554a44dbcbadb0a968f39550fc4c53f520863bb&criteria_id=d51137243b04bd74ca6786cf806bc891&search32=pi1VDE1ggmoQY9c0_ue9YA%3D%3DoLoAkqVWH79EgiY-Z_XlkwwwwuWOsem9Tek0xsi2aot4mi3vGDMSOmp9A-gbZSorZMimzRCz9mcOzrRaXyujQD1O9aRmeLLQMfh1dHxDq9FXyK7pubpqLQRyki7CgbFWxx_N6bfBJoPgDONRFj8N2YRTf58CbAfMwy29QC1Dvs-Y8x9eUtTQ_Yeb6dBApHEdENNRqWTHMczZx_3mSdCb3BMZUFy_8YYDKfwW3qnhvBUbly_g7PSe3SHQXh50_mJ84MflK6qBCzJqE1V6to9oprKgeGJN0QzhLhcY9QOUFNB-fUU7rTtA0urxP33bZIC2Z1eLiu5-Br8NCm2FpMXxIsUHNuvqwgJVfHr7IHTfi_NU6vGPAr3pFLQZYx9DNUINzNGnAYdms5pfbIWxKlZSlrYOVkeQT4LHyfTgJpzuU%3D, 검색일자: 2022. 10. 4.

14) IBFD, “United Kingdom Scraps Plan to Cut Top Income Tax Rate,” 2022. 10.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03_uk_1.html, 검색일자: 2022. 10. 7.

15) IBFD, “France to Phase Out Contribution on Added Value of Enterprises,” 2022. 9.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14_fr_2.html, 검색일자: 2022. 9. 27.

50% 경감 조치를 취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켜 왔음¹⁶⁾

-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매출액(상품판매 및 용역제공)과 추가소득(고정자산 양도소득 등)에서 생산비용 등 기타비용을 공제한 것임¹⁷⁾
- 매출이 15만 2,500유로¹⁸⁾를 초과하는 기업 및 상시 영업활동을 하고 매출이 50만유로¹⁹⁾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과됨²⁰⁾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벨기에 - 인하된 부가가치세를 적용 연장 및 초과이익세 도입 발표]

- 벨기에 정부는 2022년 8월 31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연방 위기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인하된 부가가치세를 적용 연장 및 특정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windfall profit tax) 도입을 발표함²¹⁾

- 전기·천연가스·지역난방에 대하여 적용되는 6%의 부가가치세를 적용 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 특정 에너지 기업에 대하여 일시적인 초과이익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는 특정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초과이익세 도입을 발표하고, 벨기에 전기 및 가스 규제 위원회(CREG) 등으로 구성된 작업 그룹에게 초과이익 포착 가부, 조세의 형식 및 법적 수단 등을 조사하도록 함
 - 특정 원자력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외에도 원자력 생산으로 인한 연이익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원자력 부담금(cotisation sur l'énergie)이 부과되고 있어 초과이익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²²⁾
 - 법적 불확실성과 초과이익의 규모 추정이 쉽지 않으며, 에너지 기업이 소비자에게 특정 이익을 상환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대체 방법이 가능하다는 등의 반대 견해도 여전히 존재함²³⁾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16) IBFD, "France Lowers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Extends Scope of Reduced Rate for SM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1-05_fr_2%23tns_2021-01-05_fr_2, 검색일자: 2022. 9. 30.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2020, p. 109.

18) 2022년 9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1,483만원임

19) 2022년 9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01만원임

20) economie.gouv.fr., "Qu'est-ce que la 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CVAE),"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cotisation-valeur-ajoutee-entreprise-cvae>, 검색일자: 2022. 9. 27.

21) belgium.be, https://www.belgium.be/fr/actualites/2022/un_plan_federal_de_crise_face_la_flambee_des_prix_de_lenergie, 검색일자: 2022. 9. 27.; IBFD, "Belgium to Extend VAT Rate Cuts, Introduce Windfall Profits Tax, Prime Minister Says," 2022. 9.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02_be_1.html, 검색일자: 2022. 9. 27.

22) world nuclear news, "Electrabel contends nuclear tax calculation," <https://world-nuclear-news.org/Articles/Electrabel-contentends-nuclear-tax-calculation>, 검색일자: 2022. 9. 30.

23) The Brussels Times, "Energy crisis: How to tax excess profit from energy companies?," 2022. 8. 31., <https://www.brusselstimes.com/280502/energy-crisis-how-to-tax-excess-profit-from-energy-companies>, 검색일자: 2022. 9. 30.



[독일 - 고물가 대응 제3차 납세자 구호 패키지 발표]

- 2022년 9월 4일 독일 집권 연정당은 급격한 에너지가격 상승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3차 고물가 대응 구호패키지를 승인함²⁴⁾
 - 제3차 구호패키지의 예산규모는 약 650억유로임²⁵⁾
- 해당 조치에는 연금수급자 및 학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각종 실업수당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감면된 부가세율을 포함함
 - 조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함
 - 음식점의 식품 공급에 대한 감면된 부가세율 7% 적용 연장
 - CO2 부과금 인상을 2024년 1월 1일로 연기
 - 2024년 3월 31일까지 천연가스 소비에 대한 감면된 부가세율 7% 적용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inflation-driven cold progression)
 - 조세정책 외의 조치로는 전기요금의 경감, 연금수급자의 경우 300유로,²⁶⁾ 학생의 경우 200유로²⁷⁾의 일회성 일시금 지급, 첫째·둘째 자녀의 월별 아동수당 18유로²⁸⁾ 인상, 실업수당 인상 등

을 포함함

- 부가세율 및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스페인 - 에너지 관련 조세 지원 연장 및 확대]

- 스페인 총리는 2022년 9월 1일, 다가오는 겨울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의 일시적인 인하 계획을 발표함^{29), 30)}
 - 2022년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가스 공급 및 수입, 국내 구입에 대해 기존 21%에서 5%로 인하된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높은 물가상승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이 승인될 수 있음을 밝힘
 - 이 밖에도 바이오매스용 조개탄 및 펠릿이나 땀감용 목재의 공급, 수입 및 국내 구입에도 동일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이 적용됨

24) 독일정부, "Germany stands united at this challenging tim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third-relief-package-2123130>, 검색일자: 2022. 9. 26.; IBFD, "EUR 65 Billion Third Relief Package Brings Greater Help to Taxpay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05_de_1.html, 검색일자: 2022. 9. 26.

25)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0조 347억원

26)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만 1581원임

27)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만 1054원임

28)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 5289원임

29) IBFD, "Government to Slash VAT on Gas from 21% to 5%, Prime Minister Says," (05 Sep.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9-05_es_1, 검색일자: 2022. 9. 26.

30) IBFD, "Government Slashes VAT Rate on Natural Gas from 21% to 5% (21 Sep.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9-21_es_1, 검색일자: 2022. 9. 26.

- 이를 통해 스페인의 세수는 3개월 동안 1억 9천만³¹⁾~2억유로³²⁾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계획은 2022년 6월 26일 승인된 다른 에너지 관련 조치에 대한 확장적 성격을 지니며, 당시 승인된 조치들에 대한 연장 혹은 확대 조치도 함께 이루어짐
- 전기에 대한 특별세(Impuesto Especial sobre la Electricidad)에 대해 0.5%의 감면세율 적용 및 전기에너지 생산에 대한 과세 중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제공된 전기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존 감면된 10%의 세율에서 5%로 추가 감면된 세율을 적용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포르투갈 -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계획 발표]

- 포르투갈 정부는 2022년 9월 5일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38억

유로 상당의 추가 계획을 발표함³³⁾

- 포르투갈의 2022년 8월 물가상승률은 8.9%로, 이는 2022년 예산안에서 전망한 4%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었음
- 포르투갈은 2022년 4월에도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23%에서 13%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이번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추가 계획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임³⁴⁾

- 2023년 12월까지 전력이 6.9kVA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용 전기에 대하여, 월 100kWh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13%에서 6%로 인하함
- 탄소세의 인상을 연도 말까지 유예하고 유류세인 ISP세(Imposto Sobre Produtos Petrolíferos)를 감면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네덜란드 - 2023년 예산안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2년 9월 2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함³⁵⁾

31) 2022년 10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96억원임

32) 2022년 10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38억원임

33) Reuters, "UPDATE 1-Portugal approves \$2.4 bln in new inflation aid for families,"(September 6, 2022), <https://www.reuters.com/article/portugal-cabinet-inflation-idUSL8N30C419>, 검색일자: 2022. 9. 26.

34) IBFD, "Portugal Plans to Slash VAT Rate on Electricity From 13% to 6%,"(12 Sep.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9-12_pt_1, 검색일자: 2022. 9. 26.

35) News IBFD, "Corporate Income Tax Hike, Substantial Shareholders and "Box 3" Headline 2023 Budget," 2022. 9.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9-20_nl_1%23tns_2022-09-20_nl_1, 검색일자: 2022. 9. 23.



- 법인세율 인상, Box 2 소득에 대한 2단계 누진세율 도입, Box 3 소득세율 인상, 30% ruling 제도 소득금액 상한 도입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법인세) 최하위 법인세율을 기존 15%에서 19%로 4%p 인상하고,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금액을 하향 조정할 계획임³⁶⁾
 - 최하위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적용대상 금액을 39만 5천유로³⁷⁾에서 20만유로³⁸⁾로 축소하고, 세율은 15%에서 19%로 4%p 인상함
 - 최상위 법인세율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25.8%로 유지함
- (개인소득세) 유보소득 배당 촉진 목적으로 Box 2 소득에 대한 2단계 누진세율을 도입하고, Box 3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함
 - 현행 소득세법상 실질적인 주주(Substantial shareholders)³⁹⁾가 벌어들인 배당 및 지분양도 소득에 대하여 26.9%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2024년부터 2단계 누진세율을 도입할 계획임
- (근로소득세) 2024년부터 30% 룰링(ruling)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상한기준을 도입할 계획임⁴⁴⁾
 - 법적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30% 룰링 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21만 6천유로⁴⁵⁾를 한도로 제도가 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6만 4,800유로⁴⁶⁾의 금액에 대
- 법인세율 인상, Box 2 소득에 대한 2단계 누진세율 도입, Box 3 소득세율 인상, 30% ruling 제도 소득금액 상한 도입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6만 7천유로⁴⁰⁾까지는 1단계에 해당하는 세율인 24.5%를 적용하고, 6만 7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에 해당하는 세율인 31%를 적용할 계획임
- 현재 31%인 Box 3⁴¹⁾ 소득세율을 2025년부터 1%p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34%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면세 대상 소득기준(Belastingvrije vermogen)을 기존 5만 560유로⁴²⁾에서 5만 7천유로⁴³⁾로 인상할 계획임
- 최하위 소득세율을 현행 37.07%에서 36.93%로 0.14%p 인하하고, 최상위 소득세율은 49.5%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36) News IBFD, "Government Hikes Lower Rate of Corporate Income Tax, Lowers Threshold in 2023 Budget," 2022. 9.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9-21_n1_2%23tns_2022-09-21_n1_2, 검색일자: 2022. 9. 23.

37)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4,693만원임

38)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7,693만원임

39) 실질적인 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함

40)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75만원임

41) Box 3 소득은 납세의무자가 소유 자산(Vermogen)에 대한 자본소득으로, 저축으로 인한 투자수익 등을 의미함

42)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99만원임

43)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91만원임

44) News IBFD, "30% Ruling Cap Features Prominently Among Wage Tax Measures in 2023 Budget," 2022. 9.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1_n1_4.html, 검색일자: 2022. 9. 26.

45)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9,790만원임

46)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937만원임

해 면세 적용이 가능함⁴⁷⁾

- 30% 롤링 제도의 소득금액 상한기준은 고위 공직자의 최대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최고 소득 기준법(Balkenendenorm)과 동일하며, 2022년 기준액은 정부 장관 급여의 130%인 21만 6천유로임
- 다만, 2022년에 30% 롤링 제도의 혜택을 적용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2024년이 아닌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금액 상한기준 한도를 적용받음

된 금액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0만 6,671유로⁵⁰⁾에서 2만 8,947유로⁵¹⁾로 축소하고 2024년부터는 주택 구매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폐지할 계획임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간접세) 부동산거래세(Transfer tax) 표준세율을 인상하고, 주택구입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폐지 계획 등을 발표함⁴⁸⁾
 - 부동산거래세 표준세율을 2023년부터 기존 8%에서 10.4%로 2.4%p 인상함
 - 네덜란드 거주자는 법적·경제적 소유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특정권리를 취득할 때, 취득한 재산의 공정가치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표준세율을 인상함⁴⁹⁾
 - 단, 자가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은 현행 세율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자녀의 거주 주택 구매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중국 -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유예 정책 연장]

- 중국 국무원은 2022년 9월 14일, 2022년 8월 31일 만료된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유예 정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52), 53)}
 - 대상이 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국내증치세 및 국내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도시유지보호건설세 등을 포함함
 - 중기업(medium-sized enterprises)은 대상 세금의 50%를, 소기업(small and low-profit enterprises)은 대상 세금의 100%를 납부유예할 수 있음
 - 해당 정책은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시행한 납

47) PWC, "30% ruling capped," <https://www.pwc.nl/en/insights-and-publications/tax-news/wage-tax-and-social-security/30-ruling-capped.html>, 검색일자: 2022. 9. 26.

48) News IBFD, "Property Transfer Tax Increase, Abolition of Gift Tax Exemption for Purchase of Dwellings, Highlights of Other Tax Measures in 2023 Budget," 2022. 9.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1_nl_6.html, 검색일자: 2022. 9. 26.

49)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9. Miscellaneous Taxes (Last Reviewed: 15 August 2022), "9.2.1. Immovable property,"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nl_s_9.2.1.%23gtha_nl_s_9.2.1., 검색일자: 2022. 9. 23.

50)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712만원임

51)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92만원임

52) IBFD, "China Extends Tax and Fee Deferral for Manufacturing Enterpris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15_cn_1.html, 검색일자: 2022. 9. 19.

53)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2. 9. 15] 국무원 상무회의, 제조업 납세 유예 기간 연장 결정 등,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816, 검색일자: 2022. 9. 30.



부유에 정책을 재연장하는 것임⁵⁴⁾

- 해당 정책의 연장으로 유예될 세액 규모는 약 4,400억위안⁵⁵⁾임

<자료수집 및 정리: 권정교 세무사>

재세를 조정하고 있음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인도 - 디젤, 제트 연료 수출에 대한 횡제세 인상]

- 인도 재무부는 9월 1일부터 디젤 수출에 대한 횡제세를 두 배로 인상함과 항공연료에 대한 부과금을 4배 이상 인상함을 공식 통보함⁵⁶⁾
 - 기존 리터당 7루피⁵⁷⁾이던 경우 수출에 대한 횡제세를 리터당 13.5루피⁵⁸⁾로 인상함
 - 항공연료 운송에 대한 부과금을 기존 리터당 2루피⁵⁹⁾에서 리터당 9루피⁶⁰⁾로 인상함
 - 또한 국내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한 세금을 톤당 300루피⁶¹⁾에서 1만 3,300⁶²⁾루피로 인상함
- 인도는 2022년 6월 부과금을 도입한 이후 국제 유가에 따라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며 약 2주마다 횡

[EU - 에너지 사업 관련 초과이익 분담금 제한]

- EU집행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EU 내 석유, 가스, 석탄 및 정유 부문의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에 발생한 잉여 이익에 대해, 초과이익세의 성격을 지니는 한시적인 연대 분담금을 제안함⁶³⁾
 - 분담금은 직전 3년간의 평균 이익보다 2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최소 33%의 비율이 적용됨
 - 본 조치는 발효 후 1년간 적용되며, 2023년까지 10월 15일까지 EU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함
 -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약 250억 유로⁶⁴⁾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수익금은 EU 내 국가들의 에너지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에너지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임

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국 -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중간예납액 납부유예 발표,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serialNo=5616>, 검색일자: 2022. 9. 19.

55) 2022년 9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8조 6,820억원임

56) Bloomberg tax, "India Steeply Increases Windfall Tax on Diesel, Jet Fuel Export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7L9PNH4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ite, 검색일자: 2022. 10. 04.

57) 2022년 10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3.06원임

58) 2022년 10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7.33원임

59) 2022년 10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16원임

60) 2022년 10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8.22원임

61) 2022년 10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274원임

62) 2022년 10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3,814원임

63) IBFD,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Solidarity Contribution on Surplus Profits of Fossil Fuel Sector,"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15_e2_1.html, 검색일자: 2022. 9. 20.

64)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조 4,130억원임

- 초과이익에 대한 연대 부담금 조치는 EU이사회 규제 제안서 COM(2022) 473에 근거한 EU집행위원회의 긴급 시장 개입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EU이사의 투표 후 승인이 결정됨

<자료수집 및 조사: 서희진 회계사, 박하얀 연구원>

[EU - EU의회 디지털 부과금 도입 제안]

- 2022년 8월 26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ECON)는 필라1 시행에 대한 진전이 없거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이 2025년 말까지 대다수의 국가에서 비준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EU 내 디지털부과금 도입을 제안함^{65), 66)}

- 국제적 차원에서 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필라1 합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확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EU위원회와 EU회원국은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 디지털 부과금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임

<자료수집 및 조사: 서희진 회계사, 이희경 회계사>

65) 유럽의회,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ECON-PA-734455_EN.pdf, 검색일자: 2022. 9. 20.; IBFD,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Proposes to Adopt Digital Levy if Pillar One Fail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30_e2_1.html, 검색일자: 2022. 9. 20.

66) Tax Notes International, *EU Lawmakers Push for Digital Levy Proposal for End of 2025*, Volume 107, 2022, p. 1157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50억유로의 우크라이나 거시금융지원(MFA)* 발표(2022. 9. 7.)¹⁾

* 예외적이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EU 인접국, 후보·잠재후보국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장기 대출 혹은 보조금 형태로 구성되며, 수혜국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IMF 개혁 이행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지난 5월 발표한 최대 90억유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²⁾의 일환으로, 7월 10억유로 지원³⁾에 이은 두 번째 제안
- 우크라이나의 거시경제 안정과 전반적인 회복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번 지원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급증하는 자금소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U 보증을 바탕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형태로 분할 지원되며 이자 비용과 수수료는 EU가 부담
- 15일 의회, 20일 이사회 승인⁴⁾

■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 추가 인상(2022. 9. 8.)⁵⁾

- ECB 정책위원회는 9월 14일부로 정책금리(기준금리 0.5%, 한계대출금리 0.75%, 수신금리 0.0%)를 각각 0.75%p씩 인상하기로 결정
-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 원금과 긴급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원금은 기존 발표와 같이 재투자할 계획
- 한편, 중앙은행에 예치된 정부 예금에 적용하는 금리 상한(0%)⁶⁾을 2023년 4월까지 일시 중단하고 수신금리(DFR)와 유로단기금리(€STR) 중 낮은 금리로 상향

■ EU 집행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긴급시장개입 제안(2022. 9. 14.)⁷⁾

-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를 완화하는 조치를 이사회에 제안
 - 피크 시간대(예: 평일 3~4시간)에 전력 수요 5% 감축을 의무화
 - 또한 회원국들이 2023년 3월까지 전반적인 전력 수요를 최소 10% 감축할 것을 제안하며,

1) EU 집행위,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second €5 billion tranche of macro-financial assistance to Ukraine," 2022. 9. 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373, 검색일자: 2022. 9. 9.

2)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5월호를 참고

3)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7월호를 참고

4) EU 의회, "Parliament approves €5 billion loan to Ukraine," 2022. 9. 15.,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909/IPR40142/parliament-approves-EU5-billion-loan-to-ukraine>, 검색일자: 2022. 9. 23.; EU 이사회, "Council adopts additional €5 billion assistance to Ukraine," 2022. 9. 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9/20/council-adopts-additional-5-billion-assistance-to-ukraine/>, 검색일자: 2022. 9. 23.

5)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 9. 8.,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0908~c1b6839378.en.html>, 검색일자: 2022. 9. 13.; _____, "ECB temporarily removes 0% interest rate ceiling for remuneration of government deposits," 2022. 9. 8.,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pr220908-0705913289.en.html>, 검색일자: 2022. 9. 13.

6) 현재는 수신금리가 음(-)인 경우 정부 예치금에 대해 DFR과 €STR 중 낮은 이율까지 지급하고, 0 이상인 경우 0%까지 보상하도록 규정

7) EU 집행위, "Energy prices: Commission proposes emergency market intervention to reduce bills for Europeans," 2022. 9.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489, 검색일자: 2022. 9. 16.

이를 위해 금전적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 등 저비용 발전 사들에 대한 수입 상한 설정을 고려
 - 이들 발전사는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은 안정적인 데 반해 전기 도매가격 상승으로 이례적인 수입을 얻고 있음
 - MWh당 180유로로 수입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수익은 각 회원국이 징수해 에너지 소비자의 비용 완화에 활용
- 마찬가지로 석유, 가스, 석탄 발전사 및 정유사들에는 임시 초과 이윤에 대한 임시 연대 기여(solidarity contribution)를 제안
 - 최근 3년간 평균 이윤보다 20% 이상 증가한 2022년 이윤에 대해 징수
 - 각 회원국이 징수해 가계, 기업, 에너지 집약 산업 등 취약 부문 지원과 에너지 전환 투자에 활용

■ EU 집행위, 헝가리에 대한 조건부 규정 적용 제안 (2022. 9. 18.)⁸⁾

- 집행위는 EU 예산 보호를 위한 조건부 규정(conditionality regulation)*을 헝가리에 적용

할 것을 이사회에 제안

*법치주의 훼손이 건전한 재정 관리 또는 EU 재정 이익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EU 예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으로, 2021년 시행 이후 이번이 첫 사례임

- 집행위는 헝가리의 법치 훼손 사례로 공공조달의 제도적 부정 및 결함, 공익신탁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 불충분, EU 자금 관련 사건의 조사 및 기소 미흡, 반부패 프레임워크 결함 등을 지적
- 집행위는 독립 청렴 기관 신설, 형법 및 공공조달법 개정 등 헝가리가 발표한 개선 계획이 미흡하거나 미완료 되었다고 판단
- 이에 결속 정책(cohesion policy)⁹⁾ 내 3개 프로그램 예산의 65%(약 75억유로)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고 공익신탁과 법적 계약 체결을 금지할 것을 제안
- 이후 이사회가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¹⁰⁾



IMF

■ IMF 제1부총재 한국 성평등 포럼 발언(2022. 9. 27.)¹¹⁾

- 2022년 9월 27~28일에 열린 한국 성평등 포럼

8) EU 집행위, "EU budget: Commission proposes measures to the Council under the conditionality regulation," 2022. 9. 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623, 검색일자: 2022. 9. 20.; _____, "Remarks by Commissioner Hahn at the College Read-out on the protection of the EU budget in Hungary," 2022. 9. 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2_5583, 검색일자: 2022. 9. 20.

9) 지역 간 발전 수준의 격차를 줄여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력, 친환경, 연결성, 포용성, 지역개발 분야 등에 투자하는 정책

10) 이에 앞서 의회는 집행위가 조건부 규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EU 의회, "MEPs: Hungary can no longer be considered a full democracy," 2022. 9. 15.,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909IPR40137/meps-hungary-can-no-longer-be-considered-a-full-democracy>, 검색일자: 2022. 9. 27.

11) Gender Equality Boosts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9/27/sp092722-ggopinath-kgef-gender-korea>, 검색일자: 2022. 9. 28.



에서 기타 고피너스 IMF 제1부총재는 “성평등은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촉진한다”는 주제로 발언

-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 지난 10년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소득과 노동 참여율 모두에서 노동시장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국가
 - 2020년 기준 32%였던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거의 20%p 높음
 - 2017년 기준 여성 관리직 비율도 OECD 회원국 평균 32%에 비해 16%로 낮은 수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1년에서 2021년까지 53%에서 60%로 증가했지만, OECD 회원국 간의 성별 노동참가율 격차가 15%p인 것에 비해 한국은 18%p로 높은 수준
- IMF 분석에 따르면 2035년까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수준까지 오르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여성 노동력 참여를 늘리기 위한 IMF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근로 유지를 위해 보육 서비스의 품질과 경제

성 강화, 공동 육아휴직 촉진, 근로시간 단축과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를 포함한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권장

- 여성의 필요에 맞춘 보다 광범위한 분야와 직위에 맞게 조정된 경력 전환 지원 및 기술 향상 훈련이 필요
- 부소득자(second earner)에 대한 중립적인 세제 혜택 및 기업의 여성 고용 및 리더십에 대한 기준 도입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 장려
- 또한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및 경력 재취업을 위한 추가 조치와 분야별 훈련, 보육의 질적 향상, 조기 학령기 공교육 등의 지원 필요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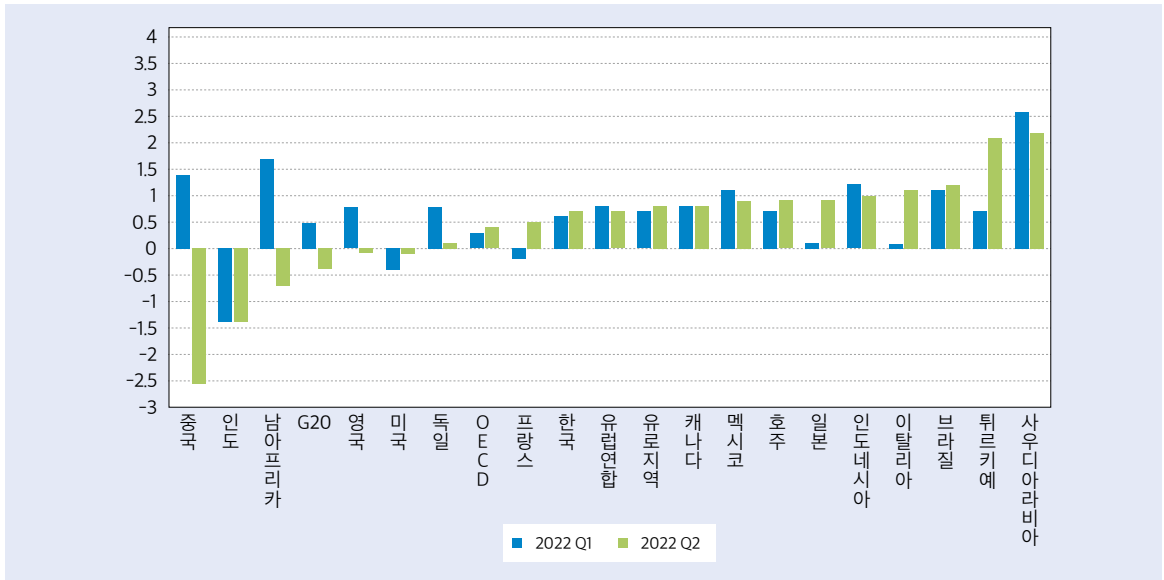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2. 8. 29.)^{12), 13)}
 - 2022년 2분기 OECD 회원국들은 평균 0.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은 전 분기 대비 2022년 2분기 성장세 강화
 - 영국, 독일 등은 전 분기 대비 2022년 2분기 성장세 둔화
 - 2022년 2분기 이탈리아와 일본의 실질 GDP가

12) OECD, “G20 GDP Growth - Second quarter of 2022,” 2022. 9. 13., <https://www.oecd.org/sdd/na/g20-gdp-growth-Q2-2022.pdf>, 검색일자: 2022. 9. 26.

13) OECD, “GDP Growth - Second quarter of 2022,” 2022. 8. 29., <https://www.oecd.org/newsroom/gdp-growth-second-quarter-2022-oecd.htm>, 검색일자: 2022. 9. 21.

[그림 1] 2022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출처: OECD, "G20 GDP Growth - the second quarter of 2022," 2022. 9. 13.

2019년 4분기 수준을 상회하면서 모든 G7 국가의 실질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 2022년 OECD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22: Building Back More Inclusive Labour Markets) 발표(2022. 9. 9.)^{14), 15)}

- OECD 회원국들의 노동시장 현황,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와 소득지원 정책, 노동시장의 수요독점(monopsony)¹⁶⁾과 집중

(concentration), 임금 불평등에서 기업 성과와 임금 결정 관행의 역할(The role of firm performance and wage-setting practices in wage inequality)¹⁷⁾ 등을 분석

- (현황 및 전망) OECD 국가들의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회복세 약화
 - 2022년 7월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14)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Building Back More Inclusive Labour Markets," 2022. 9. 9., <https://www.oecd-ilibrary.org/sites/1bb305a6-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1bb305a6-en>, 검색일자: 2022. 9. 21.

15) 노동시장의 현황,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와 소득지원 정책,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설계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요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 참고

16) 고용주가 일방적인 임금 결정 권한이 있어 고용과 임금이 비효율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낮은 임금뿐 아니라 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의미

17) 전체 임금 불평등의 1/3은 근로자의 자격 수준이나 성과의 차이보다 기업 간의 임금 결정 관행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



4.9%로 2019년 12월 5.3% 대비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실업률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초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특히 요식업 및 숙박업 등 일부 저임금 부문) 현상이 나타났으며, 2022년 명목 임금상승률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
- 향후 OECD 국가들의 고용 성장은 둔화되고 2022년 및 2023년 말 실업률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와 소득지원 정책)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일자리 및 소득지원 정책 분석

- (일자리 유지 제도)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당시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단시간 근로 또는 관련 임금보조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2021년 11월 기준 13개 국가는 일자리 유지 관련 조치를 종료
- (실업수당)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팬데믹 대응 조치로 실업수당을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소득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
- (유급 병가) 코로나19 초기단계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근로자의 건강, 직업 및 소득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2021년 공공고용서

비스¹⁸⁾(OECD 국가의 약 80%)와 훈련 및 고용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¹⁹⁾ 조치(OECD 국가의 60%)에 대한 예산 증가

-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 및 사회 정책) 여성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공식 보육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가정의 무급 노동 부담 증가, 가정폭력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조치
 - (청소년을 위한 정책) 코로나19 기간에 졸업한 청년, 공공고용 또는 사회지원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실업자 또는 비활동 청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학생 등에 대한 추가적 관심과 지원 필요
 - (일선 근로자를 위한 정책) 코로나19 위기에 도 불구하고 건강관리, 장기요양, 필수 소매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급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일선 일자리에 대한 대규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
 - (소수 인종 및 민족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한 OECD 국가 중 50%는 팬데믹 시기에 소수 인종 및 민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또는 사회 정책 시행
- (2022년 이후 정책권고) 강력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LMP) 설계 필요
- 구직, 실직 및 실직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투자 등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

18) Public Employment Services; PES

19)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

- 공공 고용서비스 디지털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디지털 서비스 접근에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한 조치 등 노동시장 포용 개선 정책 필요
- 기술향상 지원, 디지털화 및 녹색전환 정책 제고가 요구됨

■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22) 발표(2022. 9. 19.)^{20), 21)}

- (경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빠른 회복세

- 를 시현했으며 수출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은 2022년 2.8%, 2023년 2.2%로 전망
- 소비의 점진적인 회복,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기업투자 계획 등 견조한 성장세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2년 5.2%, 2023년 3.9%로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의 하방위험 존재

<표 1> 한국경제 주요 거시지표 전망

구분	2021	2022		2023	
		2022년 6월 OECD EO	2022년 9월 한국경제보고서	2022년 6월 OECD EO	2022년 9월 한국경제보고서
GDP 성장률 (전년 대비 %)	4.1	2.7	2.8	2.5	2.2
민간소비 (전년 대비 %)	3.7	2.3	3.7	2.9	2.4
총고정자본형성 (전년 대비 %)	2.8	0.5	-1.5	2.8	2.8
수출 (전년 대비 %)	10.8	9.2	4.7	4.1	3.2
실업률 (%)	3.6	3.2	2.9	3.1	2.6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	2.5	4.8	5.2	3.8	3.9
경상수지 (GDP 대비 %)	4.9	5.3	4.3	5.0	4.0
재정수지 (GDP 대비 %)	-0.8	-	-0.1	-	0.6
일반정부 채무 (GDP 대비 %)	46.4	49.9	46.8	51.1	46.1

출처: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Table 1 재구성, 2022. 9. 19.

20)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2022. 9. 19.,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surveys-korea-2022_20bf3d6e-en, 검색일자: 2022. 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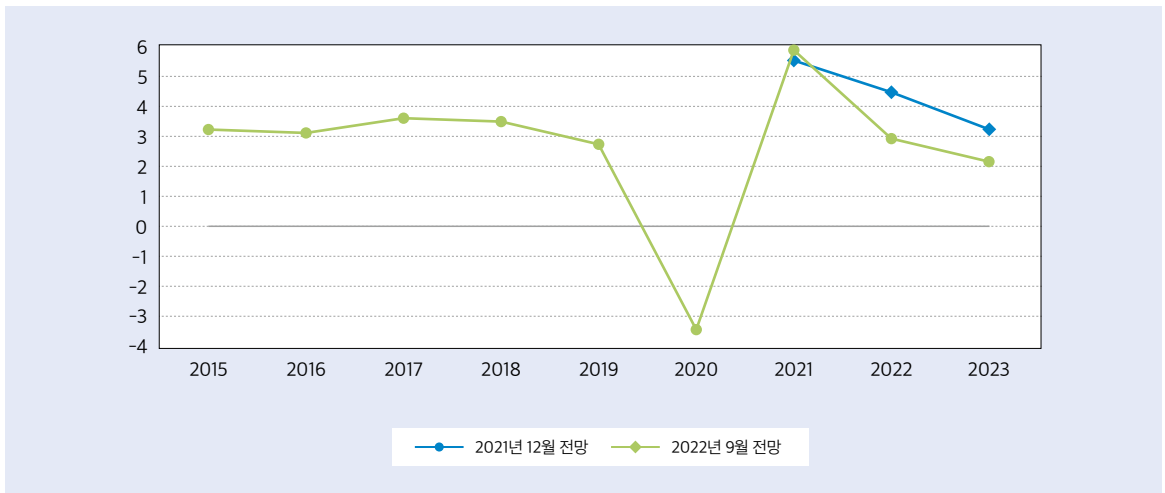
21)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22. 9. 1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1095&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2. 9. 24.



- (재정정책)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현재 타 국가에 비해 낮으나 향후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빠른 증가가 예상되므로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지 않는 재정지원이 요구되며,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 필요
 -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고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높이 평가
- (통화정책)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관리, 완만한 명목임금 인상 수준 유지 등을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
- (정책권고) 경제회복의 탄력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증대 정책 권고
 - (경제회복의 탄력성 제고) 점진적인 재정건전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새로운 재정 준칙 채택 및 준수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배출허용총량 NDC 목표와 일치,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 필요 등
 -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문제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개선 필요 등
 - (사회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추진, 노인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개혁 등
 - (청년고용 증대)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 추진, 상품 및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청년고용기반 마련 등

[그림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세계경제성장 전망 비교

(단위: %)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2: Paying the Price of War, p. 11, Figure 7 재구성, 2022. 9. 26.

■ OECD 중간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발표(2022. 9. 26.)^{22), 23), 24)}

- (경제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에너지와 식품의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되어 세계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은 2022년 3.0%, 2023년 2.2%로 전망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주요국의 통화긴축, 실질가처분소득의 잠식, 낮은 소비자 신뢰,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은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대비 0.6%p 하향 조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 12월 전망과 비교해서는 2022년과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이 각각 1.5%p, 1.0%p 하향 조정
- OECD 국가의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유로지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5%, 0.3%로 예상되며,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전망
 - 미국과 유럽국가 대비 다소 강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일본, 한국, 호주역시 대

<표 2> 실질 GDP 성장을 전망

(단위: %, %p)

구분	2021	2022 전망		2023 전망	
		중간경제 전망	'22.6월 전망치 대비 차이	중간경제 전망	'22.6월 전망치 대비 차이
세계	5.8	3.0	0.0	2.2	-0.6
G20 ¹⁾	6.2	2.8	-0.1	2.2	-0.6
호주	4.9	4.1	-0.1	2.0	-0.5
캐나다	4.5	3.4	-0.4	1.5	-1.1
유로지역	5.2	3.1	0.5	0.3	-1.3
독일	2.6	1.2	-0.7	-0.7	2.4
프랑스	6.8	2.6	0.2	0.6	-0.8
이탈리아	6.6	3.4	0.9	0.4	-0.8
스페인 ²⁾	5.5	4.4	0.3	1.5	-0.7
일본	1.7	1.6	-0.1	1.4	-0.4
한국	4.1	2.8	0.1	2.2	-0.3
멕시코	4.8	2.1	0.2	1.5	-0.6
튀르키예	11.0	5.4	1.7	3.0	0.0
영국	7.4	3.4	-0.2	0.0	0.0
미국	5.7	1.5	-1.0	0.5	-0.7
아르헨티나	10.4	3.6	0.0	0.4	-1.5
브라질	4.9	2.5	1.9	0.8	-0.4
중국	8.1	3.2	-1.2	4.7	-0.2
인도 ³⁾	8.7	6.9	0.0	5.7	-0.5
인도네시아	3.7	5.0	0.3	4.8	0.1
러시아	4.7	-5.5	4.5	-4.5	-0.4
사우디아라비아	3.4	9.9	2.1	6.0	-3.0
남아프리카	4.9	1.7	-0.1	1.1	-0.2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나 G20 집계 시 자체적으로 회원인 국가만 포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청국

3) 인도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2: Paying the Price of War*, p. 4, Table 1, 2022. 9. 26.

22)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2: Paying the Price of War*, 2022. 9. 26.,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2/issue-1_ae8c39ec-en, 검색일자: 2022. 9. 27.

23)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는 연 2회 OECD Economic Outlook(통상 5월, 11월 발표)의 중간시점(3월 및 9월)에 발표하는 G20 국가 중심의 경제 전망보고서

24) 본 보고서는 개요 및 주요 내용의 요약본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 원문 보고서 참고



외수요의 약세로 향후 성장 모멘텀이 약화 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8%, 2.2%로 전망하여, 기존 대비 2022년 0.1%p 상향, 2023년 0.3%p 하향 조정

- (물가전망) G20 국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8.2%, 2023년 6.6%(기존 대비 0.6%p, 0.3%p 상향 조정)로 전망되며, G20 선진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6.2%에서 2023년 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긴축 통화 정책과 공급능력 향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 전망

- (위험요인)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 외 공급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추운 겨울 영향으로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경제성장률과 물가전망은 악화될 가능성

- (정책권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긴축,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 기후변화 및 식량 안보에 대한 대응 등을 권고

-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통화 긴축을 제고해야 하며, 주요 선진국의 추가 금리인상 정책이 필요하나 과도한 긴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취약계층의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선별적 재정정책 필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 기후 등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

<표 3>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headline inflation) 전망

(단위: %, %p)

구분	2021	2022 전망		2023 전망	
		중간경제 전망	'22.6월 전망치 대비 차이	중간경제 전망	'22.6월 전망치 대비 차이
G20 ¹⁾	3.8	8.2	0.6	6.6	0.3
호주	2.8	6.1	0.9	4.4	0.3
캐나다	3.4	6.9	0.9	4.5	0.6
유로지역	2.6	8.1	1.1	6.2	1.6
독일	3.2	8.4	1.2	7.5	2.8
프랑스	2.1	5.9	0.7	5.8	1.3
이탈리아	1.9	7.8	1.5	4.7	0.9
스페인 ²⁾	3.0	9.1	1.0	5.0	0.2
일본	-0.2	2.2	0.3	2.0	0.1
한국	2.5	5.2	0.4	3.9	0.1
멕시코	5.7	7.9	1.0	4.9	0.5
튀르키예	19.6	71.0	-1.0	40.8	1.9
영국	2.6	8.8	0.0	5.9	-1.5
미국	3.9	6.2	0.3	3.4	-0.1
아르헨티나	50.9	92.0	31.9	83.0	32.4
브라질	8.3	10.8	1.1	6.6	1.3
중국	0.8	2.2	0.2	3.1	0.1
인도 ³⁾	5.5	6.7	0.0	5.9	-0.6
인도네시아	1.6	4.1	0.3	3.9	0.1
러시아	6.7	13.9	-2.3	6.8	-6.5
사우디아라비아	3.1	2.5	0.3	3.2	0.5
남아프리카	4.6	6.7	0.7	5.9	0.1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나 G20 집계 시 자체적으로 회원인 국가만 포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청국

3) 인도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2: Paying the Price of War, p. 4, Table 1, 2022. 9. 26.



미국

[예산·결산 등]

■ FY2023 임시 예산안(H.R. 6683) 입법 발효(2022.

10. 3.)²⁵⁾

- (배경) FY2022 만료일(2022. 9. 30.)이 도래하였으나, FY2023의 총 12개 분야 세출예산 모두 통과되지 않은 상황²⁶⁾
 - 의회 하원은 지난 7월 20일에 6개 분야에 대한 부분세출예산(minibus)을 가결하였으며, 이후 동 세출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계류 중인 상태
- (규모 및 만료시한) 임시 예산법(P.L. 117-180)은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²⁷⁾로 진행되며, 만료 시한은 2022년 12월 16일로 규정
 - 동 임시 세출예산법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정세출예산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23억 5천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사 훈련, 무기, 장비 및 자금 지원 등을 계획

기타

- 의회예산처(CBO), FY2023 대통령 예산안 분석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23 Budget) 보고서²⁸⁾ 발표(2022. 9. 13.)²⁹⁾
 - (기준선(5월) 수치와의 비교)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2023~2032년 누적 재정적자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수치 대비 2.6조달러 낮은

13.1조달러(GDP 대비 평균 4.2%) 전망

- (수입) 같은 기간 동안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누적 재정수입은 지난 5월 수치 대비 1.7조달러 상승한 58.2조달러(GDP 대비 평균 18.7%) 전망
 - (주요 상승 요인) 향후 10년간 법인세율 인상(21→28%) 정책안으로 인한 증가분(8,730억 달러) 및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정책(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증가분(1,700억 달러) 등
- (지출)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누적 재정 지출은 지난 5월 수치 대비 9,170억달러 감소한 71.3조달러(GDP 대비 평균 22.9%) 전망
 - (주요 증가 요인) 연방 보건 지출 증가, 교육 지출 증가, 소득 보장 지출 등의 의무지출 차이(+1조 150억달러) 등
 - (주요 감소 요인) 국방과 비국방 분야 지출 절감분(-1조 6,670억달러) 및 이자 지출의 절감분(-2,650억달러)으로 구성
- (예산안(3월) 수치와의 비교)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2023~2032년 누적 재정적자는 당초 정부가 발표(3. 28.)한 규모 대비 1.3조달러 하향 조정
 - * 정부안과 CBO의 재정적자 전망 규모는 의무지출에 대한 전망 규모 차이가 대부분을 차지

25) 의회 하원 세출예산위원회, "House Passes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Ukrain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3," 2022. 9. 30.,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continuing-appropriations-and-ukraine-supplemental-appropriation>, 검색일자: 2022. 10. 4.

26) CRFB, "Q&A: Everything You Should Know About Government Shutdowns," 2022. 9. 23., <https://www.crfb.org/papers/qa-everything-you-should-know-about-government-shutdowns>, 검색일자: 2022. 9. 23.

27) FY2022 정규 세출예산법의 규모는 약 1.5조달러 규모이며, 동 법은 4차례의 임시예산을 거친 후 2022년 3월 15일 통과

28) 대통령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예산안에서 공개된 정책들에 대한 CBO의 자체 분석 보고서

29)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23 Budget," 2022. 9. 13., <https://www.cbo.gov/publication/58417>, 검색일자: 2022. 9. 23.



<표 4> 미국 예산안 전망 비교(정부 vs CBO)

재정 전망		실적				추정 2022	전망						
		2008	2009	2020	2021		2023	2024	2025	...	2031	2032	2023~ 2032
예산 총량(십억달러)													
수입	정부	2,524	2,105	3,421	4,047	4,437	4,638	4,874	5,076	...	6,795	7,083	58,264
	CBO					4,836	4,988	5,089	5,176	...	6,593	6,855	58,213
지출	정부	2,983	3,518	6,550	6,822	5,852	5,792	6,075	6,406	...	8,477	8,867	72,685
	CBO					5,872	5,895	6,010	6,320	...	8,246	8,613	71,321
재정 적자	정부	459	1,414	3,129	2,775	1,415	1,154	1,201	1,330	...	1,682	1,784	14,421
	CBO					1,036	908	921	1,145	...	1,653	1,758	13,108
국가 채무 ¹⁾	정부	5,803	7,544	21,017	22,284	24,836	26,033	27,271	28,644	...	37,727	39,542	-
	CBO					24,173	25,117	26,007	27,179	...	35,824	37,593	-
예산 총량(GDP 대비 %)													
수입	정부	17.7	14.8	16.3	18.1	18.3	18.1	18.3	18.3	...	19.1	19.1	18.8
	CBO					19.6	19.0	18.6	18.3	...	18.7	18.7	18.7
지출	정부	21.0	24.7	31.2	30.5	24.1	22.7	22.8	23.1	...	23.9	23.9	23.4
	CBO					23.8	22.5	22.0	22.4	...	23.3	23.5	22.9
재정 적자	정부	3.2	9.9	14.9	12.4	5.8	4.5	4.5	4.8	...	4.7	4.8	4.7
	CBO					4.2	3.5	3.4	4.0	...	4.7	4.8	4.2
국가 채무 ¹⁾	정부	40.8	53.0	100.1	99.6	102.4	101.8	102.2	103.1	...	106.3	106.7	-
	CBO					97.9	95.7	95.3	96.1	...	101.4	102.5	-

주: 1) 국가채무는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 규모를 의미

출처: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23 Budget," 2022. 9. 13., p. 4, Table 2

OMB, "FY2023 President's Budget," 2022. 3. 28., p. 119, Table S-1

- (수입) 같은 기간 동안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누적 재정수입은 정부가 발표한 규모보다 510억달러 하향 조정
- (지출)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누적 재정 지출은 정부 발표 대비 1.4조달러 하향 조정
- (연방채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FY2023 연방

정부 채무는 GDP 대비 102%로 전망되나, CBO 분석에 의하면, 95% 후반대로 감소할 전망

- 미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대출 완화 정책 발표 (2022. 8. 24.)³⁰⁾
- (채무 경감 및 요건) 저소득 및 중산층에 속하는

30) 백악관,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Student Loan Relief for Borrowers Who Need It Most," 2022. 8. 2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24/fact-sheet-president-biden-announces-student-loan-relief-for-borrowers-who-need-it-most/>, 검색일자: 2022. 9. 24.

학자금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 면제 계획(소득 상한 요건: 개인소득 규모 12만 5천달러 미만, 부부합산 25만달러)

- 펠그랜트³¹⁾(pell grant) 장학금 수여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의 일환으로 펠그랜트 수여자는 최대 2만달러, 미수여자는 최대 1만달러 면제 조치 계획

- 독립하지 않은 학생(dependent student)의 경우, 학생 개인의 수입이 아닌 부모의 수입을 근거로 면제(또는 완화) 규모 책정

- (기타 세부 계획) 채무상환 방식 변경 및 원활한 정책 전환을 위해 연말(2022. 12. 31.)까지 상환 유보 등 계획

- 소득 기반을 근거로 책정되는 채무상환(IDR, Income-Driven Repayment) 방식을 재구성하여 월 상환 규모 한도 하향 조정(현 소득의 10→5%)

- 연방 빈곤선 225% 미만자들은 월 상환금을 내지 않도록 할 계획

- 학자금 원금 1만 2천달러 이하 채무자들은 10년 동안(현행 20년) 꾸준히 갚을 경우 남은 원금 면제

- (재정 영향) 초당파 비영리 재정전문기관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학자금 완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비용은 향후 10년간 4,400억~6,000억달러 전망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 9. 7.)³²⁾

- (전반적인 경제활동) 7월 초부터 경제활동은 큰 변화 없이 유지

-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식품 및 필수 품목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소폭 증가

- 이전 베이지북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경제성장 전망은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부정적

- (노동시장) 고용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했고, 임금도 모든 지역에서 증가

- 제조업, 건설업,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노동가용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은 어려움

- (물가)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승률은 어느 정도 완화

- 음식, 임대료, 공공시설 등에서 상당한 가격 인상이 있었고, 제조 및 건설비용 상승이 있었지만, 연료 가격이 감소해 화물 운송료 부담이 완화

- 대부분 지역에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2. 9. 13.)³³⁾

-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

31)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상 학비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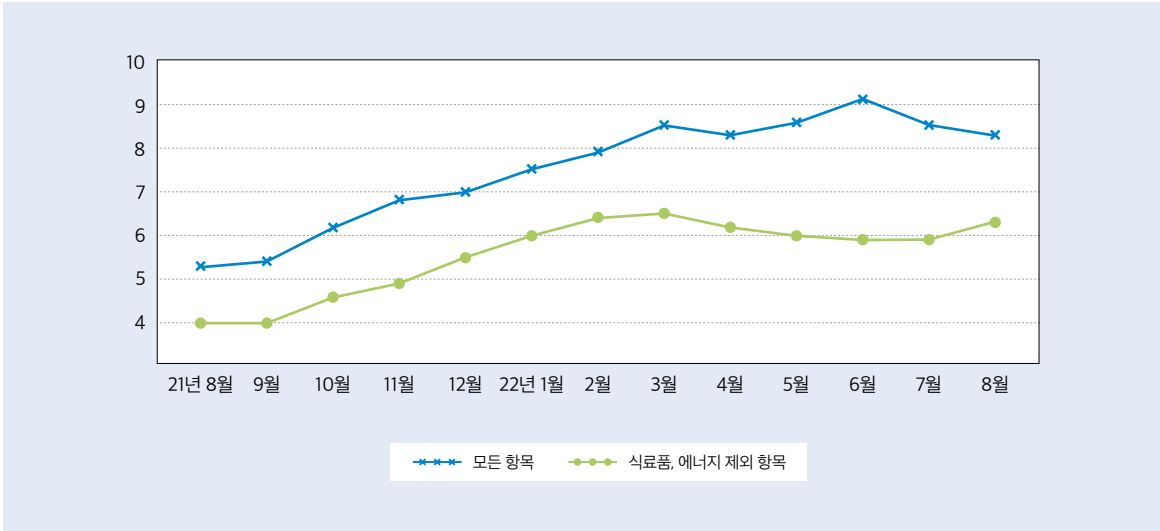
32) Fed, Beige Book - September, 2022., 2022. 9. 7.,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9.htm>, 검색일자: 2022. 9. 7.

33)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August 2022, 2022. 9. 1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 9. 19.; 백악관, Statement of President Joe Biden on Consumer Price Index in September, 2022. 9. 1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9/13/statement-of-president-joe-biden-on-consumer-price-index-in-september/>, 검색일자: 2022. 9. 19.



[그림 3] 전년 동월비 물가상승률(CPI-U) 변화

(단위: %)



출처: BLS, *Consumer Price Index-August 2022*, p. 2, Chart 2 재구성, 2021. 9. 13.

- 이 전년 동월 대비 8.3%로 집계
-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전년 동월 대비 6.3%, 전월 대비 0.6%로 7월(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3%)에 비해 소폭 상승
- 유가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상승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상 및 경제전망 공개(2022. 9. 21.)³⁴⁾

- FOMC 참석자(participants)³⁵⁾들은 9월 20~21일 개최된 FOMC 회의³⁶⁾에서 최근 지표들이 지출과 생산의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언급
- 위원(member)³⁷⁾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7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경제 상황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2.25~2.50% 수준에서 3.00~3.2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34)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 9. 21.,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921a.htm>, 검색일자: 2022. 9. 23.; _____, *September 21, 2022: FOMC Projections materials*, accessible version, 2022. 9. 2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projtabl20220615.htm>, 검색일자: 2022. 9. 23.

35)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36) 페이지북 9월호를 참고

37)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

■ 미 의회예산처(CBO), 2019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소득 수준별 가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2022. 9. 22.)³⁸⁾

- CBO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각 소득 분위별 평균 소비 묶음을 사용해 물가 변동이 각 분위 평균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 결과, 소득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상이하게 관찰
 - 세후 소득 기준, 2019년 대비 2022년에 모든 소득 분위에서 세후 소득 대비 2019년 소비 묶음 구매 비중이 낮아져, 소득이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하지만, 2021년 대비 2022년의 세후 소득 대비 2019년 소비 묶음 구매 비중의 경우 모든 분위에서 비중이 증가
 - 이는 팬데믹 관련 단기 재정 정책의 종료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
- 세전 소득 기준 인플레이션 효과는 세후소득 인플레이션 효과와 다른 모습
 - 세전 소득 기준, 2019년 대비 2022년에 1분위

에서 세전 소득 대비 2019년 소비 묶음 구매 비중이 증가

- 이는 1분위 소비 묶음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분위의 소비 묶음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
- 반면, 2021년 대비 2022년의 세전 소득 대비 2019년 소비 묶음 구매 비중을 분석한 경우, 1분위와 5분위에서 비중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1분위와 5분위 소득이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³⁹⁾2023 예산 개산⁴⁰⁾요구⁴¹⁾ 및 요망액⁴²⁾ 발표(2022. 9. 5.)⁴³⁾

- FY2023 일반회계 요구액은 105조 6,987억엔, 요망액을 합한 금액은 110조 484억엔으로 FY2022 당초 예산 102조 5,964억엔 대비 7.3% 증가⁴⁴⁾

38) CBO, "How Inflation Has Affected Households at Different Income Levels Since 2019," 2022. 9. 22., <https://www.cbo.gov/publication/58426>, 검색일자: 2022. 9. 23.

39) Fiscal Year 회계연도. 일본 예산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산정

40) 어렵잡아 한 계산을 의미

41) 국가의 예산편성에 앞서 각 부성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개략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문서(개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재무성에 제출하는 것을 개산요구라 하고, 올해 7월 말 재무성이 예산 개산요구 기준을 발표하였고, 각 부성이 8월 말까지 예산 개산요구 금액을 제출

42) 일반회계 대상의 개산요구 시 요구액은 각 성마다 전년도 예산액의 90% 상한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는 금액이고, 요망액은 요구액 30% 내에서 '중요 정책 추진범위'에 관련된 경우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

43) 재무성, 令和5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fy2022/sy040905.pdf>, 검색일자: 2022. 9. 7.

44) FY2022 당초 예산액에는 코로나 대책 예비비 5조엔 포함



- 올해 요구·요망액은 전년 111조 6,559억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9년 연속 요구·요망액이 100조엔을 초과
- 국채비는 전년 24조 3,393억엔 대비 10.9% 증가한 26조 9,886억엔
- 재정투·융자 요구액은 14조 1,580억엔으로 전년 당초 예산액 18조 8,855억엔 대비 4조 6,275억엔 감소

■ 재무성, 2022년 일반회계 ‘코로나19 및 원유 등 물가상승 대책 예비비’ 집행 상황 및 사용 결정 발표(2022. 9. 20.)⁴⁵⁾

- 코로나19 및 원유 등 물가상승 대책 예비비는 1차 추경 포함 총 6조 1,200억엔이 편성되었고, 이 중 4조 8,589억엔이 집행되고 예비비 잔액은 1조 2,611억엔

- 2021년 12월 편성된 FY2022 예산에서 ‘코로나19 예비비’ 5조엔, ’22년 5월 31일 1차 추경 예산으로 1조 1,200억엔이 추가 편성되어 예비비는 기존 ‘코로나19 대책 예비비’에서 ‘코로나19 및 원유 등 물가상승 대책 예비비’로 집행 범위 확대

- 예비비는 연료유 가격 급변 완화 사업에 1조 2,959억엔(26.7%)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결정되었고,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금 8,540억엔(17.6%), 코로나19 긴급 포괄 지원금 8,266억엔(17%) 순으로 금액이 높음(<표 5> 참조)

<표 5> 2022년 일반회계 코로나19 감염병 및 물가상승 대책 예비비 사용실적

(단위: 억엔)

결정일	사업	금액	
2022년 예산액		50,000	
2022년 1차 추경		11,200	
4월 28일	코로나19 및 원유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	90	
	중소기업 등 사업 재구축 촉진 사업	1,000	
	저소득 육아 가구에 대한 육아 가구 생활 지원 특별 급여	2,043	
	코로나19 감염병 안전망 강화 교부금	11	
	고독·고립에 관한 각종 지원책을 전달하기 위한 체제 강화 등	10	
	고독·고립대책 관련 NPO 등 지원	7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	8,000	
	대학생 등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접종 촉진 사업	10	
	7월 29일	전기 이용 효율화 촉진 대책 사업	1,784
		비료 가격 급등 대책 사업	788
9월 20일	사료 가격 상승 긴급 대책 사업	504	
	연료유 가격의 격변 완화 사업	12,959	
	택시 LPG가스 가격 격변 완화 사업	7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	4,000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	8,540	
	코로나19 감염병 긴급 포괄 지원 교부금	8,266	
	자위대 연료비(항공기·함선)	507	
예비비 잔액		12,600	

출처: 재무성, 令和4年度一般会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及び原油価格・物価高騰対策予備費使用実績, 2022. 9. 20,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y220920.pdf, 검색일자: 2022. 9. 21.

[기타]

■ 일본은행,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발표(2022. 9. 22.)⁴⁶⁾

- (경제상황)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하에서 코로

45) 재무성, 令和4年度一般会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及び原油価格・物価高騰対策予備費使用実績, 2022. 9. 20,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y220920.pdf, 검색일자: 2022. 9. 21.

46) 일본은행,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2022. 9. 22., https://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22/k220922a.pdf, 검색일자: 2022. 9. 26.

나19 감염병 대응의 지속과 경제활동 재개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은 약하지만 완만하게 개선되고, 개인소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물가)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에너지, 식료품, 내구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2%대 후반에 있으며, 기대 물가상승률이 높아짐
- (금리)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2%대의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위해 단기금리*는 -0.1%의 마이너스 금리, 장기금리**는 0%로 유지하고 장기 국채를 상환없이 매입하는 금융완화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

* 중앙은행 당좌예금 잔고에 적용하는 금리

** 10년물 국채금리



독일

■ 독일 연정위원회, 650억유로 규모의 제3차 구호 패키지 발표(2022. 9. 3.)^{47), 48), 49), 50)}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650억유로 규모의 3차 대책을 발표
- 연방 정부의 구호 패키지는 1·2차까지 모두

합쳐서 약 950억유로의 규모

- (횡재세 도입) 풍력, 태양열, 석탄,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 회사들의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원가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하여 이윤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
- (전력요금 제동) 가정 및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기본 사용량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할인 혹은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
- (탄소세 인상 계획 연기) 2023년 1월 예정되었던 탄소세 인상⁵¹⁾을 1년 연기
- (연금수급자 및 학생에 대한 일시 보조금) 연금수급자(300유로) 및 학생·연수생(200유로)에게 12월 1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일시 보조금을 지원
- (주거급여 개혁 및 2차 난방비 지원)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1인 기준 415유로의 추가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⁵²⁾
- 2023년 1월부터 주거급여 개혁으로 수급자가 200만명(현재 약 60만명)까지 증가할 전망
- (국민수당 도입) 국민수당(실업급여 II와 사회수당 대체)은 2023년 1월부터 도입되며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현행보다 53유로 증가한 월 502유로를 지급할 계획

47) 연방 재무부, "Schnelle und spürbare Entlastungen in Milliardenhöhe," 2022. 9. 1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schnelle-spuebare-entlastungen.html>, 검색일자: 2022. 9. 16.

48) 연방 재무부, "Wichtige Unterstützung: das Entlastungspaket III," 2022. 9. 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2/09/Inhalte/Kapitel-2b-Schlaglicht/2b-drittes-entlastungspaket.html>, 검색일자: 2022. 9. 26.

49) 연방 재무부, "Ergebnis des Koalitionsausschusses vom 3. September 2022," 2022. 9. 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chlaglichter/Entlastungen/ergebnispapier-des-koalitionsausschusses.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2. 9. 16.

50) 연방 정부, "Deutschland steht zusammen," 2022. 9. 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entlastungen-im-ueberblick>, 검색일자: 2022. 9. 16.

51) 2021년에 통당 25유로로 도입되어 2022년에는 30유로로 인상되었고, 2025년까지 매년 5유로씩 인상 예정이었음

52) 1인 415유로, 2인 40유로가 지원되고 추가 1인당 100유로씩 증가



- (미디잡 소득 기준 변경) 미디잡(midijob)⁵³⁾의 소득 기준(현재 450~1,300유로)이 2022년 10월부터 450~1,600유로, 2023년 1월부터는 450~2,000유로로 인상될 예정
-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추가 조세 부담(Kalte Progression)을 막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⁵⁴⁾
- (아동수당 인상) 아동수당(Kindergeld)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월 237유로 지원
- 아동수당 상한액을 2023년부터 현행 월 229유로에서 월 250유로로 인상
- (최대 3천유로 면제) 회사가 직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최대 3천유로까지 면제
- (기업 지원) 에너지 집약 기업 대상 에너지 효율 및 대체 에너지 투자 관련 신규 지원 사업 실시, 기존 지원 프로그램(KfW 특별 보증 프로그램, 에너지 비용 절감프로그램 등)은 2022년 말까지 연장
- (전기 및 에너지 세금 감면(Spitzenausgleich))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되어 9천개의 기업에 약 17억유로 규모 지원
- (새로운 대중교통 티켓) 9유로 티켓의 후속으로 독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49~69유로 정도의 대중교통 이용권 도입 계획
- (단축근로지원금 혜택) 2022년 9월까지였던 단

축근로지원금 혜택을 무기한 연장

- (외식업 판매세 인하) 외식업에 대한 판매세(Umsatzsteuer)를 7%로 인하
- (에너지 공급에 있어 소비자 보호)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기 및 가스가 차단되는 것을 방지
-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글로벌 최저법인세(15%) 도입을 조기 시행하여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입으로 이어질 전망
- (세계 식량 안보 기금 지원) 2022년 잔여예산으로 식량 안보를 위한 기금에 최대 10억유로를 추가 지원할 계획
- (연금기여금 전액 공제) 연금기여금의 세금 감면 제도를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실시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
- (가스 판매세 인하) 천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19%에서 7%로 인하
- (재택근무 소득공제 연장) 재택근무 소득공제가 무기한 연장되며 2023년부터는 연간 최대 1,000유로(현행 600유로)까지 청구 가능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FY2023 예산법안(Projet de Loi

53)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부담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증가

54)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8월호 “연방 재무부, 인플레이션 보상법 초안 발표(2022. 8. 10.)” 참고

de Finances pour 2023: PLF 2023) 발표(2022. 9. 26.)^{55), 56)}

- (경제전망)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1.0%를 기록할 전망
 - 긴축적 통화정책과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

으로 경제 회복이 억제될 가능성

-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5.3%, 2023년 4.2%로 전망

- (재정전망) 경제회복 부진에도 2023년 재정전망은 2022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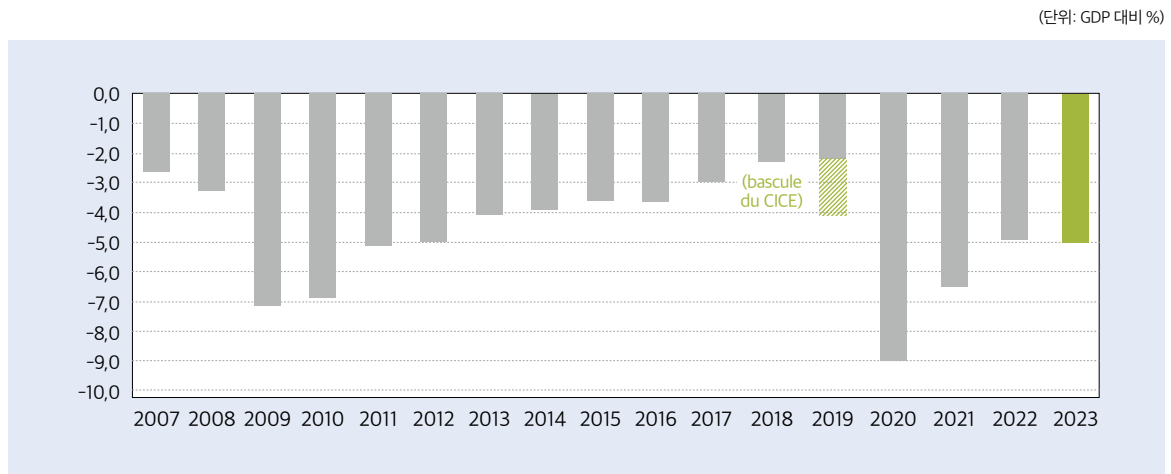
<표 6> 2023년 예산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정수지(Déficit public)	-3.1	-9.0	-6.5	-5.0	-5.0
재정지출 증가율(Croissance volume de la dépense publique, %)	1.9	6.7	2.6	-1.1	-1.5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3.8	44.4	44.3	45.2	44.7
재정지출(Taux de dépenses publiques(hors CI))	53.8	60.7	58.4	57.6	56.6
공공채무(Dette publique)	97.4	115.0	112.8	111.5	111.2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F 2023

[그림 4] 프랑스 재정수지 추이



주: 2019년 재정적자는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를 일반감면으로 전환하는 특별조치를 제외한 경우 2.2%, 포함한 경우 3.1% 전망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F 2023

55)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2022. 9. 26.,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3-plf>, 검색일자: 2022. 9. 26.
56) 프랑스 정부, “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26 septembre 2022,” 2022. 9. 26., <https://www.gouvernement.fr/conseil-des-ministres/compte-rendu-du-conseil-des-ministres-26-09-2022#e924610d-b3d3-4cde-96bf-c21fa06807fa-3>, 검색일자: 2022. 9. 27.



- (재정수지)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전례 없는 수준인 9.0%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년과 동일한 5.0%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재정적자 규모는 2022년과 비교해 140억유로 감소한 1,580억유로로 전망
- (재정지출)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60.7%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58.4%,

2022년 57.6%, 2023년 56.6%로 계속 감소 추세

- (공공채무)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1년 112.8%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111.2%를 기록할 전망
- (예산안 주요 내용) 2023년 예산법안의 4가지 주요 목표
 - (구매력 강화)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받

<표 7> 2023년 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2 본예산	2022 수정예산	2022 전망	2023 예산법안	2022~2023 차이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61.5	514.1	513.4	500.2	38.7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91.9	444.0	444.6	431.9	40.0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9.6	70.2	68.8	68.3	-1.3
지방정부보조금 (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3.2	43.8	43.8	43.7	0.5
EU보조금 (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6.4	26.4	24.9	24.6	-1.8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07.8	335.3	340.1	345.1	37.4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287.6	311.6	315.1	314.3	26.7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82.4	85.3	86.8	86.9	4.5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0.0	56.8	59.0	55.2	15.2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8.2	18.1	18.0	16.8	-1.4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8.4	101.2	102.1	97.4	-1.0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48.6	50.2	49.3	58.0	9.3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0.2	23.7	25.0	30.8	10.7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0.1	0.4	0.8	-3.5	-3.5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1	0.1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153.8	-178.4	-172.6	-158.5	-4.6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F 2023

는 가계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 및 가스 가격의 인상을 제한

- (주권 강조) 2023년 국방 및 치안 관련 예산을 44억유로 증액, 사법 관련 예산 8% 증액
- (미래를 위한 투자) 국가 교육 예산 37억유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67억유로, 친환경부문 투자 규모 15억유로 증액
 - 교통 부문의 친환경화와 생물 다양성 확대에도 투자
- (재정건전성)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

■ 프랑스 재무부, 2023~2027 중기재정법안(PLPFP):

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23~2027) 발표(2022. 9. 26.)⁵⁷⁾

- 2023~2027 중기재정법은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
 - 재정수지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사회보장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를 통제
 - 재정수지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GDP 대비 공공채무를 2025년 111.7%에서 2027년 110.9%로 낮춤
- 해당 기간 동안 프랑스 가계 구매력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

<표 8> 2023~2027 중기재정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구조적재정수지(Solde structurel (1))	-4.2	-4.0	-3.7	-3.4	-3.1	-2.8
경기조정치(Solde conjoncturel (2))	-0.6	-0.8	-0.7	-0.5	-0.3	0.0
일회성조정치(Solde des mesures ponctuelles et temporaires (3))	-0.1	-0.2	-0.1	-0.1	0.0	0.0
재정수지(Solde effectif (1+2+3))	-5.0	-5.0	-4.5	-4.0	-3.4	-2.9
재정지출(Dépense publique)	57.6	56.6	55.6	55.0	54.3	53.8
재정지출증가율(%) (Évolution de la dépense publique)	-1.1	-1.5	-0.6	0.3	0.2	0.6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5.2	44.7	44.2	44.3	44.3	44.3
공공채무(Dette au sens de Maastricht)	111.5	111.2	111.3	111.7	111.6	110.9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PFP 2023-2027

57)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2022. 9. 26.,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3-plf>, 검색일자: 2022. 9. 26.



■ 프랑스 재무부, FY2023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발표(2022. 9. 26.)^{58), 59)}

- 2020년 사회보장 부문은 397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개선되었고,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재정적자는 2022년과 비교해 110억유로 개선된 68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인구 고령화를 반영해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적자는 2026년 118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의 주요 조치

- 건강 예방 정책 강화
 - 예방접종 접근성 확대
 - 백신을 처방하고 투여할 권한이 있는 보건 전문가를 확대
-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영유아를 위한 보육 시설 개선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재택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혁
 - 노인요양복지시설(É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EHPAD)의 현대화 및 확대

<표 9> 2023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재정수지 전망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건강보험(CNAM Maladie)	-1,5	-30,5	-26,1	-20,3	-6,5	-4,9	-4,4	-2,6
산재보험(CNAM AT-MP)	1,1	-0,1	1,3	2,0	2,2	2,6	2,9	3,3
임금근로자 노령보험국가기금(CNAV)	-1,3	-4,9	-1,1	-3,0	-3,5	-9,4	-13,9	-15,9
가족수당국가기금(CNAF)	1,5	-1,8	2,9	2,6	1,3	0,7	0,5	0,7
자율연대국가기금(CNSA)	-	-	0,3	-0,5	-1,2	0,9	0,5	0,5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RG)	-0,2	-37,3	-22,7	-19,2	-7,6	-10,1	-14,4	-14,0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1,6	-2,5	-1,5	1,3	0,8	1,3	1,8	2,3
사회보장부문 지출(RG+FSV)	-1,7	-39,7	-24,3	-17,8	-6,8	-8,8	-12,7	-11,8

출처: PLFSS 2023

58)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2. 9. 26., <https://www.economie.gouv.fr/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our-2023>, 검색일자: 2022. 9. 27.

59) 프랑스 보건·연대부(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LFSS) pour l'année 2023," 2022. 9. 26., <https://solidarites-sante.gouv.fr/actualites/presse/dossiers-de-presse/article/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lfss-pour-l-annee-2023#t1-Renforcer-le-virage-preventif>, 검색일자: 2022. 9. 27.

[기타]

■ 프랑스 정부,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 15% 제한 계획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계획 발표 (2022. 9. 14.)^{60), 61)}

- 가격 인상 상한을 두지 않으면 2023년 에너지 가격이 1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며,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의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할 계획
 -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이 없는 경우 2023년 월 평균 추가 지출이 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00유로,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180유로로 예상
 -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하면 월 평균 추가 지출이 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5유로,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0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3년 프랑스 예산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2. 9. 26.)⁶²⁾

- 2023년 예산법안의 2022년 경제에 대한 기본가정(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5.3%)은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전망이라고 평가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1.0%)은 다른 기관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이러한 전망은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1.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
 - 하지만 2023년 성장 전망엔 다양한 하방 리스크 존재
- 전체적으로 2023년 공공부문 재정은 느리게 회복하고 불확실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재정의 중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언급
 - 채무수준이 거시경제적 충격과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

 영국

[예산·결산 등]

■ 영국 정부, ‘2022년 성장 계획(The Growth Plan 2022)’ 발표(2022. 9. 23.)⁶³⁾

- (개요) 퀴지 콰텡(Kwasi Kwarteng) 재무 장관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생산성

60) 프랑스 정부, “La hausse des prix de l’électricité et du gaz limitée à 15% en 2023,” 2022. 9. 14.,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a-hausse-des-prix-de-lelectricite-et-du-gaz-limitee-a-15-en-2023>, 검색일자: 2022. 9. 16.

61) 프랑스 정부, “Discours de la Première ministre Élisabeth Borne - Conférence de presse sur la situation énergétique,” 2022. 9. 14., <https://www.gouvernement.fr/discours/discours-de-la-premiere-ministre-elisabeth-borne-conference-de-presse-sur-la-situation-energetique>, 검색일자: 2022. 9. 16.

62)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AVIS RELATIF AUX PROJETS DE LOIS DE FINANCES ET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L’ANNÉE 2023,” 2022. 9. 26.,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2-4-lois-de-finances-2023>, 검색일자: 2022. 9. 26.

63) HM Treasury, “Chancellor announces new Growth Plan with biggest package of tax cuts in generations,” 2022. 9. 2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new-growth-plan-with-biggest-package-of-tax-cuts-in-generations>, 검색일자: 2022. 9. 26.; _____, “The Growth Plan 2022,” 2022. 9. 2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05985/HMT_Autumn_Statement_2022_PRINT.pdf, 검색일자: 2022. 9. 26.



및 임금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계획을 발표

※ 이번 계획을 2022년 9월 초에 취임한 트러스(Liz Truss) 신임 총리 정부의 첫 '미니 예산안'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⁶⁴⁾

- (경제 현황) 지난해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된 후, 2022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2022년 2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0.1% 감소
 - 2022년 8월 CPI 상승률은 약 40년 만에 최저치인 9.9%를 기록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와 기업에 영향
- (주요 정책) 영국 정부는 중기적으로 2.5%의 GDP 추세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 측면의 개혁과 기업 및 가계에 대한 감세 정책을 제시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정책(9월 초 발표)의 예상 비용도 추계
 - ※ 주요 외신은 발표된 감세 정책 규모를 약 450억파운드 수준으로 보도⁶⁵⁾
 - (민간 투자 활성화) 영국 전역의 민간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 감면 및 규제 개혁을 추진
 - (법인세) 당초 예정된 법인세 기본세율 인상(19→25%, 2023년 4월) 계획을 철회
 - (연간 투자 공제) 당초 2023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공장, 기계 등에 대한 연간 투자 공제 확대(20만→100만파운드)를 향후에도 계속 시행
 - ('투자 구역' 신설) 잉글랜드 내 38개 지역에

신규 '투자 구역'을 설정하여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

- (기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⁶⁶⁾ 지원 확대, 은행원 상여금 상한 규정 폐지, 연금 기금의 영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등
- (노동시장 참여 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고 근로자는 더 높은 소득을 유지하도록 지원
- (소득세) 2023년 4월에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소득세 기본세율을 인하(20→19%)하고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조정(15만파운드 이상 과세소득에 45→40% 적용)⁶⁷⁾
 - (국가보험기여금) 2022년 4월부터 시행한 국가보험기여금 기여율 인상(1.25%p)을 11월부터 적용 중단하고 당초 2023년 4월에 예정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신규 도입 계획도 철회
 - (배당세)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분야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시행된 배당세율 인상(1.25%p, 2022년 4월)도 2023년 4월부터 취소될 예정
 - (기타) 통합급여⁶⁸⁾ 수급자 중 저임금 시간제

64) IFS, "Mini-Budget response," 2022. 9. 23., <https://ifs.org.uk/articles/mini-budget-response>, 검색일자: 2022. 9. 26.

65) Reuters, "UK tax cuts to cost 45 bln pounds by 2026/27," 2022. 9. 23., <https://www.reuters.com/world/uk/uk-tax-cuts-cost-45-bln-pounds-by-202627-2022-09-23/>, 검색일자: 2022. 9. 26.

66) 신생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활성화하는 지원제도로 2023년 4월부터 조달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 기업 적격 조건을 완화할 예정

67) 고소득자 대상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퀴지 과랭 재무장관은 10월 3일, '2022년 성장계획'에서 발표된 소득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안을 철회한다고 표명; (HM Treasury, "An update on Additional Rate tax," 2022. 10. 3., 검색일자: 2022. 10. 4., <https://www.gov.uk/government/news/an-update-on-additional-rate-tax>)

68)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복지급여 제도들을 단일화한 근로연령층 대상의 복지급여제도

- 근로자가 더 나은 유급 일자리를 찾도록 제도를 개혁⁶⁹⁾하고 구직 이행을 강화하며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 구직 지원도 강화
- (주택시장 지원) 주택 구매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개혁도 향후에 추진할 예정
 - (인지세) 주택 거래 인지세의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부동산 가액 12.5만→25만파운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인지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부동산 가액 30만→42.5만 파운드)(2022년 9월)
 - (토지 공급 확대) 공공부문의 유휴 토지 처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개정
- (양질의 인프라 공급 가속화) 정부는 에너지, 수자원, 육상 풍력발전, 도로, 통신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개혁, 제도 간소화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
- (기업 지원) 기업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각종 규제 개혁, 조세 시스템 간소화 등을 추진
 - 주세 동결(2023년 2월) 및 주세 제도 개혁 시행(2023년 8월)
 - 디지털 부가가치세 면세 쇼핑 도입 등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 기존에 발표한 에너지 가격 상승 관련 대응 정책의 예상 비용을

약 600억파운드로 전망⁷⁰⁾

- (가계 지원) 에너지 가격 보장 제도(Energy Price Guarantee)(310억파운드)
 - (기업 지원) 에너지 요금 경감 제도(Energy Bill Relief Scheme)(6개월, 290억파운드)
 - (에너지 회사 지원) 이 외에도 영국 중앙은행과 함께 에너지 시장 자금 조달 제도(Energy Markets Financing Scheme)를 통해 상업은행이 에너지 기업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증 제공
 - (자금 조달) 정책 패키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FY2022-23에 채무관리국의 순자금소요액(Net Financing requirement)을 1,617억파운드(2022년 4월 기준)에서 2,341억파운드(2022년 9월 기준)로 상향 조정하고 자금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
- [기타]**
- 영국 정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 기업, 에너지 시장 지원 계획 발표(2022. 9. 8., 9. 21., 9. 23.)⁷¹⁾
 - (가계 - 에너지 가격 보장(Energy Price Guarantee))

69) 국민생활임금 수준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통합급여 수급자가 취업 지도관과의 정기 면담이나 수입 증대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70)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 완화 정책이 이번 겨울에 인플레이션을 약 5%p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71)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Government announces Energy Price Guarantee for families and businesses while urgently taking action to reform broken energy market," 2022. 9. 8.,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announces-energy-price-guarantee-for-families-and-businesses-while-urgently-taking-action-to-reform-broken-energy-market>, 검색일자: 2022. 9. 13.; HM Treasury, "Government outlines plans to help cut energy bills for businesses," 2022. 9. 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outlines-plans-to-help-cut-energy-bills-for-businesses>, 검색일자: 2022. 9. 21.; _____, "Energy Markets Financing Scheme Update," 2022. 9. 23., <https://www.gov.uk/government/news/energy-markets-financing-scheme-update>, 검색일자: 2022. 9. 26.



가계 소비자가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연평균 에너지 요금의 상한을 2,500파운드로 설정해 전기 및 가스 요금 부담을 절감

- (지원 방식) 표준 가구 기준, 연간 에너지 요금의 가계 부담 상한을 평균 2,500파운드 보장

- 표준 가구 기준으로 연간 최소 1,000파운드의 비용을 절감(기준에 발표된 보편적 에너지 요금 할인(400파운드)⁷²⁾과 합산 시 연간 1,400파운드 이상 절감)
- 연간 절감액 중 150파운드는 한시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비용 부과(녹색 부담금(Green Levies) 포함)를 중단함에 따른 것임
-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요금 할인액의 전액을 보전

- (지원 기간) 2022년 10월 1일부터 향후 2년

- (기업 - 에너지 요금 경감(Energy Bill Relief Scheme)) 비가정용 에너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가계의 ‘에너지 가격 보장 제도’와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 요금 경감 혜택을 지원

- (지원 대상) 영국 기업, 자선단체, 공공부문(학교, 병원 등)

- (지원 방식) 별도의 신청 없이 가스 및 전기 도매 가격에 할인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할인액은 계약 방식과 기업 상황에 따라 상이

- 정부가 설정한 ‘지원 기준 도매가격(전기는 211파운드/MWh, 가스는 75파운드/MWh)⁷³⁾

과 계약 시 예상 도매가의 차이만큼 할인 적용

※ 변동 계약 요금제에 대해서는 최대 할인 한도(전기 405파운드/MWh, 가스 115파운드/MWh)를 설정

- (지원 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3월 31일 (6개월)

- (에너지 시장 자금 조달 제도(Energy Markets Financing Scheme)) 재무부가 중앙은행과 함께 400억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시장 자금 조달 제도’를 통해 높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직면한 도매 전기·가스 시장의 에너지 회사에 유동성 문제 해결을 지원

- (지원 대상)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영국 에너지 시장의 유동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세부 지원 계획은 추후 발표 예정

- (지원 방식) 상업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100%의 보증을 통해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10월 17일부터 신청)

- 이 외에도 영국 에너지 부문의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추진 예정

- (비용 절감) ‘에너지 공급 태스크포스’가 국내외 공급업체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장기 계약에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

- (공급 증대) 석유 및 가스 개발 면허 신규 부여, 영국 셰일가스 생산 중단 조치 해제, 청정

72) 2022년 5월에 발표된 물가상승 대응 정책 패키지에서 2022년 10월부터 6개월간 보편적 에너지 요금 할인을 최대 400파운드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
73) 정부는 ‘지원 도매가격’이 이번 겨울에 예상되는 도매가격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

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 가속화, 2050년까지 최대 24GW의 원자력 발전 지속, 에너지 시장의 규제 개혁 등

재정포럼

2022년 10월호 통권 제316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22년 10월 17일 발행 / 제26권 제10호(통권 제31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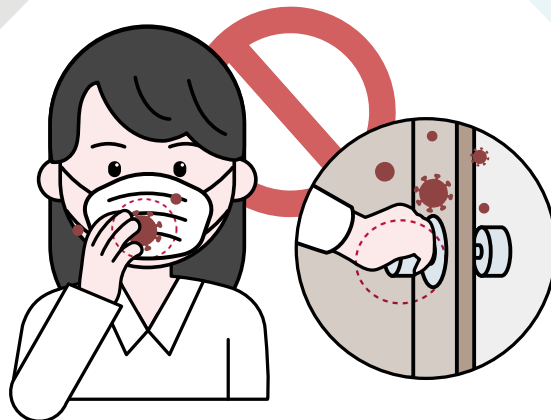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2020. 05. 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